

III. 손해배상청구사례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997. 4. 16.자 판결 (96나36700)

대법원 1998. 2. 27.자 판결 (97다19038)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998년 2월 27일 고 김창룡의 유족 김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은 어느 정도 근거있는 자료에 기한 것이고, 46년의 세월이 지나 관련자들도 사망하여 백범암살사건 또한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그 진실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억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암살사건 관계자들의 발언내용이나 국회 조사보고서 기록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방송공사는 1995년 8월 5일부터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면서 고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을 선동·배후조정한 것으로 묘사하자 김창룡의 유족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293~301면)과 2심 모두 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을 결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判決文

사 건 : 96나3670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변 론 종 결 : 1997. 4. 2.

원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1996. 7. 25. 선고, 95가합90717 판결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문을 수령한 다음날 9시 뉴스 방송 중에 이 사건 판결문을 낭독하라는 판결.

이 유 : 1.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 4.항 중 앞부분(제8쪽 4행)의 ‘반증없다’를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이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고, 5.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설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김구 암살사건은, 그 범행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사망하여 그 범행을 직접 실행한 안두희의 진술과 과거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발언내용, 기록, 조사보고서 기타 여러 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960. 이래로 사건 당시 이 사건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장흥, 전병덕, 김학규 등 여러 사람에 의하여 망 김창룡이 배후인물 중 1인으로 지목되어 왔고, 안두희는 1992.경부터 비록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김창룡이 김구 암살사건에 사전부터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해 왔으며, 그 때마다 안두희의 진술내용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크게 보도되었고, 국회의 위 소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위 김창룡이 이른바 88구락부의 구성원이며 김구 암살사건에 일부 관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드라마 제작 목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드라마 중에서 위 김창룡이 88구락부의 구성원으로서 김구 암살사건에 관련되어 사전에 안두희에게 김구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고 사후에 안두희가 수감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 뒤를 돌보아 준 것으로 묘사된 내용은, 그 진실성이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안두희의 진술과 과거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발언내용 및 기록, 기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원고가 위 드라마에서 문제삼는 내용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6.

재판장 판사 강 병 섭

판사 조 인 호

판사 최 영 룡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7다19038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상고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 4. 16. 선고 96나36700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1.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삼기 위한 의도로 1995. 8. 5.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1:50부터 22:50까지 16회에 걸쳐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 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사실,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을 주제로 한 위 드라마 제1부와 제16부에서는 소외 망 김창룡이 1949. 초여름 소외 망 안두희를 만나 그에게 “백범을 처치해야 한다구 했다면서? 백범은 큰 나무야. 백범 밑에는 빨갱이들이 많아요. 나무가 크면 벌레가 많이 꼬이기 마련이야. 맞아요. 나무를 쓰러뜨려야 그 아래 숨어 있는 빨갱이들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법이지. 건투를 빈다.” 라고 말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이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선동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범 암살사건은 그 범행에 관련되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사망하여 그 범행을 직접 실행한 위 안두희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과거 진술내용이나 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외에는 달리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전제하에, 1960년 이후 암살사건 당시 헌병사령관이던 소외 망 장흥 등 관계자들에 의하여 위 김창룡이 백범 암살사건의 배후인물 중 1인으로 지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술을 수차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암살자인 위 안두희 스스로도 1992.경부터 수차에 걸쳐 위 김창룡이 암살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그 때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대서특필되었으며, 국회 소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위 김창룡이 암살사건에 일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위 김창룡이 사전에 위 안두희에게 백범 암살을 암시·선동하고 위 안두희가 수감된 후 그의 뒤를 돌보아 준 것으로 묘사한 것은 그 진실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억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안두희 등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이나 기록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드라마의 방영은 위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

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안두희는 1992년경 수차에 걸쳐 위 김창룡이 자신에게 백범의 암살을 지시 내지는 선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곧이어 그러한 진술을 반복한 바 있고, 위 김창룡이 백범 암살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암살사건을 전후하여 밝혀진 사실이나 정황을 기초로 그 나름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드라마 방영 이전부터 이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 김창룡이 암살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엇보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위 김창룡이 백범 암살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왔고 위 안두희 스스로도 1992년 수차에 걸쳐 위 김창룡이 백범 암살을 암시·선동하였음을 시인하였다면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은 단순히 억측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있는 자료에 기한 것이고, 더욱이 백범 암살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송 당시 이미 46년의 세월이 지나 위 김창룡 본인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관련자들도 사망하여 백범암살사건 또한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상고이유는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7.

재판장 대법관 정 귀 호

대법관 박 준 서

주 심 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이 용 훈

□

연하남자와의 교제경험담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에
이와 무관한 원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27.자 판결 (97가합15881)
서울고등법원 1998. 11. 3.자 판결 (98나1857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홍기중 부장판사)는 1998년 2월 27일 원고 정○○과 김○○이 <레이디경향> 발행사인 경향신문사와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자유기고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에게 1천5백만원, 김○○에게는 2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향신문사는 월간 여성잡지 <레이디경향> 1997년 6월호에 자유기고가가 쓴 [내가 연하의 남자를 사귀는 이유]라는 제하로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원고들이 연하의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말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인터뷰한 사실조차 없으며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자유기고가인 피고 이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잡지에 게재하도록 기고하고, 피고회사가 이 사건 사진을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기사에 원고들의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마치 원고들이 연하의 남자와 교제하고 있고 인터뷰에 응하여 그러한 경험을 말한 것인 양 보도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를 읽는 통상의 독자들이라면 원고들이 연하의 남자들과 교제하고 있는 여자들로서 당돌하다는 인상을 가지기에 족하고, 특히 미혼인 이들이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인격 및 행실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마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자유기고가인 피고 이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재판부(서울고법 제5민사부 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피고가 사진을 사용하도록 승낙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기사에 원고들의 사진이 삽입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 및 행실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判決文

사 건 : 97가합15881손해배상

원 고 : 1. 정○○

2.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박신후, 이정화

피 고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안신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식대,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변론종결 : 1998. 2. 11.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7년 6월 1일부터 1998년 2월 27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년 6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 , 주 , 김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사 내용

(1)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는 1981년 12월 7일 등록번호 라 - 4870호로 창간된 월간여성잡지인 <레이디경향>을 발행하는 회사로서, 1997년 6월 1일자로 발행한 <레이디경향> 1997년 6월호(이하 ‘이 사건 잡지’ 라 한다)의 472면 내지 473면에 [내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연하의 남자와 교제하는 여자 5명을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면서, 젊은 여자의 사진 5장(이하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을 삽입하였다.

(2) 이 사건 기사는 자유기고가인 피고 이 가 정수현이라는 이름으로 기고한 것인데, 모두기사 아래에 ① [순수해서 너무 좋다] 라는 소제목으로 된 ‘권 (23·학생·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에 대한 인터뷰 내용, ② [나이를 잊게 하는 젊음이 좋다] 라는 소제목으로 된 ‘이 (25·E그룹·서울 관악구)’ 에 대한 인터뷰 내용, ③ [그의 건강함과 씩씩함이 나를 질식하게 한다] 라는 소제목으로 된 ‘왕 (28·디자이너·경기도 성남시)’ 에 대한 인터뷰 내용, ④ [좀더 긴장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져요] 라는 소제목으로 된 ‘이 (26·법무사시험 준비 중)’ 에 대한 인터뷰 내용, ⑤ [그의 깜짝 이벤트가 우리 사랑의 모티브 준다] 라는 소제목으로 된 ‘김 (26·가사일)’ 에 대한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별지 기사 내용 기재와 같다.

(3) 그리고, 이 사건 기사 중에는, 권 이름 위에 강에서 배를 저으면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이 이름 위에 찻집에서 소파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왕 이름 위에 왼쪽으로 비스듬히 앉아 정면을 바라보며 활짝 웃는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이 이름 위에 소파에 기대어 팔을 얹은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김 이름 위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여자의 증명사진

이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권 , 이 , 왕 , 김 의 것으로 보이는 각 사진의 인물은 모두 원고 김○○이고, 이 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의 인물은 원고 정○○으로서, 위 각 사진들에는 원고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원고들임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4) 한편, 이 사건 기사는 [여자 25세의 고민|나이를 착각하고 사는 여자들 vs 나이를 잊고 사는 여자들]이라는 큰제목 하에 [파트 1. 지금의 나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 [파트 2. 왜 연하의 남자가 멋있어 보일까?] , [파트 3. 연하의 남자와 결혼한 유명인 5커플 러브스토리] , [파트 4. 내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이유] , [파트 5. 연령 불명의 여자나이와 미모의 관계는?] , [파트 6. 나이를 느낄 수 없는 여성 목표!]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6개의 기사 중 4번째 기사로서, 위 [파트 2. 왜 연하의 남자가 멋있어 보일까?] 기사 중에는 “최근 대학생 중에서도 ‘애인은 연하가 좋다’ 라는 말을 할 정도. 알고 있는 여대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연상이나 동년배는 지루하고 느낌이 금새 오지 않지만 연하와 이야기를 나누면 통통 튀는 맛이 있고 재밌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모두 자신이 연상이라는 의식은 하지 않고 있는 듯 했다. 쉽게 말해서 ‘키워서 잡아먹는다’ 라든지 아니면 유행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함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단순히 기분 좋은 연애라는 내추럴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 “일단 25세가 넘어가면 누구할 것 없이 ‘나이’ 를 의식하게 되는 기회가 늘어난다. 잔주름이 생긴다든지 새치, 또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등. 이러다 보면 더 이상 자신이 젊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초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의 고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연하의 남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라는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즐거운 섹스로 ‘젊음’ 을 유지한다] , [서로 원하는 섹스가 일치] , [진정한 쾌감은 연령차를 좁힌다] 라는 소제목의 기사들이 있다.

나.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및 배포

(1) <레이디경향>의 편집팀장인 소외 김 이 사건 잡지에 [여자 25세의 고민|나이를 착각하고 사는 여자들 vs 나이를 잊고 사는 여자들]이라는 큰제목으로 된 기사를 게재할 것을 구상하고 1995년 5월 중순경 <레이디경향> 기자인 소외 고 에게 그러한 기사를 외 부필자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하라고 하였고, 위 고 은 그 무렵 여성잡지에 수차 자유기고가로 기고한 전력이 있는 피고 이 에게 그러한 기사 중 하나로 [내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를 기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이 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다음, 그가 경영하는 ‘핏자이야기’ 라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김○○에게 <레이디경향>에 실을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김○○의 사진이나 다른 젊은 여자의 사진을 여러 장 구해줄 것을 부탁하자, 위 김○○은 집에서 그 언니인 원고 김○○의 독사진 4장(을 제1호증의 1, 2, 3, 6)과 원고들이 함께 찍은 사진 1장(을 제1호증의 5), 원고 김○○의 단체사진 2장(그 중 1장이 을 제1호증의 4) 합계 7장을 가지고 와서 피고 이 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 이 는 위 사진들 중 원고 김○○의 독사진 4장과 원고들이 함께 찍은 사진 1장(이 사진의 뒷면에 ‘오른쪽’ 이라고 기재하여 원고 정○○을 특정하여 표시하였다)과 함께 이 사건 기사를 위 고 에게 제출하였다.

(3) 위 김 위 고 으로부터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사진들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기사는 피고 이 가 실명(實名)으로 인터뷰한 기사이고 이 사건 사진의 인물들로부터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할 것을 허락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는, 피고 이 ○○에게나 원고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 기사와 같은 인터뷰를 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사진들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고 이 사건 잡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하였다.

(4)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이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데 관하여 동의한 사실도 없다.

(5) <레이디경향>의 1997년 월평균 발행부수는 약 45,000부 정도이고, 같은 해 월평균 판매부수는 약 30,000 내지 35,000부 정도이며, 이 사건 잡지는 대부분 전국의 서점을 통하여 판매되었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정○○은 1997년 2월 평택대학교 ○○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5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미혼의 여자이고, 원고 김○○은 1997년 2월 평택대학교 ○○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5월경 ○○병원에 입사하여 의료복지사로 근무 중인 미혼의 여자이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살피건대, 통상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동의없이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을 촬영한 사진이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 이 ○○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도록 피고회사에 기고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기사에 원고들의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마치 원고들이 연하의 남자와 교제하고 있고 피고 이 명희의 인터뷰에 응하여 그러한 경험을 말한 것인 양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사를 읽은 통상의 독자들이라면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원고들이 연하의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젊은 여자들로서 당돌하다는 인상을 가지기에 족하고, 특히 미혼인 원고들이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인격 및 행실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마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의 작성자인 피고 이 ○○가 피고 회사의 피용자가 아니고 자유기고가로서 피고 회사와 도급관계에 있음에 불과하며, ① 자유기고가에 대한 도급은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② 자유기고가에 의하여 작성된 기사의 진위여부 또는 제공된 사진의 동일성 여부 등을 잡지사가 기사나 사진의 주인공에게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 ③ 여성월간지업계가 근래 들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등으로 많은 분쟁에 시달리고 있어 잡지사가 분쟁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④ 자유기고가가 제공한 사진이 허위의 사진이라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 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자유기고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사와 같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기사에 관하여 취재원이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자신의 사진을 삽입할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여성잡지를 발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이로부터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사진을 제공받을 때에 그 취재원을 상대로 진실로 인터뷰를 한 것인지,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데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사를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로서도 이 사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액수는 원고들의 성별과 나이, 신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이 사건 사진의 매수, 이 사건 사진의 게재 경위, 게재된 사진의 크기 및 그 인물에 대한 인식이 용이한 정도, 이 사건 잡지의 성격, 배포부수와 배포지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정○○에게는 금 15,000,000원, 원고 김○○에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정○○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잡지의 발행일인 1997년 6월 1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년 2월 27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7.

재판장 판사 홍 기 중

판사 박 영 재

판사 노 수 환

2심 判決文

사 건 : 98나1857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정○○

2. 김○○

피고, 항소인 : 이

서울 관악구 4동 517의 2(핏자이야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두원

변 론 종 결 : 1998. 8. 18.

원 판 결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27. 선고, 97가합15881 판결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와 각자 원고 정○○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인용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3.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의 이유(1. 인정사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4. 손해배상의 범위, 5. 결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김○○에게 사진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진의 사용처를 말하였고, 위 김○○은 자신의 사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언니인 원고 김○○의 사진을 피고에게 주었으며, 피고는 위 김○○과 원고 김○○의 얼굴이 비슷하여 위 사진이 위 김○○의 사진인 것으로 알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룬다.

그러나 원심증인 주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김○○에게 위 사진의 사용처를 말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사진이 위 김○○의 것이 아님을 피고가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정 의 이름으로 기고한 [내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이유] 라는 제하의 기사는 본래 위 기사를 작성하기로 한 소외 정 이 기사를 제때 작성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고 으로부터 급히 기사작성 요청을 받아 기고하게 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도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저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사회의 변화해가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의 남녀의 연령차이 및 연하의 남자와 사귀에 있어 느끼는 솔직한 감정 등을 표현한 것이어서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사의 저급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기사에 원고들의 사진이 삽입됨으로써 마치 원고들이 연하의 남자와 교제하고 있고 마치 인터뷰에 응하여 그러한 경험을 말한 것인 양 되어 있는 자체로서 미혼녀인 원고들의 인격 및 행실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명예를 손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원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3.

재판장 판사 신 정 치

판사 김 덕 진

판사 김 한 용

□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혐의사실이 인정된 것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4. 17.자 판결 (97가합6965)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변중춘 부장판사)는 1998년 4월 17일 전 국회의
원인 원고가 강원도민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어떤 혐의에 관해 수사기
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이
인정된 것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
되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이 사건 기사 게재 후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강원도민일보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996년 4월 11일자 1면에 [조 의원 곧 소
환] 제하의 기사를 비롯, 4면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자민련 관계자가 공천과 관련하여 현
금을 수령하였고, 그 사실이 밝혀지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천현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였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을 평소보다 다량 발행하여 이를 원고의 선거구인 횡성군 일대의 주택가에 무료로 배포하여
원고를 낙선케 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수사기관의 발표와 중앙일간지의 보도내용 및 연합통신의 송고 기사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으므로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송고받
은 기사 내용과는 다른 관점, 즉 원고가 공천과 관련하여 현금을 수령한 것임을 전제로 한
내용이며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받은 기사임을 가리키는 크레딧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
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공식발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고, 검찰의 공식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천현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당
사자가 공천현금 수수 사실이 없다고 밝힌 이상 피고는 반대 당사자인 원고를 상대로 그 진
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실확인 작업을 한 뒤 기사화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피고의 보도가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
제목에 원고의 성명을 적시하고 원고가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는 점, 그 기사 분량이 4면에 걸쳐 방대한 점 등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

시키고자 함이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判 決 文

사 건 : 97가합6965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曹)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환, 전형연, 강수립

피 고 :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江原道民日報)

춘천시 후평 1동 257의 27

대표이사 안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익상

변론종결 : 1998. 3. 20.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4. 24.부터 1998. 4. 17.까지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윤 , 김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3. 26.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홍천군 선거구의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어서 1996. 4. 11.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라고 한다)에서 홍천 - 횡성 선거구의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현재 자민련 당무위원 겸 홍천 - 횡성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1992. 7. 24. 일간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래 ‘강원도민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로서 1995. 7. 20. 현재 발행주식은 보통주식 957,200주이고, 자본 총액은 금 4,786,000,000원이다.

다. 피고 회사는 위 강원도민일보 1996. 4. 11.자(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일) 신문(제 1029호, 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의 제1면의 좌측 상단에 [曹 의원 곧 소환] 이라는 큰 제목, [검찰, 자민련 공천헌금관련 김 씨로부터 1천여 만원 수수혐의] 라는 중간 제목, [돈 준 김씨는 금주 말 불러 조사 방침] 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별지목록 기재 보도기사 1.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2면의 좌측 상단 ^동문(同聞) 서문(西聞))이라는 난에 [자민련 도지부위원장까지 ‘공천헌금’ 연루 충격] 이라는 큰 제목 아래 별지목록 기재 보도기사 2.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3면의 우측 상단에 [돈 성격 놓고 뜨거운 공방 예상] , [자민련 공천헌금 후유증] 이라는 큰 제목, [曹 씨 등 도덕성 치명타] 라는 중간 제목, [실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 총선 뒤 판명될 듯] 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별지목록 기

재 보도기사 3.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4면의 우측 ‘표발확대경’이라는 난에 [공천현금 수수… 선거전 막바지 활용] 이라는 큰 제목, [현금사건 득실계산 분주] 라는 중간 제목 아래 별지목록 기재 보도기사 4.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각 제목과 내용을 합쳐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등 관련당사자가 이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자민련 관계자가 소외 김 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현금을 수령하였고, 그 사실이 밝혀지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린 이 사건 신문을 발행, 배포하였다.

라. 한편, 위 김 는 전 엘에이(LA)한인회장으로서 1995. 12. 20. 자민련의 철원 - 화천 - 양구 조직책으로 임명되었다가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지역 자민련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1996. 2. 25. 피고 회사의 기자인 소외 김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민련 현역의원 3명과 당직자 3명 등 총 6명에게 공천현금을 수수하였는데 같은 달 28. 이를 폭로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같은 달 28. 기자회견에서 조직책 탈락 후 너무 흥분하여 과장하여 말한 것이라며 위 금품전달 주장을 번복하였고, 이후 자민련의 전국구공천에서 16 번의 후보로 공천되었다.

마. 위 김 가 공천과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현금을 하였는지,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위 김 는 1997. 10. 6.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인 소외 김 이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은 1995. 12.경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1996. 2. 5.경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공천과 관련하여 현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을 제21호증의 8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김 로부터 이른바 공천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1996. 4. 10. 이 사건 신문에 이 사건 기사와 같이 마치 원고가 위 김 로부터 공천현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피고 회사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위 보도행위를 하였고, 또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을 위반하여 1996. 4. 10.과 11.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게재된 위 양일자 강원도민일보를 평소보다 다량 발행하여 홍천군과 횡성군 일대의 주택가에서 위 강원도민일보의 일반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배포하고, 선거일인 1996. 4. 11. 홍천군과 횡성군의 각 투표소마다 이 사건 신문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손해로서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경우 받았을 4년간의 국회의원 후원회비 금 412,000,000원, 국회의원수당 금 288,000,000원 그리고 위자료 금 300,000,000원 등 합계 금 1,0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신문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신문기사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문기사의 내용의 판단은 전체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제목만으로 그 기사내용을 파악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기는 하나, 제목을 모두 읽고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는 독자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에 비추어 그 기사의 제목, 내용, 배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고려하여야 하고, 어떤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그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사실이 인정된 것과 같은 내용을 제목으로 하여 기사를 게재한 경우 등에는 그 제목만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의 제목, 기사의 배치와 내용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위 김 로부터 위 공천과 관련하여 현금을 받았다고 밝혀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고 그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이 사건 신문이 발행,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위 인정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고서 이 사건 기사를 실었음은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그것이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위 보도행위와 배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 , 이 , 조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6. 3. 23. 조선일보의 여론조사결과 원고의 지지도는 원고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소외 이 후보의 지지도와 비교할 때 20대와 50대 이후의 유권자 중에서는 동일하나, 원고의 지지도가 30대 유권자 중에서 11.1%, 40대 유권자 중에서 3.3% 각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달 24. 중앙일보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원고의 지지도가 30.5%로서 2위의 소외 이 후보의 지지도 15.6%보다 14.9% 앞선 것으로 나타난 사실, 이 사건 신문이 1996. 4. 11. 새벽 원고의 선거구인 홍천군과 횡성군 일대의 주택가에 배포되었고 낮에는 각 투표소에도 쌓여져 있어 무료로 배포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자와 497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이 사건 신문을 홍천군과 횡성군 지역의 주택가에서 강원도민일보의 일반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배포하였고, 선거일인 1996. 4. 11. 홍천군과 횡성군의 각 투표소마다 이 사건 신문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 등으로 이 사건 기사를 읽은 홍천 - 횡성 선거구의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기권하거나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케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윤 , 이 , 조 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에 의하면 서명자 730명이 이 사건 기사를 읽고 난 후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기권(171명)하거나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559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선거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나, 을 제21호증의 13, 14, 19 내지 24, 27, 28, 31, 3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730명 중에서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 기권자는 61명이고 선거인명부 미등재자는 158명(기권한 것으로 서명한 자 중 미등재자는 40명)이며 그 외의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 29명은 서명

서(갑 제7호증)에 서명한 적이 없는 것이라는 점, 위 갑 제7호증이 선거가 끝난 뒤에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작성된 점, 서명날인자 중에서도 그 취지를 설명받지 못하고 날인한 사람이 일부 있는 점(을 제21호증의 13, 14, 16, 19 내지 26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지방언론사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가사 그 기사내용이 진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이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2) 언론기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러한 증명이 없더라도 건전한 형식에 비추어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위 김 로부터 공천현금을 받았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위 김 가 1996. 2. 25. 같은 달 28. 춘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민련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밝혔으나, 같은 달 28. 조직책 탈락 후 너무 흥분하여 과장하여 전달한 것이라며 금품전달 주장을 번복한 사실, 아직까지 위 금품수수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 15, 19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6. 4. 6.경 자민련 이필선 부총재가 “자민련 지도부가 4·11 총선 전국구후보 공천과정에서 30억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자민련 공천현금 비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달 10.경 위 김 로부터 2천만원~1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원고 등 자민련 전·현직의원 6명을 물증이 확보되는 대로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검찰관계자가 전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공천현금 수수사실이 진실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또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공천현금 수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연합통신과 통신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위 연합통신은 국내 최대의 통신사이기에 모든 언론사들이 위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되는 기사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이를 그대로 믿고 전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위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된 기사를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전재한 피고 회사로서는 그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연

합통신과 통신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 및 피고 회사가 1996. 4. 10. 위 연합통신으로부터 이 사건 기사 중 별지목록 기재 보도기사 1.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기사(을 제2호증의 8)를 송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보도기사 2, 3, 4의 각 기재 내용은 위와 같이 송고받은 기사내용과는 다른 관점 즉 원고가 위 김 로부터 위 공천과 관련하여 헌금을 수령한 것임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연합통신과의 통신송수신및전재계약서의 제3조에는 “을(피고 회사)은 갑(위 연합통신)이 제공하는 뉴스를 고의로 왜곡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뉴스 원문 개작, 왜곡에서 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에는 “을은 갑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제할 때 크레딧(credit)를 붙여서 갑의 뉴스를 전제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사에는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받은 기사임을 가리키는 크레딧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제의 형식이나 방법도 위 계약과는 달라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피고 회사는 또한 원고가 국회의원 후보자 및 자민련 강원도지부 책임자로서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조사 중이라는 수사기관의 발표와 중앙의 각 신문사들의 보도내용 및 연합통신의 송고 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위 김 와의 전화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였고, 일간신문보도의 신속성에 비추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지방신문사의 실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당국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취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김 가 위 김 의 공천헌금 수수사실 부인 기자회견 이전인 1996. 2. 25.경 위 김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 김 가 도내인사에게 1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 및 검찰이 자민련 공천헌금 비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1996. 4. 10.경 위 김 로부터 2천만원~1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원고 등 자민련 전·현직의원 6명을 물증이 확보되는 대로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는 것이 검찰관계자로부터 전해진 사실 등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반면에 검찰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공식발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검찰의 공식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위 김 가 이미 공천헌금 수수사실이 없다고 밝힌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반대 당사자인 원고(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직접 취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를 상대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여 나름대로의 진실확인작업을 한 뒤 기사화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진실확인작업을 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나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5, 을 제7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5,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5, 을 제12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4의 각 기재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6. 4. 11.은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일로서 그 무렵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신문 이외에 1996. 4. 11.자 강원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의 각 신문(한겨레신문은 1996. 4. 10.자 신문)에도 원고를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면서 검찰이 원고가 공천 현금 수수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갖고 조사할 방침이라는 취지의 각 기사가 게재된 사실(다만 그 중 일부 신문은 원고의 성(姓)이나 성명을 적시하지 않았고, 대부분 위 김 에 게 초점을 두고 원고 등 자민련 6명에게 공천현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위 각 신문의 기사 게재의 정도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분량으로 게재되었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 원고의 성명을 적시한 점, 그 내용이 원고가 위 김 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는 점, 그 기사의 분량이 4면에 걸쳐 상당히 방대한 점, 또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함이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 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음은 경험칙 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사실여부, 피해자인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시기(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게재 경위, 게재의 정도, 위 강원도민일보의 주된 독자의 거주지, 피고 회사의 자본규모, 피고 회사가 언론기관으로서 사실만을 보도하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주의 정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후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는 금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4. 24.부터 이 사건 선고일인 1998. 4.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17.

재판장 판사 변 중 춘

판사 오 경 미

판사 김 태 의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비록 비평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방법원 1998. 4. 22.자 판결 (96가합72242)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8년 4월 22일 오윤기념사업위원회와 우 씨가 주식회사 미술세계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비록 예술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비평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와 보도자료에 원고들이 오리지널 판화를 전시한 것처럼 관람객들을 기망하였다고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고, ^오리지널} 판화와 ^리프로덕션} 판화의 구별에 관한 견해표명이나 비평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리프로덕션} 판화임을 분명히 한 전시회와 대비함으로써 관객들을 기망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그 내용을 보도케 할 목적으로 언론기관에 자료를 배포한 점 등으로 보면 원고들이 ^리프로덕션 판화}를 ^오리지널} 판화로 전시, 판매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기사와 보도자료는 순수한 견해 표명이나 비평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1980년대 목판화가로 활동하다가 요절한 오윤 화가에 대한 기념·추모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오윤기념사업위원회와 화랑을 경영하는 우 씨는 화가 오윤의 사후 10주기를 맞아 ^오윤, 동네사람 세상사람전}이라는 판화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미술세계에서 발행하는 월간 <미술세계>가 1996년 7월호를 통해 [판화의 오리지널과 리프로덕션]이라는 제하로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이 마치 오리지널 판화인 것처럼 관객들을 기망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위와 관련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6가합72242 손해배상(기)

원 고 : 1. 오윤기념사업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

2. 우 (禹燦圭)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오양호

피 고 : 1. 주식회사 미술세계(美術世界)

서울

대표이사 홍률

2. 정

인천

송달장소 인천

3. 박

서울

송달장소 용인시

변론종결 : 1998. 4. 1.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오윤기념사업위원회에 금 30,000,000원, 원고 우 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6. 30.부터 1998. 4. 22.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미술세계는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미술세계>의 차례란에 [^학고제}의 ^오윤 관화전} 관련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제10면 상단부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같은 면 나머지 여백에는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본문을 15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①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6.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판결 송달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미술세계> 제1면에서 제3면까지 사이에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1996년 7월호 <미술세계>에 게재된 [판화의 ^오리지널}과 ^리프로덕션}] 이라는 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고, ③ 이 사건 판결 송달일 이후 10일 이내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제3 기재와 같은 광고문을, 제목을 2호 고딕체 활자로, 광고내용은 6호 명조체 활자로 각 1회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 김 의 각 증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 오윤기념사업위원회(이하 ^원고 위원회}라 한다)는 1980년대 굵은 선의 목판 화가로 활동하다가 요절한 소위 망 오윤에 대한 기념·추모 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 우 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학고재}라는 화랑을 경영하는 사람, 피고 주식회사 미술세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미술 전문 잡지인 <미술세계>를 발간하는 회사, 피고 정 은 피고 회사의 편집 부국장, 피고 박 는 취재기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위원회는 위 오윤의 사후 10주기를 맞아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1996. 6. 21.부터 7. 20.까지 원고 우 가 경영하는 ^학고재} 화랑과 ^아트스페이스 서울}에서 ^오윤, 동네사람 세상사람전}이라는 판화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 바, 위 전시회에 출품된 판화들은 모두 위 오윤의 후배 판화가들이 그가 생전에 제작한 목판 원판으로 찍어낸 것으로서, 위 작품들에는 위 오윤의 유족인 소외 오 가 부여한 에디션 넘버(Edition Number)가 있었고, 위 오윤의 낙관과 함께 원고 위원회의 철인(鐵印)이 찍혀 있었다. 한편, 원고 위원회는 판화의 제작이 더 이상 없음, 즉 절판(絶版)을 알리는 방법으로 원판에 변형을 가하여 찍은 이른바 씨피판(Cancellation Proof, 이하 C P판이라 한다) 대신 원판을 불에 달군 철인으로 지저 전시하는 한편, 이른바 에이피판(A P판, Artist Proof, A P판이라 한다)을 전시하였고, 위 전시회 개최를 전후하여 기자 간담회, 도록 등을 통해 출품 판화들이 위 오윤의 유족의 동의를 얻어 그가 생전에 제작한 원판으로 찍은 판화라는 점을 일반에 공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1996. 6. 30. 발간한 <미술세계> 7월호 90면~95면에 [판화의 ^오리지널}과 ^리프로덕션}] 이라는 제목과 [^갤러리 서미}의 사건과 ^학고재}의 ^오윤판화}를 중심으로] 라는 부제를 붙여, 별지 제4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판화의 원전성(原典性), 즉 판화의 ^오리지널}과 ^리프로덕션} 구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전시회의 여러 행태를 비판한 내용의 기사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화의 대중화를 맞이하면서 판화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리프로덕션} 판화를 ^오리지널} 판화로 판매한 ^갤러리 서미}가 화랑 협회로부터 ^제명}조치되면서 더욱 부각되어진 것이다. 이에 본지 ^갤러리 서미}의 과문사건과 더불어 현재 ^학고재}에서 개최 중인 ^오윤, 동네사람 세상사람}展을 통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판화 작품의 애매한 개념문제를 집중 조명해 본다. ...중략... ^갤러리 서미}는 화랑 협회로부터 ^리프로덕션} 판화를 ^오리지널} 판화로 선전해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되었다. ...중략... 그런데 이러한 논란의 여파가 채 식기도 전에 판화에 대한 개념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었다.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학고재}와 ^아트스페이스 서울}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오윤, 동네사람 세상사람}展은 ^오리지널}과 ^리프로덕션}의 차이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한다. ...중략... 출품된 작품에는 작가의 사후인데도 불구하고 A P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작가의 사인없는 작품에는 사인 대신 오윤의 도장과 기념사업회의 철인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보통 A P판은 ^작가보관용}으로 제작되는 것인데, ^오윤展}의 경우 작가 사후에도 A P판을 제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낳는다. ...중략... 지난번 ^갤러리 서미} 사건을 계기로 화랑 협회가 밝힌 ^작가의 사인이 없는 것은 오리지널 판화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감정서에 의하면, 이번 ^오윤展}에 출품된 판화들은 ^오리지널} 판화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중략... 작가의 사후에 그 법정 상속자가 그 판으로 찍었을 경우 때로는 ^리프로덕션}이 아닌 ^오리지널}로 간주되는 외국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오윤展}에 나온 판화의 경우 그러한 경우의 판화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외는 모두가 리프로덕션에 해당된다. 설령 ^포

스트휴먼에디션}에 해당되는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전시장에는 ^포스트휴먼에디션}과 ^리프로덕션}을 전혀 구분해 놓지도 않았고 도록 또한 언급이 없다.李 관장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려면 전시된 다수의 작품(분명하게는 전부가)이 ^포스트휴먼에디션}이어야 한다. 이럴 경우라 하더라도 ^포스트휴먼에디션}의 정의와 그렇게 간주되는 이유를 도록에서와 전시장에 명기된 제작의 변에서 명확하게 밝히면서 관객의 이해를 구했어야 혼돈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리프로덕션}과 ^포스트휴먼에디션}이 섞여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중략... 그러다 보니 일반 관람객들에겐 현재 전시 중인 전 작품이 마치 ^진짜} ^순} 오리지널 판화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략...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70만~3백만원씩으로 매긴 것은 지나친 고가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의 중론이다. ...중략... 한편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작년 ^호암 갤러리}에서 열린 ^장욱진 판화전}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중략... 이번 ^오운전}처럼 출품된 작품이 ^오리지널}인지 ^리프로덕션}인지 구분을 모호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작가 사후에 나온 복제작품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오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

라. 이 사건 기사는 당시 피고 회사의 취재기자였던 피고 박 가 초고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편집 책임자였던 피고 정 이 주관하는 편집 과정을 거쳐 <미술세계>에 게재되었다.

마. 피고 정 , 박 는 <미술세계>에 위 기사를 게재하기에 앞서, 별지 제5 기재의 기사 자료를 만들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7~8개의 언론 기관에 배포하였는 바, 위 자료는 위에서 본 내용 이외에도 “... 작품에는 오 씨가 붙인 넘버링과 제목, 오운의 낙관, 기념사업회의 철인이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작품보증서도 있다고 했다. 이는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이 ^오리지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중략... 또 판화의 ^물 파괴} 부분도 지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판화 작품에 반드시 C P판이 나와야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전시장 에디션에는 C P판에 대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전작 판화}라고는 하지만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중략... ^오리지널}도 아닌 ^리프로덕션 프린트} 작품을 1백만원 이상씩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싼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바. 판화는 작가가 판을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작품을 찍어내는 대로 동일한 작품이 여러 점 존재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작품의 가치 척도가 되는 원전성이 특히 문제되는 바, 다른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판화도 작품이 어느 정도 원전에 가까운가에 따라 ^오리지널(Originality)}과 ^리프로덕션(Reproduction)}으로 구분되고 있다. ^오리지널} 판화와 ^리프로덕션} 판화의 구별에 관하여, 한국현대판화가협회 등 판화 미술계에서는 판의 제작을 작가 자신이 직접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판으로 찍어낸 판화에 작가의 친필 사인과 찍어낼 판화와 찍은 판화의 수를 함께 표기한 에디션(제작) 넘버가 있어야 ^오리지널} 판화이고, 작가 아닌 자가 ^오리지널} 판화를 제판술이나 그 밖의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제한 작품은 ^리프로덕션} 판화라고 구분하는 방법이 통용되어 왔다.

사. 한편, 작가가 판 제작을 마쳤으나 계획한 판화를 미처 다 찍어내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작가가 남긴 판으로 찍은 판화와 같이, 작가의 친필 사인이 없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판화라 할 수 없지만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제한 것도 아니어서 ^리프로덕션} 판화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어려운 판화에 대하여는, 그 원전성이나 작품의 가치 측면에서 복제품과 엄연히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1960년대에 프랑스 판화 미술계에서 ^오리지널} 판화와 ^리프로덕션} 판화와는 구별되는 제3의 개념으로서,

‘사후 판화(Posthumous Editon)’란 개념이 등장한 이래, 국내외 판화 미술계에서는 작가의 사후에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작가가 남긴 판으로 찍어낸 판화를 일반적으로 ‘사후 판화’로 명명하여 ‘리프로덕션’ 판화와는 달리 취급하여 왔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었을 당시를 전후하여 한국현대판화가협회에서 판화에 관한 규정에서 ‘사후 판화’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마련하는 등 국내 판화 미술계에서도 작가의 사후에 제작된 판화가 ‘리프로덕션’ 판화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아. 판화를 전시함에는 동일한 판을 이용하여 더 이상 판화를 찍지 않겠다는 의사를 관람객들에게 표명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러한 절판 의사의 표명 방법으로는 출품 작품들과 함께 C P판을 전시하는 방법과 원판을 철인으로 지저 전시하는 방법이 혼용되고 있고, 한편 여러 번의 판화 작업 끝에 일정한 수준과 질을 갖춘 판화가 나왔을 때 그 판화에 A P 표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A P판은 작가 자신이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작가 보관용 판화’로 이해되기도 하나, 사후 판화의 경우에도 판화의 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작가의 사후에 A P판이 제작되는 경우도 있다.

2. 명예 훼손의 성립

가. 예술 관련 기사에 의한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작품이나 창작 활동에 대한 견해 표명 또는 비평의 차원을 넘어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그러한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함에는, 기사의 명시적인 내용 이외에도 제목과 전문의 내용, 구성과 배치, 편집 의도 그 밖에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지식 수준, 독자들이 기사를 읽는 방법 등을 종합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와 언론 기관에 배포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된 판화들이 ‘리프로덕션’ 판화, 즉 복제 판화에 해당하는데도, 위 전시회를 주관한 원고들이 이를 ‘오리지널’ 판화인 것처럼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을 기망하였다고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고, 또한 ‘오리지널’ 판화와 ‘리프로덕션’ 판화의 구별에 관한 견해 표명이나 비평으로 볼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사와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갤러리 서미’ 화랑이 ‘리프로덕션’ 판화를 ‘오리지널’ 판화로 전시·판매하여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화랑 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 이 사건 전시회를 또 하나의 실례로 소개함으로써, 위 전시회가 ‘리프로덕션’ 판화를 ‘오리지널’ 판화로 전시한 사례라는 점을 은연 중 부각시킨 점, ② 작가의 사후에 그 상속인이 작가가 생전에 제작한 판으로 찍은 판화를 ‘오리지널’ 판화로 간주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된 판화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위 전시회에 출품된 판화들이 대부분 사후 판화에도 속하지 않는 ‘리프로덕션’ 판화라는 취지를 분명히 한 점, ③ 나아가, 위 전시회를 주관한 원고들이 ‘사후 판화’와 ‘리프로덕션’ 판화를 구별없이 전시하고, ‘작가 보관용 판화’를 전시한 반면 C P판을 전시하지 않는 등 관객들로 하여금 출품된 판화를 ‘오리지널’ 판화로 오해하게 할 만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리프로덕션’ 판화임을 분명히 한 다른 전시회와 대비함으로써, 마치 원고들이 ‘리프로덕션’ 판화들을 ‘사후 판화’ 또는 ‘오리지널’ 판화인 것처럼 관람객들을 기망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암시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보도케 할 목적으로 언론 기관에 자료를 배포한 점, 위 기사가 게재된 <미술세계> 독자들의 지식 수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기사와 자료는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된 판화들은 ‘사후 판화’ 이외에

위 오윤의 사후에 복제된 ^리프로덕션} 판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전시회를 주관한 원고들이 ^리프로덕션} 판화를 ^사후 판화} 또는 ^오리지널} 판화로 전시·판매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기사와 자료는 ^오리지널} 판화와 ^리프로덕션} 판화의 구별에 관한 순수한 견해 표명이나 비평이 아닌, 이 사건 전시회를 주관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앞서 살펴본 사실 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전시회에 출품된 판화들이 ^리프로덕션} 판화라는 위 기사 등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그와 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기사 등이 예술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비평 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및 자료의 배포로 그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 등을 게재·배포한 피고 정 , 박 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 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와 자료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와 자료의 게재, 배포 경위 및 내용,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위 <미술세계> 발행 부수와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위원회에 대하여 30,000,000원 및 원고 우 에 대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 등으로 명예 훼손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 발행의 <미술세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과 더불어 청구취지 기재의 각 신문에 광고문을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성격, <미술세계>의 독자 범위 및 피고 정 , 박 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술세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크기, 게재 면수와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미술세계>의 차례란에 [^학고재}의 ^오윤 판화전} 관련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제10면 상단부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같은 면 나머지 여백에는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본문을 15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들은 각자 원고 오윤기념사업위원회에 30,000,000원, 원고 우 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6. 6. 3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8. 4.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주식회사 미술세계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22.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강 한 승

판사 류 용 현

□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수사기록과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 기사를 게재하여 연예인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대법원 1998. 5. 8.자 판결 (96다36395)

서울고등법원 1998. 9. 14.자 결정 (98머9594(98나27885))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998년 5월 8일 모델 진 씨가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문화일보 발행사) 및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담당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 이 열람한 사건기록과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의 진술만을 근거한 것으로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진위확인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가 발행하는 문화일보는 1994년 6월 9일자 사회면에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 여자 텔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 - 호텔출입] 제하로 중견모델 진모 양(26)이 고급 룸살롱 및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기업 사장 등을 빙자한 박○○ 씨를 호텔과 여관 등지에서 접대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문화일보 발행사인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과 위 기사를 작성한 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사실조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 을 원고의 예명이라 오인하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취재원이 신빙

성이 있고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이며, 원고에게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이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인정, 1심 판결을 취소했었다(1·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272~284면).

원고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998년 9월 14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6다36395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진 (陳)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최창귀, 송달룡, 박종관

피고,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現代文化新聞)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유인근

2. 이

서울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96. 7. 2. 선고 95나39467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4. 6. 9.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문화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원심 판사와 같이 중견 모델인 진모 양 등이 음식점 주인 등의 소개로 돈을 받고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위 박○○을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피고 회사 소속 법원출입기자인 피고 이 은 원고가 위 기사내용과 같이 위 박○○을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위 박○○을 접대한 연예인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방송, 모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기사에 기재된 ^26세의 중견 모델 진모 양}이란 기재만으로도 그것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허위 내용의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이 은 1994. 6. 1.경 서울지방법원 형사1부 소속 검사로부터 “며칠 후 탤런트 김 이 조사받을 것이 있어 옆방 검사실에 출두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는데, 같은 달 9. 07:00 경 서울지방법원 당직실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위 박○○에 대한 공소장을 열람하던 중 위 박○○에게 속은 술집 주인 등의 부탁을 받고 그를 접대한 여자들 중에 김 , 진 , 최 지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자 위 김 이 유명 연예인인 김 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위 사기사건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된 사실, 위 이 은 위 검사로부터 위 공소장에 기재된 김 이 유명 탤런트인 김 과 동일 인물이고 진 도 유명 모델이라는 확인을 받고 이어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한 결과, 위 박○○이 검찰에서 자신을 접대한 ^ }라는 이름의 접대부는 예명이 ^진 }이라는 영화배우인데 영화잡지에 실린 원고의 사진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도 자신을 접대한 접대부 스스로 며칠 후 영화촬영이 있다는 등 광고모델 겸 영화배우임을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소개하여 준 음식점 주인 역시 그녀가 대한항공 청사에 세워진 광고탑 모델 세명 중 왼쪽에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였으며, 위 진술서에 첨부된 원고의 사진을 지칭하면서 원고가 자신을 접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신을 접대한 여자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위 박○○이 검찰에서 원고의 사진까지 확인하면서 자신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 원고를 지목하였고 수사담당 검사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이상 이 기사내용에 관한 취재원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기사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로서 마감시간까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으로부터의 사실확인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 이 ○○로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된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박○○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자신을 접대한 접대부들이 유명 연예인이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을 접대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 그런데 위 박○○에 대한 사기사건에서는 접대부들의 신원이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러한 위 박○○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 검사는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들을 소개하여 준 술집 주인 등을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명 연예인들의 접대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보강수사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수사담당 검사는 위 박○○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 이 ○○에게 연예인들의 접대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었고, 위 이 ○○은 위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자신이 열람한 수사기록만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 박○○이 언급한 대한항공 광고탑 모델에 관한 신원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이 ○○이 열람한 수사기록은 위 박○○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위 박○○의 진술만을 근거한 것으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는 자료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일간지에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또는 위 광고탑 모델의 신원 확인 등

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위 박○○의 진술이 진실인지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기사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기사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8.

재판장 대법관 정 귀 호

대법관 박 준 서

주 심 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이 용 훈

2심 決定文

사 건 : 98머9594(98나2788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달룡, 강항순, 최창귀, 박종관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유인근

2. 이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9. 15. 선고 94가합53636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6.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 1. 피고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4. 6. 9.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문화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중견 모델인 진모 양 등이 음식점 주인 등의 소개로 돈을 받고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위 박○○을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한 것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 바, 원고는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위 박○○을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소속 법원출입기자인 피고 이○○은 원고가 위 박○○을 접대한 연예인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방송이나 모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신문 기사에 게재된 ^26세의 중견 모델 진모 양}이란 기재만으로도 그것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허위 내용의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정사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8. 10. 10.까지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끝.

1998. 9. 14.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황 병 하

판사 조 영 철

□

기사 작성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며,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 1997. 12. 5.자 판결 (96나39389)

대법원 1998. 6. 23.자 판결 (97다58590)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998년 6월 23일 미국국적의 기자인 ○○○(한국명 문○○) 씨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사의 작성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 1994년 9월호에 [김일성 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 라는 제하의 기사로 장례식에 참석한 한 재미교포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인

문 씨가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기러기떼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언론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는 “취재원이 수차례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해왔고,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신뢰할 만하며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 동상 사진을 제공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금 3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307~318면 참조), 2심 법원에서는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사의 작성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며,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한 바 있다.

2심 判決文

사 건 : 96나393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 문 겸 항소인(Moon, 한국명 文)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겸 피항소인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변 론 종 결 : 1997. 10. 10.

원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2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심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월간조선> 119쪽에 제목은 고덕체 특호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

항 소 취 지 : 원고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2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당심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판결.

피고 :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1950년대 말경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서 외신부기자 또는 워싱턴 특파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1973년경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한 후 현재 미국의 유에스 아시안 뉴스 서비스(U.S. Asian News Service) 통신사의 대표이자 국제정치담당주필로 근무하면서 주로 남북한, 일본, 중국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오고 있는 기자이며, 원고가 작성한 기사는 1994. 1.경 국내 월간지인 <말>지가 위 통신사와 뉴스제공특약을 체결한 이래 <말>지에 다수 게재되고 있고, 국내 일간 신문지에도 외국 통신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으며, 피고는 신문, 잡지 발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간지인 <조선일보> 및 월간지인 <월간조선>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그 소속 월간조선부 기자인 소외 김 이 취재하여 작성한 [김일성 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 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월간조선> 1994. 9호 제119면부터 125면까지 사이에 게재하였는 바, 그 기사의 본문이 시작되기 앞서 [편집자주] 라는 제목 아래 ‘이 기사는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한 재일교포와의 국제전화를 통해 당시 평양의 모습을 취재하여 이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며 취재원인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그가 만났던 북한측 인사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당시의 정황은 가능한 한 숨겼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글머리에 실려 있으며,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1) 김일성의 장례식과 추도식은 희대의 코미디였다. 이런 비극적인 코미디를 나는 일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대성통곡하며 집단 공황증세를 보이다가도 “울지 말라.” 는 당의 지시가 있자 추도식에서는 울음을 뚝 그친 북한 동포들, 허름한 신발에 양말도 신지 못한 채 주석단에 올라가 농민대표로 추도사를 읽은 여성, 추도식이 끝난 뒤 위로연에서 “이제는 기러기때가 제일 앞서 가는 기러기를 따라가듯 김정일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고 충성을 맹세하는 교포들... 다양한 군상들이 펼치는 광경은 정말 희대의 코미디이자 희대의 비극이었다. 김일성이 2천만 주민을 이런 바보들로 만든 것은 역사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이 사건 기사의 시작부분임. 119면 1단~120면 1단). 김정일을 만나기 전에 여섯 번 검색을 당했다. 손수건만 지참하도록 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호위총국의 검색을 받았다(121면 2단). 7월 19일의 장례행렬 때나 20일의 추도대회에서나 김성애와 김평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가지. 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122면 2단). 19일까지 광란의 울음바다를 만들다가도 20일의 추도식에서는 울지말라 지시가 내리자 한 사람도 울지 않았다(123면 3단에서 124면 1단).

(2) 文 의 충성서약(122면 1단 소재목 고딕체 활자)

교포들은 김일성의 시신 앞에서 큰절을 하고 아부성 발언을 쏟아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열린 위로연에서 文 의 발언이 그 극치를 이뤘다. 文씨는 자기가 나서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서거 소식을 알려주자 카터대통령도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때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고 발언했다. 그 광경은 북한에서 내가 본 또 하나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 그래서 이번 북한 체류는 길고 지루했다(122면 3단).

다. 위 기사가 실린 <월간조선> 1994. 9호는 국내에서는 1994. 8. 20.부터 서점을 통하여 판매되었으며, <월간조선>은 항공편으로 미국에서 매월 약 650부 가량이 판매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월간조선>의 이 사건 기사 중 첫째, 김일성의 장례식에서 ‘[울지 말라] 는 당의 지시가 있자 추도식에서는 울음을 뚝 그친 북한 동포들’ 이라는 부분과 ‘19일까지 광란의 울음바다를 만들다가도 20일의 추도식에서는 울지말라 지시가 내려져 한 사람도 울지 않았다’ 는 부분, ‘김정일을 만나기 전에 여섯 번 검색을 당했다. 손수건만 지참하도록 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호위총국의 검색을 받았다’ (121면 2단). ‘7월 19일의 장례행렬 때나 20일의 추도대회에서나 김성애와 김평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가지. 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122면 2단)라는 부분은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기사이며, 둘째 원고와 관련된 원고의 충성서약이란 소제목 아래의 기사부분 역시 원고가 당시 카터 전미국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또 김일성 장례식과 추도식이 끝나고 1995. 7. 20. 저녁에 베풀어진 위로연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식사 도중 몸이 불편하여 바로 그곳을 나와 숙소로 되돌아 왔을 뿐 그곳에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평소 “인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원고가 카터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일성의 사망소식을 알려주었고, 위로연에서 원고가 “인민”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발언을 한 것으로 허위작성된 것인 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는 국내외 해외 특히 미국거주의 교포들 중 <월간조선>의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마치 친북인사, 김정일을 무조건 찬양하는 인사, 남북한 7천만 동포를 죽대없는 기러기떼로 폄하하는 인사로 매도당할 위험에 처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그동안 미국을 주된 생활근거로 삼아 남북한 관련뉴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재하고 다루어온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신문이나 월간지 등에 게재된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사의 내용 중 첫 번째 주장부분은 이 사건기사 전체의 내용이나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모두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비록 위 부분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둘째로 지적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월간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살핀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그 시작 부분에 김일성의 장례식과 추도식은 한 마디로 코미디였다는 취재원의 소감을 요약하면서 그 뒤에 추도식 당시의 북한 군중들의 태도와 농민대표로 조사를 읽은 여성의 모습, 기러기떼 운운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교포들의 행태를 열거하고, 다시 그 뒤에 [文

의 충성서약] 이라는 소제목하에 장례식이 끝난 다음 열린 위로연에서 행해진 해외 교포들의 아부성 발언 중 원고의 발언이 극치였다는 설명에 이어 원고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사실, 이 사건 기사에는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등의 북

한층 고위층 인사를 제외하고는 오직 원고 한 사람만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의 독자로서는 원고가 김일성 추도식이 끝난 뒤의 위로연에서 그 발언이 코미디로 느껴질 정도로 김정일에 대한 가장 심한 아부성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체제 및 김정일 등을 맹종하는 인사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월간조선> 1994. 9호가 국내 및 미국 내의 독자들에게 배포됨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사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재미교포의 체험기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에 대한 전망 및 북한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관련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거나 원고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이 이 사건 기사 전체의 분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취재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1994. 7. 8. 도쿄에서 북한 김일성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같은 달 13. 북경을 통하여 평양에 도착하여 같은 달 19.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장례식과 같은 달 20. 평양에서 열린 추도식에 각 참석하였으며, 위 추도식 후에 평양 목관관에서 열린 해외동포들을 위한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6호증의 3(갑 제2호증의 6과 같다), 4(갑 제2호증의 7과 같다), 5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김 , 조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월간조선부 기자인 소외 김 은 1994. 7.경 북한 김일성의 장례식 및 원고가 참석한 위로연에 참석한 재미교포(이하 취재원이라고만 한다)와 국제전화 통화를 하여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취재한 뒤 같은 해 8. 초순경 국내를 방문한 위 취재원을 서울에서 만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고 그로부터 국내에 소개된 바 없는 김일성 동상 사진 2장(을제8호증의 1, 2)까지도 교부받은 사실 및 그 후 피고의 월간조선부 편집부장인 소외 제 역시 취재원을 만나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재확인한 사실, 취재원은 평소 북한을 내왕하는 인사로서 과거에도 북한 관련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여 왔고, 동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신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사실, 위 김 은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기사가 위 취재원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실 [김 의 취재수첩(을제6호증의 6)에는 원고가 ‘7천만 인민’ 이 아니라 ‘7천만 동포’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취재원으로부터 사후에 제출받았다는 일기장(을제11호증)에는 김일성이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카터 미국 전(前)대통령이 운 것이 아니라 원고가 올면서 전화로 카터 전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사와 차이가 있으나, 기사의 주된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위 김 은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취재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기사 첫머리 부분의 편집자 주에서 그를 재미교포 아닌 재일교포로, 취재를 위해 동인을 국내에서도 직접 만났음에도 국제전화를 통하여만 취재한 것이라고 취재과정을 다소 다르게 밝힌 사실, 또 남북한이 체제를 달리하여 대치하고 있는 당시나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 위와 같은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원고가 평소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향적인 시각과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위로연에서 행한 발언 부분은 모두 진실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4, 5, 8,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 등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핀 갑 제1호증의 1, 2에 나타난 이 사건 기사의 전체의 내용에다가 원심증인 김 ○, 조 ○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후의 북한에 대한 전망과 북한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을 알게할 의도로 작성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작성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자료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도 그 기사 내용이 위와 같이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기사의 작성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게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발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앞서 살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경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취재원에 대한 신뢰 정도, 원고의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평소 원고가 가진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과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위 김 ○이나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위 김 ○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여부를 원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달리 볼 수는 없고, 또한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가 첫 번째로 지정한 부분이 진실에 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결국 그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등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5.

재판장 판사 박 인 호

판사 신 수 길

판사 김 재 협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7다58590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문(Moon, 한국명 文)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석영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97. 12. 5. 선고, 96나39389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그 시작 부분에 김일성의 장례식과 추도식은 한 마디로 코미디였다는 취재원의 소감을 요약하면서 추도식 당시의 북한군중들의 태도와 농민대표로 조사를 읽은 여성의 모습, 기러기떼 운운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해외교포들의 행태를 열거하고, [문의 충성서약]이라는 소재목하에 장례식이 끝난 다음 열린 위로연에서 행하여진 해외교포들의 아부성 발언 중 원고의 발언이 극치였다는 설명에 이어 원고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한 다음, 결론적으로 이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위로연에서 행한 발언 관련 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나 위 기사를 작성한 김 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가릴 필요도 없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23.

재판장 대법관 이 돈 희

대법관 최 중 영

대법관 이 임 수

주 심 대법관 서 성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1998. 7. 1.자 판결 (97가합88220)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8년 7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와 손 , 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기사와 저작물을 통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가 김일성 또는 김정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고, 위 사건 기사가 게재된 주간지와 저작물을 발행,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나 저작물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보다는 원고의 과거 전력과 행적에 대해 비방하려는 데 중점이 있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기사와 저작물이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물리쳤다.

피고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가 발행하는 주간지 <인사이드월드>는 1997년 8월 20일자, 9월 3일자, 10월 22일자를 통해서 원고가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친북 인사이며,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원고를 지지해 왔고, 원고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또한 피고 엄 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 가 지은 <김대중 X - 파일 제1탄,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라는 책자와 <김대중,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 ①, ②>라는 책을 발행하여 판매한 바 있었다.

判 決 文

사 건 : 97가합88220 손해배상(기)

원 고 : 김대중(金大中)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1.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의 4 과학기술회관 802호

대표이사 손

2. 손 (孫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의 4 과학기술회관 802호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내

3. 엄 (嚴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변론종결 : 1998. 6. 10.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손 는 연대하여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0. 22.부터 1998. 7. 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나. 피고 손 , 엄 은 연대하여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8. 25.부터 1998. 7. 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다. 피고 엄 은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3. 20.부터 1998. 7. 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손 는 각

가. 피고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가 발행하는 주간지 <인사이드월드(INSIDE THE WORLD)> 1997. 8. 20.자 통권 제9권 113호, 1997. 9. 3.자 통권 제9권 114호, 1997. 10. 22.자 통권 제9권 117호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모두 삭제하거나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각 주간지를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위 가항의 각 기사가 위 각 주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별지 제2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책(단행본),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기타 인쇄물을 편집, 발행, 판매,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광고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정기간행물 기타 광고지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 엄 은

가. 별지 제3, 4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위 제2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책(단행본),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기타 인쇄물을 편집,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위 가항의 각 저작물에 대한 광고 및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광고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정기간행물 기타 광고지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만약 피고들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반 행위 1건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연대 부담으로 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항과 판결, 피고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손 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각 주간지를 각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각 주간지, 제3의 가항 기재 각 저작물(반제품 포함), 제2의 다항, 제3의 나항 기재 각 인쇄물 및 위 각 저작물에 관한 인쇄물 지형과 사진(필름)에 대한 피고들의 각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들이 주문 제2의 나, 다항, 제3항 및 위 각 주간지에 대한 발행, 판매, 배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반 행위 1건에 대하여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이 사건 각 기사, 저작물의 게재·발행과 그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2, 갑 제25호증의 3, 5, 9, 10, 11, 27, 28, 29, 35, 38의 각 기재, 증

인 오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총재이자 위 당의 추천을 받아 1997. 12. 18.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후 1998. 2.경 대통령에 취임하여 그 직을 수행해 오고 있는 사람, 피고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6. 12. 27. 설립되어 시사 주간지 <인사이드월드(INSIDE THE WORLD)>를 발행해 온 출판사, 피고 손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주간지의 발행인, 피고 엄 은 ^새세상출판사)의 발행인이다.

나. 피고 손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가 위 피고 또는 특별취재반·취재부 명의로 각 게재된 <인사이드월드> 1997. 8. 20.자 통권 제9권 113호, 같은 해 9. 3.자 통권 제9권 114호, 같은 해 10. 22.자 통권 제9권 117호(이하 ^이 사건 각 주간지)라 한다)를 각 발행하여 전국 각지의 서점 등에 판매·배포하였다.

(1) 통권 제9권 113호

(가) 표지에 [97, 김대중 X-파일 ① [, [김대중 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 [김정일, 김대중 당선 원하고 있다] 는 제목을 게재하고, 6, 7면 차례란에 원고의 사진과 김정일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면서 위 표지와 같은 각 제목 아래 “북한은 YS 정권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오로지 DJ만을 지지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父子가 2대에 걸쳐 DJ의 당선을 바란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인가.” 라는 설명을 붙인 다음,

(나) 20, 21면에 [FOCUS 김정일, 김대중 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 는 제목과 [YS 정권과는 대화 안해, DJ와는 하겠다. 북한 고위관리 밝혀] 라는 부제로, “북한 수행원들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내린 특별지시)에 관한 언급에 따르면 김정일이 올 12월 남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씨의 당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김일성 주석은 남한 정치인 가운데 김대중 씨를 믿었으며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이번에는 김정일이 DJ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북한은 왜 김대중 씨의 당선만 바라고 있을까? 김대중 씨는 남한의 정치지도자인가? 아니면 북한측 정치인인가?” 라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다) 이어 22~26면에 [김대중 씨는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는 제목과 [DJ에게 전달한 광주에 보낸 돈 10만 달러 행방 불명, DJ 주변에 親北 세력 많아] 라는 부제로, 첫머리에서 “미국에서 김대중 씨를 적극 지지하던 前 韓民統 부의장 鄭 (정 · 74) 씨가 ^북한의 김정일은 죽은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고 소개한 다음, 위 정 이 피고 손 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김대중 씨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상 방위대 운운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한국 해군 역사상 ^해상방위대}라는 부대는 없다.”, “1983년 10월 LA에서 김대중 씨와 이회호 여사가 쓴 붓글씨를 교민들에게 팔았다. 교민들은 글씨 한점에 1천 달러(90만원 가량)에 구입하여 모두 13만 달러가 모금되었다. 그 중 10만 달러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가족과 구속 학생을 돕는 NCC에 전달해 달라고 맡겼는데, 훗날 광주와 NCC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한푼도 전달되지 않았다.”, “故 정 박사는 임종하면서 ^김대중을 조심하라.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김대중의 親북한 행동도 우려했다.”, “DJ가 1972년 1차 일본 망명 때 만든 일본 한민통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김대중을 지지하고 조종했다.”, “북한의 황장엽이 망명한 것에 대해 가장 불안한 사람은 DJ일 것이다. 황장엽은 북한과 DJ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4자 회담 북한 대표 김계관(외교부 부부장)의 측근은 YS 정권하고는 회담할 생각이 없고, DJ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회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통권 제9권 114호

(가) 표지에 [97, 김대중 X-파일 ②] 라는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차례란 7면에 [공산당 활동 얼마나? 몇번 체포됐나? 그 진상!] 이라는 제목 아래 “김대중 총재는 6·25 한국 전쟁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라는 설명을 붙인 다음,

(나) 26~29면에 위 차례란과 같은 제목과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법정으로 간 색깔 논쟁] 이라는 부제로, “국민회의 고문 오 씨 고정 간첩 생활하다가 수사망 좁혀가자 8월 15일 북한으로 탈출, 왜 DJ 주변에서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신한국당 대변인은 ^김대중 총재의 사상 검증을 위한 제언}이라는 성명을 통해, ^김대중 총재는 6·25 때 공산당원으로 체포되어 후퇴하는 미 해군 함상에서 총살 직전 미군 정보기관에 근무하던 동향 친구 김 씨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훗날 김대중 씨의 경호실장에 임명된朴 (박 · 예비역 해군 소장) 씨가 피신시켰다}고 밝히면서, 일본 政界 잡지와 워싱턴 투데이 신문 기사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1980년 2월경 일본 도쿄에서 발행된 ^김대중의 불투명한 의혹}이라는 책과 정승화 전 계엄사령관의 회고록 ^12·12 사건 정승화는 말한다}에 따르면, 김대중은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건준)에 선전원으로 가입 활동한 바 있고, 46년 말 남로당(공산당) 前身인 舊新民당 목포시당 조직부장으로 입당 활동 중 목포 경찰지서 습격 사건에 관련 체포되었다가 장인 車보륜의 구명 운동으로 풀려 난 적이 있다.”, “시바마 미노루가 1980년 봄부터 김대중 씨의 출생지인 하의도와 목포를 취재한 후 쓴 ^김대중의 좌절}에 따르면, 김대중은 민주애국 청년동맹 목포지구 부위원을 지냈고, 1946년 10월 31일 목포 경찰서 관내 대성, 남교, 서교 파출소와 지서에 방화한 후 도주했다가 체포당했으며, 1948년 9월 남로당 목포시당 청년부장, 상임위원으로 등록되었고, 또 1949년 2월 20일 동향 출신으로 남로당 섭외부장과 민주주의 민족전선 부위원장으로서 활약하다가 검거된 兪在植(유재식)에게 활동자금을 제공해 준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다) 이어 30~31면에 [김대중 X-파일 제1탄 색깔 논쟁 정치판에 등장] 이라는 제목과 [김일성은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 만들기에 애썼다] 는 부제 아래, 피고 손 가 지은 [김대중 X - 파일 제1탄,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라는 책의 표지를 컬러 사진으로 게재한 다음, “김일성은 74년 8월 평양에 온 일본 국회의원 북한 방문단과 3회에 걸친 대담에서 김대중을 구출하도록 호소했었다.”, “^김대중 X - 파일=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는 국제적인 저널리스트이자 INSIDE THE WORLD 발행인 손 씨가 16년간의 추적 끝에 지난 96년 2월 일본의 모처에서 찾아낸 비밀 자료에 의해 쓰여진 책이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김대중 씨를 남한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에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보적인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으로 만들라. 그러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남한을 침략하지 않으며 스파이를 보내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김일성은 또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향토예비군 폐지, 월남 파병 반대 등 김대중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일성이 일본 거물 정치인 우스노미야 도쿠마(宇都宮 徳馬・前 參議員) 씨와 3차례 회담한 자리에서 육성 녹음으로 밝힌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3) 통권 제9권 117호

(가) 표지에 [97, 김대중 X-파일 ⑤, DJ가 一山으로 이사간 것은 큰 금고가 필요해서였나?] 라는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차례란 9면에 [한국판 예수 그리스도 DJ가 一山으로 이사간 것은 큰 금고가 필요해서였나?] 라는 제목 아래, “김대중 후보의 결을 떠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가 돈에 집착한다고 말한다.”는 설명을 붙인 다음,

(나) 26~29면에 위 차례란과 같은 제목으로, “김대중에 대하여 최근 ^한국판 예수 그리스도}, ^호남 재벌}, ^공천 장사로 톡톡히 재미 본 정치인} 등 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한길연구회 김 회장(前 민주협 부의장)은 ^몇번씩 야당 총재를 하면서 공천 장사를 해서 재미 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다}고 말했다.”, “손 (前 국회의원), 김 (前 국회의원) 씨는 ^김대중 씨가 동교동에서 一山の 큰 집으로 이사한 것은 큰 금고를 만들어야 할 필요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신한국당의 김대중 秘자금 폭로 이후 그에게는 ^치더거사(치사하고 더럽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김대중 씨는 ^평화민주당 창당 때 모처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

다}, ^김대중이 장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하는 루머가 끝없이 나돌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엄 은 1997. 8. 25. 피고 손 와 체결한 출판 계약에 따라 피고 손 가 지은 [김대중 X-파일 제1탄,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라는 제목의 별지 제3 목록 기재 저작물(단행본 책, 이하 ^이 사건 제1 저작물}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전국 각지의 서점 등에 판매·배포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

앞, 뒤 표지에 각 친필 사인이 담긴 김일성의 사진과 원고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다음, 책 제목 아래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4만세기 전 평양 김일성 별장 은밀한 장소에서 김일성의 육성 녹음으로 만들어져 22년간 도쿄·평양에 간직되어 오던 비밀보고서”라는 설명을 붙이고, 속 표지에 ^김일성-우스노미야-김대중의 삼각관계}, ^일본 의원단과 함께 김일성과 회담하는 우스노미야 씨}, ^워싱턴에 망명 중인 김대중과 만나고 있는 우스노미야 씨}, ^김일성-우스노미야 회담 기록}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 해당 사진을 게재하였다.

(2) 본문

(가) “^김대중은 불리한 여론을 역전시키려고 언론 공작 기금으로 수억원을 마련, 언론계 간부와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광범한 로비를 하였고, 특히 추석에는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금품을 뿌렸다}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 전하고 있다.”(제1장 97년 12월 정치판에 다시 등장한 DJ : 49면)

(나) “。김대중 X-파일. 은 20여년 간 평양의 김일성 주석궁과 일본 정보 기관 비밀 캐비닛 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가 16년간 끈질기게 추적해 온 한 언론인에 의해 발굴, 세상에 공개되었다. DJ가 기회 있을 때마다 ^DJ에 대한 사상 문제와 색깔 시비는 정부 여당의 음해와 중상 모략이었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일본 월간 잡지 。정계. 의 96년 2월호에 실린 김대중 총재 관련 기사의 요지는 ^김대중 총재가 6·25 전쟁 때 공산당원이었고, 당시 체포된 450여 명과 함께 미 해군 함정에서 총살되기 직전 미 해군 정보부에 있던 동향 친구 김 의 조언에 따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다.”, “김대중이 부사령관으로 복무했다는 목포경비부 예하 해상방위대는 해군 역사 문헌 어디에도 없다.”(제2장 DJ는 무슨 색깔일까? : 70면, 78~79면)

(다) “중앙정보부장 서리 이 중장이 갖다 준 김대중 씨의 신상 기록철에는, 김대중이 6·25 전쟁 전에 좌익 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6·25 때 예비 검속되어 총살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총살을 면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놀란 것은 1960년대에도 불순 인물과 은밀히 만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대중 씨가 그 후에도 전향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제4장 김대중은 전향하지 않은 공산당 : 151, 155면)

(ㄸ) “사망한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은 한국 정치인 가운데 김대중 씨를 가장 믿고 있었으며 수 차례에 걸쳐 김대중 씨 구출을 위해 일본, 미국 등 해외 친북한 인사들에게 특별 자금을 제공하고 구명 운동을 벌이도록 했음이 ([김대중 X-파일] 에 의해) 밝혀졌다. 그뿐 아니라 김일성이 ^김대중 씨가 남조선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김대중의 한반도 정책과 주장이야말로 올바르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김대중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음도 밝혀졌다.” (제7장 김일성은 김대중을 가장 믿었다 : 262~263면)

(ㄹ) “김일성은 또 미국과 일본에 특사를 보내 ^미국과 일본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보적인 인물 김대중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미국과 일본하고도 대화를 하겠다}는 비밀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김대중 씨가 부르짖은 향토예비군법 폐지, 베트남 전쟁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반도 4대국 국교 수립은 ^북한이 가장 원하고 바라던 정책}과 일치한다.” (제8장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으로 만들라-미국에 요구 : 278, 292면)

(ㄺ) “3차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은 일본 의원들에게 ^미국이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고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북한은 남조선 침략을 포기하고 스파이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9장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침략하지 않겠다 : 312면)

라. 한편, 피고 엄 은 1996. 3. 20. [김대중,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 ①, ②(전2권)]이라는 제목의 별지 제4 목록 기재 저작물(단행본 책, 이하 ^이 사건 제2 저작물)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전국 각지의 서점 등에 판매·배포하였는 바, 위 책은 앞서 본 이 사건 제1 저작물 (나), (다)항의 내용, LA 교민들의 성금 착복 관련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가) “김대중 씨의 주목할 만한 공산주의 행적 중 4가지만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좌익의 선두에 선 인민의 친위대}로 불리워진 민주애국 청년동맹(약칭 민애청) 목포지부 부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뒤에 북한 간첩이 된 장금성에게 공산주의 교양 교육을 시켰다(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수사 기록). ② 민애청과 더불어 좌익 노선에 서서 눈부신 투쟁 역량을 발휘했던 해원동맹(海員同盟) 청년부장을 역임했다(김대중 연구가의 증언). ③ 1946년 10월 민애청이 주도한 목포 남교동 파출소 습격 방화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체포되어 20일 동안 감금된 적이 있었다(시바다 노보루, ^모색하는 한국}). ④ 1948년 9월 남로당 목포시당 청년부장으로 활동했고, 49년 2월 조선노동당 섭외부장 유재식에게 활동 자금을 제공했다(김대중 연구가 확인 메모).”, “김대중 씨가 6·25 때 부사령관으로 복무했다는 해상방위대는 군 인사든 민간인이든 그런 부대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없고, 6·25 전쟁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 김대중 씨는 자신의 애국심을 과시하려고 국민과 군을 속이고 있다.” (위 책 ① 제6장 김대중 씨를 얼마나 믿어야 하나 : 366면, 371~374면)

(나) “。젠보(全貌)。誌 1월호에는 ^김대중 씨가 5·18 광주 사건의 가해자인 전두환으로부터 1백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언론인 이 씨는 김대중 씨가 정계를 은퇴했다가 1995년 6월에 복귀한 것은 1995년 6월 지방자치제 선거와 96년 4월의 총선거 때 후보 공천을 하면서 돈을 받을 욕심에서였다}고 말했다.”, “옛 정치인 한 분이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김대중 씨는 지난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정권이 보내 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 책 ② 제7장 동교동 지하실 비밀 금고 : 321면, 346~347면)

2. 불법 행위 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과 초상권의 침해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와 저작물을 통해 원고가 해방 직후 건준, 신민당, 남로당에 참여한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친북 인사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수 없이 거짓말을 해 온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며,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오래 전부터 원고를 지지해 왔고, 원고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과 아울러, 원고가 김일성 또는 김정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 저작물을 게재 또는 발행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위 각 기사와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자의 단순한 견해나 추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저술 기법 면에서 관련자들의 증언과 문헌을 인용하는 형식을 일부 취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손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을, 피고 손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을, 피고 엄은 이 사건 제2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을 각 져야 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와 저작물은 유권자들이 당시 제1 야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원고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모두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 사회의 여러 이익을 고려, 언론의 자유에서 얻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관점에서 언론 기관의 보도나 논평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그것이 비록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먼저 이 사건 각 기사, 저작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건대,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 내지 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 내지 31호증,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3 내지 41호증, 을 제42호증의 1, 2, 을 제43호증, 을 제44호증의 1, 2, 을 제45 내지 57호증, 을 제58호증의 1, 2, 을 제59 내지 62호증, 을 제63호증의 1, 2, 을 제6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6호증의 1, 2, 을 제67 내지 81호증, 을 제82, 83호증의 각 1, 2, 을 제84호증, 을 제85, 86호증의 각 1, 2, 을 제87호증, 을 제88호증의 1, 2, 을 제89, 90호증, 을 제 91, 92호증의 각 1, 2, 을 제93호증, 을 제94, 95호증의 각 1, 2, 을 제96, 97호증, 을 제98호증의 1, 2, 을 제99 내지 116호증, 을 제117호증의 1, 2, 을 제118 내지 120호증, 을 제121호증의 1, 2, 을 제122 내지 133호증, 을 제134호증의 1, 2, 을 제13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6호증의 1, 2, 을 제137 내지 144호증, 을 제145호증의 1, 2, 을 제14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류

의 증언을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가 해방 직후 건준, 신민당, 남로당에 참여한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친북 인사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수 없이 거짓말을 해 온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며,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오래 전부터 원고를 지지해 왔고, 원고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이 사건 각 기사, 저작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 저작물을 게재 또는 발행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기사와 저작물의 내용, 그 게재 또는 저작의 동기와 경위, 시기 및 저작자인 피고 손 의 과거 경력, 원고와 위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나 저작물은 원고 개인의 경력, 저서, 연설, 회견, 원고가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토대로 원고의 사상을 공정하게 논평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원고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과거 전력과 행적에 대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문헌이나 관계자들의 증언을 내세워 원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 그 중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 저작물의 게재 또는 발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사건} 관련 기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손 가 이 사건 주간지 통권 제9권 117호 16~19면, 22~25면에 [검찰 김대중 비자금 수사 착수], [비자금 정국 돌파는 ^마지막 정쟁}], [대선으로 가는 마지막 ^복수 혈전}] 이라는 제목의 각 기사를 게재한 행위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11, 27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손 가 위 주간지의 위 지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사건}의 폭로 경위, ^김대중 비자금}의 규모와 내용,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상황, 정치권의 공방 내용과 여론의 동향, 향후 전망을 담은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기사는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각 기사의 내용을 살펴 보면, “신한국당은 1997. 10. 7.부터 3회에 걸쳐 ^김대중 후보가 6백70억원과 3백78억원의 비자금을 불법 조성하고 아들 등 친인척 명의로 분산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폭로 내용 가운데는 대우, 삼성 등 10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1백34억7천만원과 재벌 기업이나 사채업자를 통해 불법 실명 전환한 62억4천만원, 그리고 노태우 씨로부터 20억원 외에 6억3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신한국당의 고발이 있을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뇌물죄 또는 조세포탈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비자금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위 비자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는 내용과 그 밖에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성명 등 정치권의 공방 내용을 ^사실 보도} 형식으로 기술하고, 신한국당이 밝힌 ^김대중 비자금}의 내역을 도표로 만들어 그대로 소개한 다음, 위 비자금 폭로가 향후 정국, 특히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나름대로 분석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위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어떤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는 바, 위 각 기사가 위와 같이 위 비자금 폭로를 둘러싸고 전개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① 위 각 기사의 내용은 이미 다른 언론 기관의 보도를 통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가, 기사의 형식과 기법 면에서도 일반 정치 논평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② 위 비자금 사건에 대한 원고측의 입장이나 주장을 충분히 소개하는 한편, 신한국당이 폭로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평함을 잃지 않고 있으며, ③ 당시 원고는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로서 곧 실시될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위 비자금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서 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위 각 기사가 1만원권 지폐 그림을 배경으로 넣는 등 다소 선정성을 띠고 있고, 위 각 기사에 이어 앞서 본 「한국판 예수 그리스도 DJ가 一山으로 이사간 것은 큰 금고가 필요해서였나?」라는 제목의 비방 기사를 게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위 각 기사는 원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위 정치 현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논평하는 데에 그 중점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가 위 주간지에 위 각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 배상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와 저작물의 게재 또는 발행·배포로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각 그 행위로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각 기사와 저작물의 게재·발행 경위와 시기, 내용, 이 사건 각 주간지, 저작물의 발행 부수와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각 기사, 제1 저작물, 제2 저작물마다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 이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되고 나면 그 사후 구제만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피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장래 침해 행위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사건 예방적 구제의 수단으로 장래 침해 행위의 정지·금지라는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 저작물을 게재 또는 발행·배포한 동기, 경위, 시기와 횟수, 피고들이 [김대중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장차 이 사건 각 기사,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사, 저작물을 게재 또는 발행·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장래 침해 행위를 금지를 구할 권리로서, ① 피고 회사와 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각 주간지의 발행·판매·배포 금지를 구할 권리와 위 각 기사에 관한 광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책(단행본) 기타 인쇄물의 편집·발행·판매·배포 및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광고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의 게재 또는 방송의 금지를 구

할 권리가 있고, ② 피고 엄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인쇄·제본·발행·판매·배포와 위 제2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광고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의 게재 또는 방송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예방 청구권의 하나로, 이 사건 각 주간지, 저작물(반제품 포함) 및 위 각 인쇄물 또는 인쇄물 지형과 사진(필름)에 대한 피고들의 각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위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위와 같이 동산에 대한 점유를 집행관에게 이전하고 그 공시를 구하는 처분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및 위 처분의 성격과 효과에 비추어 본다면, 민사 본안 소송에서 위와 같은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간접 강제

한편, 부작위 채무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채무 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부작위를 명하는 것만으로 그 판결의 실효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판결 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민사소송법 제693조 제1항 참조), 위 나항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나항의 부작위 채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각 위반 행위 1건에 대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만약 피고들이 위 부작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반 행위 1건에 대하여 3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손 는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 행위 종료일인 1997. 10.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7.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 손 , 엄 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 행위 일인 1997. 8. 25.부터 1998. 7. 1.까지 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 엄 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 행위일인 1996. 3. 20.부터 1998. 7. 1.까지 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손 는 각 이 사건 각 주간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기사를 모두 삭제·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각 주간지를 발행·판매·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각 기사가 위 각 주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책(단행본)·정기간행물·보도자료·속보 기타 인쇄물을 편집·발행·판매·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광고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정기간행물 기타 광고지에 게재하거나 라디오·텔레비전·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③ 피고 엄 은 별지 제3, 4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인쇄·제본·발행·판매·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제2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책(단행본)·정기간행물·보도자료·속보 기타 인쇄물을 편집·발행·판매·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각 저작물에 대한 광고 및 위 제2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광고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정기간행물 기타 광고지에 게재하거나 라디오·텔레비전·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④ 만약 피고들이 위 ②항 또는 ③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에

개 각 위반 행위 1건에 대하여 3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1.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강 한 승

판사 류 용 현

□

자동차연비향상장치를 생산하는 원고와의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삼입, 편집보도하여 효과없는 제품의
제조업자라는 인상을 받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28.자 판결 (96가합12130)

서울고등법원 1998. 7. 9.자 판결 (97나47790)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998년 7월 9일 김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연비향상 및 매연절감장치인 사이클론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전후하여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거의 도산 지경에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 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 5월 20일 9시 뉴스 시간에 ^부스터 효과 없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테스트 결과 우수한 성능과 효과가 입증된 ^사이클론}의 생산업자인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부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설명에 이어 방송했다.

1심 법원은 피고 방송기관의 보도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음은 물론, 원고의 명예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判決文

사 건 : 96가합12130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변론종결 : 1997. 8. 14.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6. 30.부터 1997. 8. 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검증결과, 증인 최 , 이 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 , 이 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한국제품연구라는 상호로 ^사이클론이라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사이클론} 제품은 둥근 팔랑개비 모양으로 자동차의 에어크리너 혹은 센서 다음에 간단하게 부착되어 날개 자체의 비틀린 각에 의해 흡입공기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엔진에 유입시킴으로써 연료의 완전연소를 유도하여 적은 연료로 최대의 연비효과를 내게 하는 자동차 연비향상 및 매연절감장치이다.

나. 원고는 1987.경 위 ^사이클론}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1989. 10.경 미국특허를 취득한 이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15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였고, 덴마크, 그리스 등 세계 40여 개국에 특허, 의장 또는 상표권을 출원 중에 있는 등 위 제품은 국제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며, 원고는 그에 따라 1993. 창업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1994. 초순경 ^교통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관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 대전 구간에서 실시한 연비 및 매연절감장치 제품성능 실차(實車) 테스트에 자동차 기능 보조제품인 다른 부스터 업체와 함께 참가하였는데 그 테스트 결과는 별지 테스트 결과표와 같으며, 그 결과에 의하면 위 테스트에 참가한 제품 중 위 ^사이클론}만이 ① 연료소모량은 12% 내지 16%로 감소되고, ② 하이드로카본은 58% 내지 75%까지, 일산화탄소는 97%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위 시민의 모임이 위 테스트를 실시한 것은 시중에 출하되어 판매되고 있는 부스터 등의 매연절감장치 성능에 의문이 많다는 시민의 여론 때문에 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테스트 함으로써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 공사는 위 테스트 결과를 취재, 보도하는 것이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부스터 제품 또는 매연절감제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갖도록 하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위 테스트 결과를 보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성명불상 기사가 취재에 임하였다.

마. 원고는 위 ^사이클론} 제품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으므로 그 제품의 선전을 위하여 위 테스트 과정을 취재하는 피고 공사의 성명불상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위 제품의 성능의 우수성 및 특성에 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 공사는 피고 공사 보도국장의 주관하에 1994. 5. 20. 21:30경 케이.비.에스.(KBS) 텔레비전 저녁 9시뉴스 시간에 ^부스터 효과없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별지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

사. 한국제품연구에서 생산하는 위 ^사이클론}의 매출액은 1993.에는 24억원이었으나 위 보도 이후인 1994.에는 그 매출액이 11억으로 줄어들었고 1995.말의 매출액은 3억원이며 피고는 계속되는 반품과 판매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4차례나 부도를 내었다.

2. 판단

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방송을 포함한 언론기관의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언론기관에 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도주체의 보도행위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임을 먼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방송보도 주체에게 요구되는 보도자로서의 주의의무란 방송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확인의무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도의 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보도로서의 균형있는 보도와 동일 시간이나 동량지면을 할당하여 사물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편향되지 않게 취급하려는 보도경향으로서의 형평적인 보도를 의미하고, 보도의 객관성이란 전달자가 보도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며,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민법 제750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피용자인 소외 황 기자와 피고 공사의 보도국장, 소외 이 앵커는 위 사이클론 제품이 일반 부스터와는 달리 성능이 뛰어난 제품임을 위 테스트 결과에 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9시 뉴스 시간에 ^부스터 효과없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위 이 이 ^자동차 출력향상과 매연 감소에 효력이 있다는 부스터를 왜 자동차회사에서 부착하여 자동차를 출고하지 않는지 많은 사람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속사정을 알아보니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다음, 곧 이어서 원고의 인터뷰 장면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S부스터 대표}라고 자막처리한 화면을 보도하고 부스터 업체가 거의 과대선전광고를 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여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은 부스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인 양 오인하게 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황 및 피고 공사의 보도국장은 적어도 위 테스트 결과 우수한 성능과 효과가 입증된 ^사이클론}의 생산업자인 원고의 인터뷰장면을 부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설명에 이어서 방송하면서 마치 과대선전광고를 하는 부스터 업자인 양 방송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소비자들이 원고를 효과없는 부스터 제

품의 생산업자인 것처럼 오인케 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음은 물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방송기관의 보도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원고의 명예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후에 소비자나 관련기업체로부터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위 ^사이클론} 제품의 반품요구가 빈번하여 1993. 위 제품의 매출이 24억원이었던 것이 이 사건 방송보도 후인 1994.에는 11억원으로 줄어들었고 1995. 11.말경에는 3억원으로 감소하였는 바, 피고 공사는 원고가 위 제품의 매출감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 후 원고 주장과 같은 매출액 감소가 초래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오로지 이 사건 방송보도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경영미숙과 광고비 과다지출, 위 ^사이클론} 제품의 20여 개 모방품 등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보이는 바, 나아가 이 사건 방송보도와 위 매출액 감소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비율에 의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위 보도로 인하여 어느 만큼 직접적으로 매출감소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로 말미암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신분, 원고가 방송된 경위와 방송내용 및 방송시간, 이 사건 방송보도 후 쇄도한 반품요구와 그로 인한 막대한 매출액 감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액은 금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7. 8.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8.

재판장 판사 박 태 범

판사 박 정 수

판사 김 선 일

2심 判決文

사 건 : 97나4779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김

겸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석

피고, 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겸 피항소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변론 종결 : 1998. 6. 11.

제 1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28. 선고 96가합12130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6. 30.부터 1998. 7. 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 취지 : 1.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제1심 증인 최 , 이 강 당심 증인 황 의 가 증인, 제1심 법원의 녹화테이프 갑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한국제품연구라는 상호로 ^사이클론}이라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사이클론 제품은 둥근 팔랑개비 모양으로 자동차의 에어크리너 혹은 센서 다음에 간단하게 부착되어 날개 자체의 비틀린 각에 의해 흡입공기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엔진에 유입시킴으로써 연료의 완전연소를 유도하여 적은 연료로 최대의 연비효과를 내게 하는 자동차 연비향상 및 매연절감장치이다.

나. 원고는 1987.경 위 사이클론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1989. 10.경 미국특허를 취득한 이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15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였고, 덴마크, 그리스 등 세계 40여 개국에 특허, 의장 또는 상표권을 출원 중에 있는 등 위 제품은 국제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며, 원고는 그에 따라 1993. 창업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교통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은 시중에 출하되어 판매되고 있는 연비향상 및 매연절감장치(속칭 부스터라고도 칭하나, 이하에서는 연비향상장치라고만 하기로 한다.)의 성능에 의문이 많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험함으로써 그 성능을 검증하기로 하고, 1994. 4. 26. 경부고속도로 서울, 대전 구간에서 위 사이클론 제품을

포함한 11개 연비향상장치에 대하여 제품성능 실차(實車)시험을 실시하였는 바, 그 시험 결과는 별지 시험결과표와 같으며, 그 결과에 의하면 위 테스트에 참가한 제품 중 위 사이클론 제품이 연료소모량(12% 내지 16%로 감소), 하이드로카본(58% 내지 75%까지 감소), 일산화탄소(97%까지 감소) 등 3가지 시험 분야 모두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나머지 제품들은 그 대부분이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KBS 텔레비전의 뉴스보도 담당자들(이하 보도 담당자들이라고 한다.)은,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신중한 구매를 위한 판단자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시험현장에 임하여 원고를 비롯한 3명의 연비향상장치 제조업자와 인터뷰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제품의 작동원리와 특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다음, 그 인터뷰 장면과 위 시험결과를,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담당자, 환경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뷰 장면과 함께 편집하여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1994. 5. 20. 21:30경 KBS 텔레비전 저녁 9시뉴스 시간에 ^부스터 효과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였는 바, 그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보도내용 기재와 같다.

2. 불법행위의 성립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위 사이클론 제품은 시험결과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피고의 보도담당자들은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취지의 방송보도를 하면서, 원고가 위 사이클론 제품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장면(이하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이라고 한다.)을 함부로 삽입 보도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를 효과 없는 연비향상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위 사이클론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조업자들의 선전내용만 믿고 연비향상장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중한 구매를 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성능에 관한 시험결과를 사실 그대로 보도하면서, 장치의 작동원리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삽입하여 보도하였을 뿐,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할 만한 내용을 보도한 바는 없다고 다룬다.

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불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가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화면의 내용, 화면 구성의 방식, 화면과 대사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보도내용을 음미하며 시청하는 주의 깊은 시청자라면 달리 해석될 내용이라도,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시청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보아 타인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방송보도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판단

둘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의 보도담당자들은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보도하는

부분에서 자막으로 원고를 ^S 부스터 제조업자}라고 표시한 다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비향상장치의 성능시험결과를 보도하는 부분에 이르러, 한 두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자막으로 예외적으로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제품들 중에 ^S} 제품이 포함됨을 아울러 표시하였으므로, 주의 깊은 시청자라면 보도내용을 자막과 대조 분석하며 음미하여, 원고가 제조하는 제품은 ^S} 제품이고, 그 제품은 시험결과 다른 제품들과 달리 효과 있는 제품으로 나타난 ^S} 제품과 동일한 제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의 보도담당자들은,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할 의도 하에, 이 사건 보도 첫머리에 먼저 “부스터 효과없다.”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제조업자들이 연비향상장치의 효과를 과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그 선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암시하게 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2인의 제조업자를 등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 후, 이어 제조업자들이 선전 근거로 제시하는 종전의 각종 시험결과와 부정확성을 비판하고 나서, 종전의 시험결과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민단체의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들의 선전내용의 허구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비향상장치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선전내용은 효과 없는 제품을 효과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선전하는 광고공세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광고공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로 보도를 끝맺고 있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로서는 위와 같은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의 영향으로,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들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보도 첫머리의 뉴스진행자의 암시대로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제조업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원고는 뒤에서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위 사이클론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훼손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전인 1993년 한 해 동안 24억원이나 되었던 위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이 사건 방송보도 후인 1994.에는 11억원으로 줄어 들었고 1995. 11.말경에는 3억원으로 감소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는 오로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위 사이클론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된 때문이므로, 피고는 위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 의 증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안양세무서장의 회신결과에 반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전후하여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위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경에 이르러서는 거의 도산 지경에까지 이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정신적 손해 부분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위 사이클론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위 사이클론 제품의 개발 경위, 그것이 거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 사건 방송보도의 경위, 내용, 방송시간, 피고공사의 규모와 KBS 텔레비전 9시뉴스의 시청율, 이 사건 방송보도 후 피고가 반론보도의 차원에서 위 사이클론 제품의 우수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송한 점 기타 이 사건 반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7. 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 부분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9.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황 병 하

판사 조 영 철

□

범인 또는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8. 7. 14.자 판결 (96다17257)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998년 7월 14일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 달라며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유○○ 씨 등이 국가와 이 사실을 보도한 동아일보사 등 6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한 원심을 인용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 이라고 하며, “원고들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의 발표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 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혐의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사건에 개입하여 감금 폭행에 가담한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아 원고들이 죄증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용의자를 검거할 때까지 기소중지하자는 의견이 수사기관 내에서 보고된 사실들로 미루어 수사담당자들이 공표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며 피고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의 보도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침해받은 명예 및 인격권에 비추어 비교형량한다면 공공의 이익이 보다 무거웠다고 생각할 수 없고, 피고들의 소속 기자들이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경찰의 공식발표라 할 수 없는 부적법한 제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조사 없이 피의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을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를 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각 기사내용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며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1·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216~241면 참조)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6다17257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1. 유○○

2. 조○○

3. 정○○

4. 정○○

5. 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홍승기

피고, 상고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천

소송수행자 박준배, 함용호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 139

대표이사 김병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석현

4.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박병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5.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6.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이사 박권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 유○○는 1975. 7. 23. 소외 이○○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1990. 무렵 전주지방법원 88드4793호로 이○○과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망 정○○은 원고 유○○의 오빠인 소외 유○○의 친구이었다.

나.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0. 5. 24. 경 소외 윤○○으로부터 ‘유○○ 등에게 집단으로 감금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같은 달 29.자로 ‘피고소인 유○○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의 50대 남자 및 수 명의 폭력배와 함께 남편 이○○을 이혼재판이 끝나기 전에 청부살해하여 남편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받거나 또는 그를 공갈협박하여 많은 위자료를 받아대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같은 달 18. 23:00경 남편의 친구인 고소인 윤○○을 서울 서초구 소재 석주호텔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그를 다시 강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대화카페 지하실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같은 날 23:30경부터 이틀

날 05:00경까지 남편의 소재를 대라며 무차별 폭행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6. 27.경에는 이○○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이 사건을 살인예비음모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보고 원고 유○○ 등을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에는 유○○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하였던 서초경찰서 형사계 형사 7반 소속 경장 에게 배당되어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와 피고소인인 원고 유○○에 대한 피의사실조사 및 공범으로 지목된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 및 검거활동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담당 경찰의 원고 유○○에 대한 구속수사 건의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와 함께 거부되고, 원고 유○○로부터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라는 항의까지 받게 되자, 그 이후의 수사는 같은 경찰서 형사계 강력 2반 소속 경사 , 경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소인 유○○이 감금 폭행을 당하였다고 지정한 현장에 원고 유○○ 외에 망 정○○과 소외 김○○이 같이 있었던 것을 밝혀내고 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그들이 한결같이 그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고 같은 해 8. 1.경 피의자들 중 원고 유○○, 망 정○○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 같은 해 8. 1. 14:00경 서초경찰서 형사계 소속 형사계장 소외 김 는 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경찰출입기자들이 모여 있는 강남경찰서 출입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였으니 취재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이를 접한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소속 기자들이 서초경찰서에 취재를 위하여 모이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원고 유○○ 등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한다’ 는 내용을 설명하고 아울러 수사가 개시되게 된 경위와 그 경과 및 피의자 검거경위 등 사건 전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취재편의를 위하여 관련 수사기록을 자유로이 열람하도록 하였으며, 또 같은 달 2. 오전 중 뒤늦게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취재하러 온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 홍 및 같은 달 10. 역시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하러 온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속 주간경향 이 에게도 같은 내용의 설명과 취재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에게 원고 유○○ 및 망 정○○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바. 이에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같은 달 2.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의 사회면에 원고 유○○ 및 망 정○○ 등의 피의사실 관련 기사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도하였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같은 날 19:00경 정규 뉴스시간에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피의자 유○○가 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청부폭력배 정○○ 등에게 남편을 혼내 주고 위자료조로 5억원을 받아 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남편 친구인 피해자 윤○○을 불러내어 남편의 소재지를 대라며 감금 폭행하였다’ 는 요지의 기사를 약 30초 내지 1분간에 걸쳐 원고 유○○의 얼굴 모습과 함께 방영하였다.

사. 원고 유○○, 망 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3. 발부되었고, 원고 유○○와 망 정○○은 같은 달 29. 위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원고 유○○ 등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1991. 12. 19. 위

법원은 ‘고소인 윤○○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무죄판결은 1992. 11.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윤○○은 그후 1993. 10. 30.경 원고 유○○ 등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그가 ‘피해자 유○○와 그 남편 이○○ 간의 이혼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예하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담당 경찰관은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원고 유○○ 등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피고 언론 각사 소속신문 및 방송 기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고 유○○ 및 망 정○○ 등의 피의사실을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각 해당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원고 유○○ 및 망 정○○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위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언론 각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 유○○와 망 정○○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하등 공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공적인 활동을 한 바도 없었고, 원고 등에 대한 피고들(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의 보도는 원고 등에 대한 소외인들의 고소 후 2개월 간의 수사를 거친 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졌는 바, 그 단계는 아직 피의사실의 공표가 금지되고, 피의자들은 무죄의 추정을 받은 단계이므로 공공을 위한 지대한 정보의 이익이 없는 한 그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실명을 써서 보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침해받은 명예 및 인격권에 비추어 비교 형량한다면 공공의 이익이 보다 무거웠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 언론 각사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오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항변에 관하여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사단계에서 공적 인물도 아닌 원고 등의 혐의 내용을 실명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명예훼손을 끼친 행위는 이익형량의 법리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피고들의 보도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예하 서초경찰서 형사계 소속 형사계장 소외 김 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취재를 요청하고, 수사담당 경찰관이 판시와 같이 원고 유○○와 망 정○○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 및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판시와 같은 방송 보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원고 유○○와 망 정○○이 어떠한 범행을 하였다고 보도

한 바가 없다는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별지 목록 4. 기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경영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살펴건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원고 유○○와 망 정○○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그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임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위 보도는 ‘위자료 5억 받아내려 소송 남편에 청부 폭행’이라는 제목과 아울러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청부폭행을 의… 유○○ 씨’, ‘유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정○○’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바, 문법적으로 볼 때에나 위 기사로부터 일반적인 독자들이 받게 되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에나 위 기사는 원고 유○○는 ‘위자료 5억원을 받아내려고 이혼소송 중인 남편에게 청부 폭행을 가하였고’, 망 정○○은 ‘원고 유○○로부터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위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피고 언론 각사들의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었음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에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범,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 1942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2)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우선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의 공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흔적이 없다.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 예하 서초경찰서 형사계장 소위 김 와 수사 담당 경찰관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나아가 그들이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26조

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 제27조 제4항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 담당 공무원의 발표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 담당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1990. 8. 1.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유○○와 망 정○○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할 때까지 작성된 수사기록(갑 제9호증의 5 내지 9, 11 내지 17, 20, 2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등이다)을 살펴보면, 윤○○과 이○○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원고 유○○가 이○○을 살해하려고 예비, 음모하였다는 주장이 있고, 이○○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원고 유○○와 소외 이○○, 이○○, 송○○에 대한 간통고소장, 송○○의 자필 사실확인서, 유○○의 자인서 등의 각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윤○○과 이○○은 모두 ‘신라호텔에서 망 정○○이 있는 자리에서 20대 초반의 조직폭력배로부터(혹은 김○○으로부터) 이○○을 죽여 주면 유○○가 5억원 또는 1억원을 사례비로 주기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윤○○은 자신이 원고 유○○와 김○○ 등에 대하여 대화카페로 끌려가 그곳 룸에 감금되어 원고 유○○와 망 정○○ 등에 의하여 협박과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 유○○와 망 정○○은 이에 대하여 극력 부인하고 있고, 서초경찰서의 수사담당자들은 당시까지 김○○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윤○○과 이○○이 김○○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에 관하여 그 진위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한편 수사담당 경찰관인 경사 곽 과 경장 공 이 위 수사결과 발표일인 1990. 8. 1.자로 작성한 서초경찰서장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사담당 경찰관들은 원고 유○○와 김○○이 ‘현재 계류 중인 이혼심판이 결정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심판이 끝나기 전에 이○○을 살해하여 그 재산을 절반씩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을 살해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55조의 살인예비음모죄를 적용하기 위하여 조사하였으나, 김○○이 체포되지 아니하여 그 죄증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김○○을 검거할 때까지 기소중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서초경찰서의 수사담당 경찰관들이나 형사계장이 그들이 공표한 원고 유○○와 망 정○○에 대한 위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결국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피고 언론 각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언론 각사들이 공표한 내용은 모두가 적어도 원고 유○○가 남편 이○○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거나(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중앙일보사, 조선일보사), 남편 이○○과 이혼소송 중인데(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이○○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하여 폭력배에게 이○○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으며, 망 정○○은 원고 유○○로부터 그와 같은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 언론 각사들의 원고 유○○와 망 정○○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 적시는 피고 언론 각사의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원고 유○○와 망 정○○은 그들을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피고 언론 각사의 보도 내용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위 보도 당시에는 원고 유○○와 망 정○○을 모르던 사람도 피고 언론 각사의 보도를 접한 후에 원고 유○○나 망 정○○을 접하고 그들이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바로 그 과립치범이 아닌가 확인하려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유○○와 망 정○○은 지탄과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여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인격을 구현하는 데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유○○와 망 정○○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유○○와 망 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언론 각사가 원고 유○○와 망 정○○의 신원을 명시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초상을 보여주면서 한 원심판시의 각 적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언론 각사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원심이 피고 언론 각사의 위법성 조각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 언론 각사들이 논하고 있는 바와 같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언론 각사의 위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14.

재판장 대법관 최 중 영

대법관 이 돈 희

주 심 대법관 이 임 수

대법관 서 성

□

본문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장, 윤색된 제목은 그 제목만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

부산고등법원 1998. 7. 24.자 판결 (96나8789)

事實概要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998년 7월 24일 주식회사 금호무역이 부산매일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기사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하는 경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제의 성질상 다소간의 과장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표제만 읽고 본문을 읽지 아니하는 독자가 적지 아니하므로 본문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장, 윤색된 제목은 그 제목만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며, “이 사건 각 기사내용의 전체 흐름과 표제 및 부제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원고회사의 이 사건 제품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고 관계기관에 로비활동을 하여 정밀검사 없이 수입, 통관하여 유통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주식회사 금호무역은 1993년경부터 미국산 저알콜 맥아음료인 。킹스베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해 온 업체로 부산매일신문이 1994년 9월 8일부터 14일에 걸쳐 [수입음료에 표백제] , [표백제 함유 미산 음료 매년 수천t 수입] , [미산 음료 표백제 등 함유 알코도 방지, 부산검역소 - 수입업체 유착의혹] , [국립검역소가 국민건강 외면, 표백제는 수입음료 과장] 등의 제하로 원고의 수입제품인 。킹스베리。에 표백제가 검출되었으며, 부산 검역소와 유착하여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94부산중재16), 중재결과 불성립되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된 것이고 내용 또한 진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285~292면 참조).

判 決 文

사 건 : 96나878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금호무역(琴湖貿易)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기준, 이원철, 박권병, 김인일, 이호철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부산매일신문

부산 연제구 연산 2동 1637의 1

대표이사 김창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의숙, 최성주

변 론 종 결 : 1998. 6. 12.

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1996. 7. 11. 선고 95가합15356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8,038,75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정정보도 청구부분을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는 판결.

이 유 :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갑 제1호증의 6은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박 , 김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회사는 무역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 20. 설립되어 1993. 1.경부터 지·하 이레만 양조회사(G·HEILEMAN BREWING COMPANY INC.)가 생산하는 미국산 저알콜 맥아음료인 킹스베리(Kingsbury,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해 온 업체이고, 피고는 일간지인 부산매일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피고는 그가 발행하는 위 부산매일신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하였다.

(1) 1994. 9. 8.자 기사

제1면 우측 톱기사로 [輸入(수입)음료에 표백제] 라는 표제(가로로 쓴 대형 주제목) 아래 [부산 검역소, 맥주대용 。킹스베리. 。솔리츠. 등서 검출(가로로 주제목 아래에 붙인 소제목), 有害(유해) 알고도 조치 미흡 … 流通(유통), 소화·신경계 장애 등 유발 우려(세로로 두 줄로 쓴 부제)] 라는 부제를 달아 “국내 노래방 등에서 맥주 대용품으로 폭발적인 인기속에 널리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저알콜 맥아음료(탄산음료)에서 표백제인 유해성분 아황산염이 잇따라 검출돼 수입식품 검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국립부산검역소(이하 부산검역소라 한다)에 따르면 (주)금호무역이 지난 7. 22. 부산항을 통해 들여 온 미국산 수입 맥아음료 킹스베리(Kingsbury) 87.8t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9.4ppm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이번에 검출된 아황산염은 비록 국내 식품첨가물 기준상 기준치(30ppm) 이하이긴 하지만 독일 등 일부 선진국 맥아음료업체에서는 인체유해 등을 우려, 표백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첨가물 기준에 탄산음료 기준치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식품 기준치로만 정해져 있어 앞으로 인체유해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학계에 따르면 아황산염은 다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계 장애, 다발성 신경염, 골수 위축, 성장장애 등 각종 무서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맥아음료는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호주 독일 벨기에 등으로부터 20여종이 국내에 연간 수천톤씩 마구 수입되고 있으나 그 동안 표백제인 아황산염 잔유량에 대한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략)… 이들 2개 업체는 특히 국내 식품위생법상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황산염 함유 사실을 감춘 채 통관수속을 밟으려다 검역소에 적발되었다. …(후략)…” 라는 기사를,

(2) 같은 달 9.자 기사

제23면(사회면) 중앙 아래부분에 [표백제 함유 美産(미산) 음료 매년 수천t 輸入(수입)]이라는 표제하에 [부산항 통해 아황산염 檢査(검사)않아]라는 부제를 달아 “속보=최근 (주)금호무역과 (주)성화엔터프라이즈가 수입한 미국산 맥아음료(탄산음료)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검출돼 수입음료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략)… 그동안 부산항을 통해서만도 한 해 수천톤씩 아황산염 잔류량에 대한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략)… 부산항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수입된 외국산 맥아음료는 19,360여t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6천여t이 유해성 우려가 있는 미국산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특히 이들 수입 미국산 맥아음료 중에는 부산검역소의 검사과정에서 아황산염이 검출된 (주)금호무역이 수입한 킹스베리 제품도 지난해분 843t, 올해분 821t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략)…”라는 기사를,

(3) 같은 달 10.자 기사

제1면 좌측 상단에 [“試藥(시약)없다” 發癌(발암)물질 검사 포기]라는 부제 옆에 [수입음료 그냥 통과시켜] [부산검역소]라는 표제를 달아 [부산검역소가 최근 외국산 맥아음료에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특수정보를 입수하고서도 표준시약을 구하지 못했다는 식연찰은 이유로 검사를 포기, 적합판정을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립부산검역소가 검사를 취소한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반드시 순도시험을 통해 비소, 중금속의 기준치(비소 4ppm 이하, 중금속 20ppm 이하) 초과 여부를 가리도록 되어 있고 산화방지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식품학자들은 에리소르빈산나트륨에 함유된 비소나 중금속의 순도가 기준치 이상 잔류된 상태에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돼 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9일 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최근 외국산 맥아음료에 아황산염과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7월부터 기존의 8개 항목에 이들 두 물질을 추가 검사항목으로 정했으나 표준시약이 없어 아황산염이 검출된(본보 8일자 1면 머리기사 보도) 미국산 킹스베리, 솔리츠를 비롯 6개 제품에 대해 에리소르빈산나트륨 검사없이 적합 판정을 내주었다고 한다. …(중략)… 부산 경성대 김 교수는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발암물질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금속이나 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철저한 순도시험을 통한 검사없이 음료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후략)…”라는 기사를,

(4) 같은 달 11.자 기사

제23면 중앙부분에 [미산음료 표백제 등 함유 알고도 방치] , [부산검역소 - 수입업체 유착 의혹]이라는 표제하에 [확인 후 2개월여 검사 않아]라는 부제를 달아 “속보=부산검역소가 외국산 맥아음료에서 표백제 메타중아황산칼륨(아황산염)과 산화방지제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들어 있는 사실을 지난 4월에 이미 확인하고서도 지난 6월말까지 2개월여 동안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제품에 대해 이들 항목의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수입업체와의 밀착 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검역소는 특히 최근 특수정보를 입수, 지난 7월 이후 수입된 6개 회사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아황산염 검사를 실시, 。 킹스베리, , 。 솔리츠, 등 미국산 2개 제품에서 아황산염 함유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해(본보 8일자 1면 보도)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중략)… 10일 맥아음료 수입업체인 (주)우성식품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수입대행사인 (주)두레산업을 통해 반입한 미국산 맥아음료 。 스트르. 의 제품 겉면에 메타중아황산칼륨, 에리소르빈산나트륨 함유사실을 표기한 채 부

산검역소에 식품검사를 신청 정밀검사를 받은 뒤 지난 4월 29일 이 제품을 수입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산검역소는 이날 이후에도 지난 5, 6월 2개월 동안 최근 아황산염이 검출된 금호무역의 。킹스베리。 1백54t과 성화엔터프라이즈의 。슬리츠。 1백20t을 비롯 20개 회사 제품 1천여t에 대하여는 계속 이들 표백제와 산화방지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검역소는 검사과정을 둘러싸고 맥아업계에서 진정, 고발사태가 일어나자 마지못해 지난 7월 이후 수입된 제품에 한해 뒤늦게 아황산염 항목만 추가로 검사항목에 넣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5) 같은 달 13.자 기사

제22면 좌측 상단에 [부산검역소 輸入(수입)식품검사 “걸치레”] 라는 표제에 [전문인력(인력) 10%도 안돼] , [업무량 날로 늘어 반복실험 생략] 이라는 부제를 달아 “부산검역소가 식품검사에 필요한 전문검사인력을 적정인원의 10%도 확보하지 못해 반복확인검사 없이 단 1회 검사만으로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검사 업무를 극히 형식적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10일 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등 일반검사와 함께 세균학적 이화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로 나뉘어 있고 정밀검사 시에는 최소한 3회 이상의 반복 확인실험을 통해 적합, 부적합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각 국립검역소의 내부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검역소의 경우 본사 취재팀이 최근 아황산염 검출로 물의를 빚은 수입 맥아음료의 정밀검사 실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반복실험 없이 단 1회 실험만으로 적합판정을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부산검역소의 식품검사가 이처럼 크게 허술한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검사량에 비해 검사를 담당할 전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략)…” 라는 기사를,

(6) 같은 달 14.자 기사

제5면 좌측 상단부분에 이 사건 제품의 사진(3개의 캔을 나란히 세워 두고 찍은 사진으로, 그 가운데가 앞서 본 슬리츠 제품, 좌 우측이 원고의 이 사건 킹스베리 제품이다)을 싣고, [국립검역소가 國民(국민)건강 외면, 표백제 든 輸入(수입) 음료 波長(파장)] 이라는 표제 아래, [安全(안전)관리 허술·일부제품은 무검사 通關(통관)] [。有害(유해)。 알고도 업체 반발 우려。 伏地(복지)。 여진] 이라는 부제를 달아 위 (1)항 내지 (5)항의 기사를 요약하여 다시 게재하면서 “…(전략)… 。킹스베리。 。슬리츠。 등 미국산 2개 맥아음료 제품에서 최근 검출된 아황산염은 비록 국내 식품첨가물 기준상 기준치(30ppm) 이하이긴 하지만 독일 등 일부 선진국 맥아음료업계에서는 인체유해 등을 우려 표백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식품위생법상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포장에 표시토록 돼 있으나 이를 맥아음료 제품은 그 동안 부산검역소의 검사소홀로 아무런 표시없이 국내에서 유통되어 왔으며 국내 소비자들은 유해성분인 표백제나 산화방지제 함유 사실을 모른 채 수입음료를 마시는 결과를 빚었다. …(중략)… 부산검역소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맥아음료의 경우 비록 표백제나 산화방지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일단 검사절차를 거친 만큼 지금에 와서 이 제품들을 수거, 재검사를 하거나 첨가물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것은 업계반발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유해성분 함유사실을 제품에 표기할 경우 대리점 공급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20~30% 하락하게 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쉬워 사전에 이들 항목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소문도 있다. …(후략)…” 라는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다. 위 각 기사 내용은 피고 신문사 소속 부산검역소 출입기자인 소외 김 가 작성한 것

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가 판매한 위 。킹스베리。 제품은 미국의 5대 양조회사의 하나인 하이레만 양조회사의 제품으로 세계 42개국에 판매되는 저알콜 맥아음료로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41%에 이르는 우수 제품이고, 위 제품에서 검출된 메타중아황산칼륨은 표백제로 국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상 그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또 위 제품에는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사용하지 아니하여 뒤에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검출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피고 회사의 일간지인 부산매일신문에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회사가 수입하여 시판한 위 킹스베리 제품이 표백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암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고, 관계기관에 로비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악덕 기업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 내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금 228,038,7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므로 설사 위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다룬다.

나. 쟁점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발행의 위 신문의 위 각 기사 중 원고 회사가 수입하여 시판한 이 사건 。킹스베리。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표백제 성분인 아황산염이 검출되었고 원고 회사는 아황산염 함유 사실을 감춘 채 통관수속을 밟으려다 적발되었으며, 당국에서 발암물질 함유여부 검사를 포기하고 위 킹스베리 제품을 포함한 수입음료를 통과시켜 위 킹스베리 제품에 발암물질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 당국에서 미국산 음료에 표백제 등 함유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 부산검역소와 수입업체 사이에 유착의 의혹이 있고 관련 업체에서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기사와 함께 원고 회사가 수입한 위 。킹스베리。 제품의 사진을 게재한 점 등 위 각 기사내용 자체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위 부산매일신문에 게재한 위 각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각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혹은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위 쟁점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공익성에 관한 판단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기사는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미국산 맥아음료에 표백제인 아황산염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동안 관할 검역소에서 수입음료에 대하여 인체 유해성분 함유여부에 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입 통관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바로 전체 국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식품검사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여, 위 각 기사의 내용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리고 위 각 기사를 게재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아래 진실성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기사는 피고 신문사의 부산검역소 출입기자인 소외 김 가 처음 수입식품에서 최초로 표백제가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부산검역소 관계자들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취재하는 과정에서 부산검역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여 여러 식품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듣고 게재한 다음 수입식품의 검역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추적하여 시리즈 형식으로 게재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각 기사의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식품검사 행정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고 있는 점에서 처음 위 각 기사를 게재한 당시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김 기자가 경쟁업체의 사주나 다른 개인적 목적에서 원고 회사의 수입제품인 이 사건 제품을 비방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위 각 기사를 취재보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4, 5, 8, 32, 33, 34, 36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원심 증인 박 , 김 , 김 , 당심 증인 장 의 각 증언(다만 원심 증인 박 , 김 , 당심 증인 장 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김 기자는 수입 맥아음료에서 표백제가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맥아음료업체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4. 9. 6.경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맥아음료에 관하여 취재한 사실, 그 후 같은 달 8. 위 부산매일신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가 나간 다음 원고 회사 직원들의 항의방문을 받고 그들을 만난 적이 있으며, 그런 다음 원고 회사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사내용에 대한 항의를 받고 “그러면 앞으로 시리즈로 때리겠다.” 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김 기자가 다른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정보수집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되자 악의적으로 원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4, 5, 8, 32, 33, 34, 36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 증인 박 , 김 , 당심 증인 장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사 위 각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을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위 김 기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을 비방할 목적에서 위 각 기사를 취재하여 게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진실성에 관한 판단

(1)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상의 규정

가. 식품위생법(1991. 12. 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 장관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고, 제12조는 “보건사회부 장관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고, 제16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보건사회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 통관절차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93. 7. 3.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910호, 이하 같다. 부칙 제1, 2조에 의하면 식품 등을 수입하는 자가 위 개정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표시기준에 대한 개정조항만은 위 개정규칙의 시행일인 1993. 7. 3.부터 1년이 경과한 1994. 7. 3.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사항들은 모두 위 규칙의 개정시부터 시행되었다) 제5조(표시기준 등)에 의한 별표 2에서 수입식품에 대하여 메타중아황산칼륨 등의 표백제와 에리소르빈산나트륨 등의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물에 대하여는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립검역소장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이에 따른 별표 6에서 수입식품검사는 서류검사와 관능검사, 정밀검사로 나누되 첨가물이 사용된 식품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수단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에의 적합여부 또는 특정한 물질의 함유·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하는 정밀검사를 하고, 수입하는 식품 등 중 국내에서 원래의, 포장대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는 위 별표 2에 의한 표시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식품공전(1994. 7. 22. 개정전의 것)에는, 탄산음료류에 관하여(식품공전 12-2 탄산음료류 참조)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위 탄산음료류 제4항 참조)은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식품별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일반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서 표백제 및 산화방지제는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고(위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조항은 1994. 7. 22. 식품공전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개정전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식품별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첨가물을 탄산음료류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첨가물인 보존료에 관하여는 안식향산 600ppm 이하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Potassium Metabisulfite)에 관하여 과실류 및 단순가공품 등의 기타식품에 있어서는 그 1kg에 대하여 0.03g(30ppm),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에 관하여 그 순도시험에서 비소는 4ppm, 중금속은 20ppm 이하로 그 순도가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위 각 기사의 진실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각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3, 7 내지 36,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3 내지 9, 1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주, 김 , 김 , 당심 증인 장 의 각 증언, 당심의 경성대학교 종합식품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① 피고 신문사의 부산검역소 출입기자인 소외 김 는 1994. 9. 5.경 수입 맥아음료에서 표백제가 최초로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부산검역소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달 6.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맥아음료가 노래방 등에서 맥주대용 음료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 등 맥아음료에 관한 사항과 원고 회사에서는 그 동안 첨가물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어 같은 달 7. 부산검역소에서 “수입되는 맥아음료에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염이 함유되었다는 정보가 있어 같은 해 7월부터 수입되는 제품(6개사)에 대하여 표백제 함유여부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원고 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제품에서 9.4ppm, 소외 성화엔터프라이즈사에서 수입한 솔리츠에서 3.3ppm(각 기준 30ppm) 등 미국산 2개 업체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검출되었고 독일산, 호주산 및 벨기에산에서는 표백제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표백제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위 미국산 2개 업체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갑 제4호증의 14)를 발표하자, 그 동안 자신이 부산 시청 등 식품관계기간에서 취재하여 온 경험으로 그 관계기간의 종사자와 부산경성대학교 김 교수 등 식품관계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위 신문에 위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②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메타중아황산칼륨(아황산염도 같은 성분으로 보인다)은 식품 중의 색소가 산화 등에 의하여 퇴색 또는 착색되는 것을 방지하거나(표백제) 식품의 부패나 변패를 방지하는(보존료) 성분을 가진 것으로, 소화관 점막 자극 등의 독성이 있고,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공전에서는 표백제로 분류하여 기타 식품(맥아음료 포함)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3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보존료로 분류하는 나라도 있고 음료식품에는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③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과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 등의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에 그 첨가물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공정과정에서 메타중아황산칼륨이 표백제(안정제)로 첨가되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제품의 공정과정에 관한 설명서(갑 제4호증의 10)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서는 그 동안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수입신고서와 제품에 첨가물인 위 메타중아황산칼륨이 표백제로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그 수입검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성상, 가스압, 납, 카드뮴, 주석,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등에 관한 성분규격검사만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하여 왔다.

④ 또한 부산검역소에서도 수입식품을 검사함에 있어 수입하는 식품 중 국내에서 원래의 포장대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이 사건 제품은 이에 해당한다)에는 위와 같은 첨가물 등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동안 수입업체가 첨가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은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식품공전상의 성분규격검사만을 하여 왔다.

⑤ 다른 한편 1994. 3. 24. 소외 주식회사 두레산업이 미국산 맥아음료인 스트로(stroh) 94t을 수입하면서 위 맥아음료에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 20ppm과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 10ppm이 함유된 것으로 표시하여 수입신고를 한 바 있었으며, 그런데도 부산검역소에서는 다른 수입 맥아음료에도 표백제와 산화방지제가 함유되었는지의 여부를 전혀 확

인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6. 15.경 보건사회부 식품국으로부터 수입 맥아음료에 제품의 포장이나 수입신고서에 표시된 것 이외에 표백제 및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비로소 수입 맥아음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첨가물의 함유여부를 검사하게 되었다.

⑥ 그 결과 원고 회사가 1994. 7. 22.과 같은 달 23. 수입신고한 이 사건 제품에서 9.4ppm의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각 검출되고 앞서 본 솔리츠 제품에서 3.3ppm의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검출되었으며, 또 다른 첨가물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에 대하여는 부산검역소에서는 시약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하여 같은 7. 29. 국립보건원에 그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그 곳에서도 시약을 구매 중이라는 회신을 받게되어 검사가 지연되자 수입업자들의 민원 등을 우려하여 같은 해 8. 31. 검사 철회를 요청하여 위 에리소르빈산나트륨 함유여부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검사를 종결하고, 위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의 표시에 그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누락된 제품 유형(탄산음료)의 표시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에서는 같은 해 9. 15. 이 사건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에 한글로 위 사항을 표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제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⑦ 한편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발암물질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 회사가 수입 판매한 이 사건 제품에는 첨가물로 에리소르빈산나트륨 등 산화방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성분은 함유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신문기사가 나간 이후 부산검역소에서 시약을 구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에리소르빈산나트륨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제품에 에리소르빈산나트륨 등 산화방지제는 함유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⑧ 부산검역소의 현 검사요원으로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기에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하여 정밀검사를 함에 있어서도 반복검사를 하도록 관행화되어 있으나 단 1회 실험만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반복검사를 생략하고, 1회 실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만 반복검사를 하고 있다.

(나) 위 각 기사의 진실여부

(a)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독자가 신문을 읽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 38032 판결 참조), 기사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하는 경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제(제목)의 성질상 다소간의 과장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표제만 읽고 본문을 읽지 아니하는 독자가 적지 아니하므로 본문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장, 윤색된 제목은 그 제목만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앞서 본 기초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진실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위 1994. 9. 8. 기사 : 위 기사내용 중 수입 맥아음료인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 등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아황산염은 국내 식품첨가물 기준치(30ppm) 이하이긴 하나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맥아음료업계에서는 인체유해 등을 우려하여 표백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식품위생법상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식품학계에 따르면 아황산염은 다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계장애 등

각종 무서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 특히 맥아음료는 지난 88년부터 연간 수천톤씩 마구 수입되고 있으나 표백제인 아황산염의 잔류량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부분은 과장된 것이고, 수입음료에 “표백제”라는 표제하에 [부산검역소 맥주대용 。킹스베리。술리츠。], [유해알고도 조치 미흡… 유통], [소화·신경계 장애 등 유발우려] 라는 부제만을 보면 이 사건 제목에 소화·신경계 계통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표백제가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보여, 그 허용기준치 여하에 불구하고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과장된 표현으로 보인다.

② 같은 달 9.자 기사 : 위 기사내용 중 미국산 맥아음료가 그 동안 아황산염 잔류량에 대한 검사없이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어 왔다는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한 맥아음료 중 미국산 제품이 유해성 우려가 있고 그 중에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이 지난해분 843t, 올해분 821t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은 인체에 유해성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③ 같은 달 10.자 기사 : 위 기사내용 중 부산검역소에서 수입맥아음료에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표준시약이 없어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6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포기, 적합판정을 해주었다는 부분,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중금속과 비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순도시험을 통한 검사없이 음료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소외 김 교수의 코멘트 부분은 진실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김 교수의 코멘트 부분에서 위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발암물질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위 기사의 표제가 [시약없다 발암물질 검사 포기] 라고 되어 있고 위 기사내용 중 식품학자들은 에리소르빈산나트륨에 함유된 비소나 중금속의 순도가 기준치 이상 잔류된 상태에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돼 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기사의 표제와 그 기사내용에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을 거명하고 이를 포함한 6개사 제품에 관하여 시약이 없어 에리소르빈산나트륨 함유여부의 검사없이 적합판정을 해주었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제품에 발암물질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같은 달 11.자 기사 : 위 기사내용 중 1994. 4.에 이미 미국산 맥아음료에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과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포함된 것으로 수입신고한 업체가 있었다는 부분과 그런데도 부산검역소에서는 같은 해 6월까지 수입된 맥아음료에 관하여 표백제와 산화방지제 함유여부를 전혀 검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진실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검역소에서 같은 해 4월 맥아음료에 표백제와 산화방지제가 함유된 사실을 알고서도 같은 해 6월까지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된 맥아음료에 관하여 표백제와 산화방지제 함유여부의 검사를 하지 않아 수입업체와의 밀착의혹이 있고, 같은 해 5, 6월 2개월 동안 최근 아황산염이 검출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 154t과 성화엔터프라이즈의 술리츠 제품 120t 등 1천여 톤에 대하여 표백제와 산화방지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검사과정을 둘러싸고 맥아업계에서 진정, 고발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이후 수입된 제품에 한하여 아황산염 항목만 추가로 검사항목에 넣어 검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제품에 표백제와 산화방지제가 포함되어 있어 그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⑤ 같은 달 13.자 기사 : 위 기사내용은 국립부산검역소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검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⑥ 같은 달 14.자 기사 : 위 기사내용은 앞서 본 5회에 걸친 기사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그 내용의 진위여부는 앞서 5회의 기사내용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기사의 첫머리에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내용 중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유해성분 함유사실을 제품에 표기할 경우 대리점 공급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쉬워 사전에 이들 항목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부분도 있어, 전체적으로는 위 기사내용에 관련된 제품이 이 사건 제품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관계기관에 로비활동을 한 업체가 원고 회사일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위 부분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각 기사를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생각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기사는 부산검역소가 외국산 맥아음료에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과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들어 있는 사실을 1994. 4월경 확인하고서도 같은 해 6월말경까지 수입 맥아음료에 대하여 첨가물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이후에 수입된 맥아음료에 대하여 첨가물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제품 등 미국산 맥아음료 2개 제품에서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검출되었고, 식품위생법상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포장에 표시하고 수입신고서에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원고 회사는 그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왔으며, 부산검역소는 에리소르빈산나트륨도 검사 항목으로 정했으나 표준시약이 없어 그 검사없이 이 사건 제품 등에 적합판정을 내려주었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정밀검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는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메타중아황산칼륨은 식품위생법상 첨가물인 표백제로서 다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 계통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령상 이 사건 제품에는 30ppm 이하가 함유된 경우에는 무해한 것으로 보고 그 기준치를 정하여 놓았는데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농도는 위 기준치 이하인 9.4ppm이었음에도 위 각 기사에서 원고 회사명과 이 사건 제품명을 그대로 밝히면서 기사를 게재한 사실, 특히 위 각 기사내용과 위 1994. 9. 14.자 마지막 기사에 실린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종합하여 위 기사를 보면 이 사건 제품에서 기준치 이하이긴 하나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원고 회사에서 수입, 판매한 이 사건 제품에는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산검역소에서 표준시약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포기하였고, 원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제품에 위 메타중아황산칼륨과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는 등 관계기관과 유착되어 그 동안 위 첨가물검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품을 수입, 통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에는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함유되지 아니한 점 등 기사내용의 전체 흐름과 표제 및 부제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고 관계기관에 로비활동을 하여 정밀검사 없이 수입, 통관하여 유통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의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위 김 기자가 앞에서 본 각 허위 내지 과장된 기사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식품위생법령상의 허용기준치 이하의 첨가물이 함유된 제품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품의 사진과 함께 그 제품명과 회사명을 직접 밝혀 게재하고, 비록 검사당국에서 비치한 표준시약이 없어 검사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첨가물에 관한 기사에서도 이 사건 제품명을 거론하여 그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 통관되었다고 한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 기자가 앞서 본 위 각 기사의 취재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허위 내지 과장된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경위와 그 기사내용,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판매량 감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24.

재판장 판사 박 국 수

판사 이 영 동

판사 고 규 정

□

비록 타인의 주장 또는 풍문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1998. 8. 19.자 판결 (97가합9349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8년 8월 19일 경실련 외 4개 사회단체가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

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주장 또는 풍문을 전파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일반 시청자나 독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발언자가 그 주장 내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읽히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자기의 의견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 이에 대해서 “원고들이 기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비록 타인의 주장 또는 풍문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발언의 전취지로 보아 자신의 생각을 우회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발언의 형식에 관계없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한국논단에 대해서는 “토론회의 개최자이며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1997년 10월 8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후보들을 초청하여 ‘대통령 후보 초청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한국논단의 발행인이자 토론회 사회자였던 이씨는 이 토론회에서 시민단체가 특정세력에 반대하고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으며, 기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또한 월간 한국논단은 1997년 11월호에 토론내용 전문을 게재하면서, 위 발언내용을 ‘시민단체가 특정 세력에 반대, 폭력적 위협하고 있다’는 소재목으로 게재, 배포하자 경실련 외 4개 단체들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기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이 경실련에 국한된 발언으로 진실한 내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회비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여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비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물리쳤다.

判 決 文

사 건 : 97가합93499 손해배상(기)

원 고 : 1.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2.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 참여 민주 사회 시민 연대

4. 천주교 인권위원회

5.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박성민, 송두환, 김응조, 백승현, 정연순

피 고 : 1. 주식회사 한국논단(韓國論壇)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8

대표이사 이

2. 이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변론종결 : 1998. 7. 15.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10. 8.부터 1998. 8. 19.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하 원고 경실련이라 한다)은 1989. 7. “사회 정의 및 경제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창립된 대표적인 시민 운동 단체로서 교수, 변호사를 비롯한 회원 20,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이다.

(2) 원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원고 민변이라 한다)은 1988. 5.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창립된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회원 변호사 200여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3) 원고 참여 민주 사회 시민 연대(이하 원고 참여연대라 한다)는 1994. 9. 10.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 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 운동 단체로 회원 2,000여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4) 원고 천주교 인권위원회(이하 원고 인권위원회라 한다)는 1988년 천주교 산하의 변호사, 사제, 수도자, 교수가 결성한 인권 운동 단체로 회원 59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5) 원고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이하 원고 사제단이라 한다)은 1974. 9. 26. 사제들이 구성한 인권 운동 단체로 사제 회원 50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6)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고 한국논단이라 한다)은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대통령 후보 사상 검증 대토론회”를 주최하였고, 피고 이은은 피고 한국논단의 대표이사로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이 사건 토론회의 발언 내용 및 보도 경위

(1) 1997년 말경 각종 언론사 및 사회 단체들은 1998. 12. 18.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들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에 관한 소견을 듣는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를 계속하여 개최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고, 티브이로 생중계되는 경우 시청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2) 피고 한국논단은 1997. 10. 8. 10:00부터 17:00까지 서울 타워호텔 켈코바룸에서 피고 이

사회로 당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소위 이회창, 김대중, 김중필, 조순, 이인제를 초청하여 “대통령 후보 초청 사상 검증 대토론회” (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 바, 위 토론회는 KBS, MBC, SBS를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되었다.

(3) 피고 이은은 이 사건 토론회의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온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 단체에 대한 견해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 경실련이라든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 연대, 카톨릭 인권위원회, 무슨 무슨 사제단, 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중략)…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시민 단체가 전체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협을 주고,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태도 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 재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해서 돈을 긁어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말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또 추가 고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우리 나라의 시민 단체 행태를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려는 분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시민 단체가 그저 듣기 좋게 정부에게 압력도 가해야 되고 기업에게 압력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듣기 좋게만 하실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더 시민 단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구상은 안 가지고 계신지, 왜 그런가 하면 무슨 환경 단체나 시민 단체가 그 목적은 좋고 모토는 좋습니다만, 그러한 목적과 모토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 단체에 대한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4) 한편, 피고 한국논단은 이 사건 토론회의 토론 내용 전문을 월간 <한국논단> 1997년 11월호에 게재하면서,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시민 단체가 특정 세력에 반대, 폭력적 위협하고 있다] 는 소제목으로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다. 판단

(1) 피해자 적격

자연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도 그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 신용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모두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할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2) 피해자의 특정

피고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특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명칭을 그대로 명시할 필요는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이은은 위 토론회에서 “소위 경실련이라든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 연대, 카톨릭 인권위원회, 무슨 무슨 사제단” 이라고 표현했는 바, ^경실련}, ^참여 연대}란 명칭은 원고 경실련, 참여연대의 정관에 규정된 약칭이고, ^카톨릭 인권위원회}에서 ^카톨릭}은 ^천주교}를 의미하므로 역시 원고 인권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며, 원고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은 사제들로 구성된 인권 운동 단체로서 그 명칭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사제단}이란 명칭의 시민 운동 단체로는 위 원고가 유일하며, 위에서 언급한 다른 원고들과 대체로 유사한 활동 목표 또는 노선을 갖고 있어 나머지 원고들의 명칭과

더불어 “무슨 사제단”이라고 표시되는 경우 이 사건 토론회를 시청할 정도의 수준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위 원고를 지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무슨 무슨 사제단”이 위 원고를 의미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3) 명예훼손의 성립

민법상의 명예훼손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비방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방법은 질문의 형태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이라는 식으로 타인의 주장 또는 풍문을 전파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에도 일반 시청자나 독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발언자가 그 주장 내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읽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 또는 풍문의 존재 자체만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주장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피고 이 ○은 “시민 단체가 전체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협을 주고,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태도 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라는 발언에서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하여 비방적인 비판을 했을 뿐 아니라, 이에 덧붙여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 재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해서 돈을 긁어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는 발언에서 원고들이 기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약점을 미끼로”, “돈을 긁어 쓴다.”는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이는 비록 타인의 주장 또는 풍문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발언의 전취지로 보아 피고 이 ○은 자신의 생각을 우회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 ○은 그 발언의 형식에 관계없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발언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으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시민 단체들이 기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은 원고 경실련에 국한하여 한 발언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공공성

위 발언은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민 단체의 재원 조달 방법의 투명성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위 발언 내용의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진실성

우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 재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해서 돈을 긁어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라는 발언이 원고 경실련만을 지칭한 것이라는 주장은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비추어지는 전체적인 인상에 의하면 원고들 모두를 지칭한 말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위 발언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 참여연대는 소위 한겨레신문사와 “맑은 사회 만들기”라는 표어로 공동 캠페인을 벌였을 때 위 한겨레신문사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찬조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 경실련은 1994. 2.경 “환경 보전 콘서트” 협찬비 명목으로 한솔 제지 등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받았고, 1994. 7.경 안양 경실련에서 안양 지역 기관장과 상공인들에게 “기금 마련 만찬 행사” 티켓 13,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1995. 4.경 “95 미술의 해 경실련 새봄맞이 초대전”을 개최하고 삼성, 대우, 롯데 등에 300,000,000원 상당의 그림을 판매하였고, 1996. 2.경 “전주 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삼양사, 한솔제지 등으로부터 각 1,000,000원씩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1997. 1.경 유한킴벌리로부터 “경실련 환경 개발센터” 지원금으로 25,000,000원을, 1997. 1.경 “시민영화제” 후원금으로 우방주택으로부터 2,000,000원을, 환경부로부터 “경실련 산하 환경개발센터”에 1995년에 10,000,000원, 1996년에 30,000,000원을, 공보처로부터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비” 명목으로 1996년에 73,000,000원, 1997년에 46,000,000원을, 서울시로부터 1996년에 학원 폭력 근절 사업비로 15,000,000원을, 환경감시단 활동비로 16,800,000원을, 통상산업부로부터 에너지 절약 가두캠페인 지원금으로 60,000,000원을 각 지원받는 등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사실을 일부 자인하고 있다.

피고들은 그 밖에도 원고 경실련이 1996. 2.경 동아건설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 동아 매립지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을 수급하여 계약금으로 250,000,000원을 받고 “동아 매립지 개발 경제성 분석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 매립지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1996년 6월 농산물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세농을 설립한 후 서울시에 로비하여 가락동 농수산물 센터에 220평 규모의 상설 매장을 개설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동아건설로부터 위 용역을 수급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그 직후 위 사안이 원고 경실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용역을 취소하고 위 담당자를 징계한 후 위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며, 위 농수산물 시장건 역시 원고 경실련이 로비한 사실이 없고, 서울시가 팔당 상수원 인근 농민의 유기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원고 경실련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락하였다가 많은 손실로 인해 업무를 분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 경실련, 참여연대가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기업체로부터 협찬금을 수령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시민 단체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여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여 온 것은 시민 운동의 오래된 관행으로 비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들이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이의 위 발언 및 위 발언을 월간 <한국논단>에 게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한국논단은 위 토론회의 개최자인 동시에 위 발언을 게재한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이은 위 발언자인 동시에 위 월간 <한국논단>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 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전체가 이 사건 토론회를 비롯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발언은 KBS, MBC, SBS가 이 사건 토론회를 동시에 티브이로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들은 그 후 이 사건 발언을 다시 자신들이 발행하는 월간 <한국논단>에 그대로 게재한 점, 원고들과 같은 시민 운동 단체는 업무 수행의 도덕성과 공정성, 자원 재달의 투명성을 그 존립의 중요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발언으로 원고들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향후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는 점, “고소 사태도 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 ... 이 말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피고들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위 발언을 감행한 것은, 피고들이 이미 원고들로부터 다른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언이 전체 토론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발언이 게재된 기사의 제목과 크기,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원고들의 시민 운동 단체로서 지명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마다 20,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7. 10. 8.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19.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강 한 승

판사 류 용 현

□

이 사건 각 만평은 풍자만화의 고유한 특징인
풍자, 과장, 은유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필자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8. 8. 12.자 판결 (98가합15397)

서울고등법원 1998. 12. 24.자 판결 (98나47575)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998년 12월 24일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 씨가 경향신문 만평과 관련하여 경향신문사와 김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만평은 풍자만화의 고유한 특징인 풍자, 과장,

은유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필자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경향신문이 1997년 12월 20일자 및 1998년 1월 21일자 1면 경향만평에 원고 등이 국외로 도주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게재하자, 원고는 만평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 “만평은 원고 등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수사와 감사원 특감이 거론되고 새 정부가 경제위기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원고 등이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임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만평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풍자 또는 그와 관련된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면, 해외 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判決文

사 건 : 98가합15397손해배상등

원 고 : 김 (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 고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京郷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홍성만

2. 김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변론종결 : 1998. 7. 15.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연명으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해명 광고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이 사건 각 만평의 게재 경위와 그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 내지 29,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1966. 8.경 행정고등고시 재경직에 합격하여 1967. 1. 재경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래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등을 거쳐 환경부 차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철도청장, 공정거래위원회장 등을 역임한 후, 1997. 2. 28.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설립 이래 일간 신문인 경향신문을 발행·판매해 오고 있으며, 피고 김 은 1997년을 전후한 시기에 피고 회사에 ‘경향만평’이란 제목의 정치 만평을 기고해 왔다.

(2) 피고 회사는 ① 1997. 12. 20.자 경향신문 제1면의 ‘경향만평란’ (지면크기 약 10cm × 10.5cm)에 피고 김 이 기고한 [출입문에 ‘미국여행사’ 라고 표시된 여행사 사무실 내에 ‘前경제수석’, ‘姜’, ‘前한은총재’로 표시된 세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서서 그 중 ‘前경제수석’으로 표시된 사람이 오른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며 항공권을 주문하는 장면과 함께 ‘李’, ‘鄭’, ‘載’라고 표시된 세 사람이 여행사 문 밖에서. 우리도 가자!。라고 말하는 장면과 여행사 사무실 벽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에 한 사람이 오른 손을 들고. 경제 망친 ×들 사그리…。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여행사 직원들이 항공권을 주문하는 위 세 사람을 쳐다보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는 장면 및 컴퓨터 단말기 모니터에. LA 3장. 이라는 자막이 나와 있는 장면] 을 담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만평(이하 ‘이 사건 제1 만평’이라 한다)을, ② 1998. 1. 21.자 경향신문 제1면의 같은 난에 같은 피고가 기고한 [공항의 출국장 한 쪽 구석에 ‘尹’, ‘李×식’, ‘金인×’, ‘姜경×’, ‘姜’으로 표시된 다섯 사람이 모여 서서. ‘어른’은 살릴 거야 펄쩍 튀자!。고 말하는 장면과 함께 출국 심사대에 앉아 있는 경찰관과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위 다섯 사람이 모여 서 있는 쪽을 쳐다 보고 있는 장면과 위 출국 심사대가 놓여진 벽 면에. 출국금지 하지만 마약복용. 이라고 표시된 출국 금지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는 장면, 그리고 출국대 옆으로 보이는 공항 활주로에 미국 항공기가 착륙해 있는 장면] 을 담고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만평(이하 ‘이 사건 제2 만평’이라 한다)을 각 게재하였다.

(3) 한편, 1997. 11. 중순경부터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국내 외환 사정이 나빠지면서 사회 일반에 ‘금융 위기’ 또는 ‘경제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자, 정부는 같은 해 11. 19.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인 소외 강 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인 원고를 경질하였으나, 외환 사정과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져 같은 해 12. 3. 국제통화기금(IMF)과 위 기금으로부터 달러 화를 차입하기로 하는 구제 금융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4) 이에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 책임자들을 가려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같은 해 12월 초순경을 전후하여 각 신문과 방송에 ‘원고와 위 강, 한국은행총재인 소외 이 을 비롯한 당시 경제 부처 관료들의 상황 판단과 정책 운용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이들에게 위 경제 위기를 초래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이미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고, 정치권에서도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경제 위기의 원인과 책임 문제를 다룰 청문회의 개최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고, 같은 해 12. 19.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는 같은 날 기자 회견을 통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 경제 위기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후 1998. 1. 18.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청문회 개최를 거듭 약속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전후하여 각 신문과 방송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 경제 위기에 관한 특별 감사를 의뢰하는 한편, 총무처에 경제 위기 관련자들에 대한 해외 파견이나 연수를 금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5) 이 사건 각 만평의 게재를 전후한 시기에 원고, 위 강, 이 등이 해외로 도피하고자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이를 모의한 적은 없었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나 언론 보도도 없었다.

2.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가 1997. 12. 20.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해외로 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만평을 통해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 새로 출범할 정부가 원고를 비롯한 위 강경식, 이 세 사람을 처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원고 등 3인은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 사건 제2 만평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소외 강, 이 등 다섯 사람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하여 모의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각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만평은 당시 원고를 비롯한 경제 위기의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혹시 그들이 해외로 도피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 훼손이 되지 않는다.

나. 먼저 이 사건 각 만평이 담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 사건 제1 만평의 제15대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위 강, 이 세 사람(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이 출국하기 위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권을 주문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 사건 제2 만평의 경우 소외 박지만이 마약 복용 혐의로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원고와 위 강, 이 등 다섯 사람(이하 ‘원고 등 5인’이라 한다)이 해외로 도피할 것을 의논하고 있는 장면임이 명백한 바, 만약 이 사건 각 만평이 위와 같은 장면들에 나타나 있는 사실 관계 그 자체, 즉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해외로 도피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한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漫評) 또는 풍자 만화(Cartoon)의 경우, 그 장르의 성격상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 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함에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 각 만평의 경우에도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 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상(事象)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각 만

평이 원고 등이 해외 도피를 계획하거나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만평 게재를 전후한 시기에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실제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한 적이 없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나 언론 보도도 없어서 이 사건 각 만평을 기고한 피고 김이나 그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만평의 게재를 전후하여 위 경제 위기를 둘러 싸고 전개된 여론, 정치권의 동향과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만평과 같은 정치 만평을 통상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 밖에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만평에 등장한 인물들의 과거 경력이나 행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만평이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 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하여, 이 사건 각 만평의 취지가 원고 등이 당시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려는 데 있었고, 독자들 또한 이 사건 각 만평을 대하고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만평은 원고 등 3인이 위 경제 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특감이 거론되는 한편 새로 출범할 정부가 위 경제 위기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원고 등이 위 경제 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항 출국장을 빌려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원고 등이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각 만평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풍자 또는 그와 관련된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면, 이를 위하여 원고 등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 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만평은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당시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만평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한편, 만평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그를 회화적으로 묘사한 경우, 그 만평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 감정이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만평을 통해 표현된 사상(事象)이 허위의 내용이고, 나아가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의 기법이나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각 만평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 즉 당시 원고가 경제 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그 책임 추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원고의 지위나 이 사건 각 만평이 소재로 삼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만평에서 사용한 풍자의 기법이나 내용(원고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 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만평의 게재가 위와 같은 의미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만평의 게재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12.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강 한 승

판사 류 용 현

2심 判決文

사 건 : 98나47575 손해배상 등

원고, 항소인 : 김 (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京郷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홍성만

2. 김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변 론 종 결 : 1998. 12. 10.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8. 12. 선고 98가합15397 판결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연명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해명광고를 이행하라.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연명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해명광고를 이행하라.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만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그 게재 당시 원고가 공항에서 해외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지극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만평은 풍자 만화의 고유한 특성인 풍자, 과장, 은유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원고 등이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절박하고도 긴장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결과 이 사건 각 만평의 게재 당

시 해외로 도피라도 하였으면 하는 심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필자의 견해를 국제공항 출국장의 배경을 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공항에서 해외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제1심 판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제1심 판결이 전후 모순된 이유를 설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제1심 판결문 제8쪽의 제11행 내지 제15행의 설시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24.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황 병 하

판사 조 영 철

□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8. 9. 4.자 판결 (96다11327)

事實概要

대법원 제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998년 9월 4일 정○○ 씨가 문화방송과 PD수첩. 프로듀서인 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금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나, 수술 부작용 사례로 소개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취재당시 피고에게 아무도 알아 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조건하에 취재 및 방영을 승낙하였는데, 비록 모습을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는 등 원고의 신분이 노출된 이상, 원고의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했다.”며 원심판결에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귀책사유 및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승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화방송은 1994년 7월 5일 PD수첩을 통해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방송하면서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 사례로 원고를 취재, 신분노출방지를 조건으로 원고와의 인터뷰를 방송하였으나 화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채 방송되자 원고는 방송을 시청한 주위 사람들이 쉽게 자신을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문화방송과 PD수첩의 프로듀서인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 항소하여 2심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1·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242~250면 참조).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6다1132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김종선

피고, 상고인 : 정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공성과 공익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은 1994. 6.경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취재, 방영함으로써 YMCA를 통한 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알려줌과 아울러 유방성형수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하에 취재를 시작하면서 유방확대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사례를 찾던 중 유방확대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던 원고를 알게 되어 그녀를 취재하게 된 사실, 위 프로그램 제작진의 일원인 피고 정 는 같은 달 4. 피고 회사를 찾아 온 원고를 취재한 다음 같은 해 7. 5. PD수첩 프로그램 방송시간 40여 분 중 2차례에 걸쳐 (1회 약 28초, 2회 약 24초) 원고의 본명 대신 ^김혜정^이란 가명을 사용하고 원고의 얼굴

우측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벽에 나타난 그림자를 방영하는 방식으로 화면 처리하는 한편,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실상을 방영한 사실, 방영 당시 원고의 모습이 그림자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그림자에 원고의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아니한 관계로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그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 원고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인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로 인한 보상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로 위 방송에서 소개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학적, 법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위 방송에서 소개된 사람이 원고임을 밝힐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승낙의 효력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취재 당시 원고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 정에게 아무도 원고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조건하에 취재 및 방영을 승낙한 사실, 방송 기술상 그림자 처리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피촬영자의 신분노출을 막을 수 있기는 하나 피촬영자의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뭉개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확실히 그의 신분노출을 막을 수 있었고, 음성도 기계처리에 의하여 손쉽게 변조할 수 있었는데, 위 정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방송기술에 관한 문외한인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방영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 정이 원고로부터 아무도 원고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조건하에 취재 및 방영을 승낙받은 이상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등 원고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방영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한 이상 이는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가 종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뒷모습을 방영하고 육성을 그대로 방송함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가 원고가 피고 정과의 전화 인터뷰에 응하여 주고 나아가 방송출연을 승낙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여 이 사건 방송에 있어 원고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에 대한 승낙까지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귀책사유 및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승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손해배상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나이, 직업, 결혼 및 이혼 경력, 이 사건 방송 경위와 방송 내용, 방송시간 및 방송 후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4.

재판장 대법관 신 성택

주심 대법관 천 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송진훈

□

원고를 ‘주사파’로 묘사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8. 9. 30.자 판결 (98가합18280)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8년 9월 30일 한국방송공사

PD가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발행인,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사회 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며, “중견 언론인인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고 밝혔다.

원고는 월간 <한국논단>이 1998년 3월호에 [빨갱이는 좋으로, 경찰은 뱀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제하로 원고를 주사파로 묘사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998년 4월 10일 남PD가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한국논단측에 남PD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判 決 文

사 건 : 98가합18280 손해배상(기)

원 고 :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1. 주식회사 한국논단(韓國論壇)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8

대표이사 이

2. 이

서울

3. 이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변론종결 : 1998. 9. 9.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부터 1998. 9. 30.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월간 <한국논단>의 본문면 제1면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 위 가항 기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원고에게 위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분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피고 이 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한국논단>의 표지 및 차례란의 각 상단 부분에 각 [KBS 남 PD에 대한 이른바 주사과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을 각 고딕체 특호 활자로 게재하고, 본문 제92쪽에 제목은 고딕체 특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10호 활자로 별지 제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피고 이 이 위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각 이행 완료시까지 월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명예 훼손의 성립

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내용

(1) 원고는 1984년 한국방송공사(KBS)에 입사하여 프로듀서, 부주간을 거쳐 1998. 4.부터 주간(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한국논단>이란 월간지를 제작,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은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 이은은 “영남시대” 취재부장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2) KBS는 1993년 5월부터 1994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다큐멘터리 극장>을 방송하였는바, 원고는 1994. 1. 28. 방영된 <대통령에 도전한다>와 같은 해 6. 11. 방영된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는가>를 포함한 위 <다큐멘터리 극장>의 책임 프로듀서(CP)로서 그 제작을 총괄 지휘하였다.

(3) <한국논단> 1998년 3월호(통권 제103호)는 표지와 차례란에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라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기재하고, 본문 92쪽부터 98쪽에 걸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4)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불명의 붉은 가스에 오염된 사람들”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서울의 하늘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가스에 온통 오염돼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붉은 가스가 사람들의 호흡기로 파고 들어가 폐를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뇌속으로 들어가 의식과 판단을 흐리게 하여 결국에 가서는 한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를 질식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이 가스에 중독된 환자들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다. 한때, 그 환자수가 급증했던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숫자가 서서히 줄어들자, 이들은 한여름에 자기들끼리 모여 몇날 며칠을 일대 발작을 벌였다. 그것인 96년 여름의 한총련 사태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 가스 중독의 폐해가 알콜이나 아편 중독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들은 차원을 달리한 진법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TV이다. 물론 과거부터 언론, 출판 매체 등을 이용한 이들의 투쟁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TV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선전 도구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그런 의미에서 KBS가 앞으로 내보낼 예정인 <다큐멘터리 드라마> <대한민국, 도 어떤 식으로 연출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KBS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며 이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국민의 세금과 시청자의 시청료로 만들어서 수도 없이 내보냈다.

KBS는 그 동안 여러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끊임없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박사를 비하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체·정체 자체를 왜곡·비판하였고 이로 인해 담당 PD 등이 고소·고발당한 적도 있으나 그 때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빠져 나갔다.

KBS는 이승만의 반탁 반공의 정부 수립 과정을 단순한 권력 투쟁 과정으로 의도적으로 격하시키고, 상대적으로 여운형(呂運亨)의 좌우 합작 운동, 김구(金九)의 남북 협상을 부각시켰다.

(중략)

“주사파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공영 방송”

김일성의 정치 행태로 볼 때 이 증언(여운형의 암살범은 김일성이 직접 보냈다는 내용의 증언)은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늘 정반대로 왜곡하여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한 때 1TV의 다큐멘터리 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 프로를 연출했던 남 (南) PD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이다.

또 남 PD는 이 프로를 통해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 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도 했고, 해방 후의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 등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을 인민 항쟁으로 미화시켰다.

이미 KBS는 92년 드라마 。삼국기。를 북한의 고구려 중심 민족사관에 충실한 내용으로 만들었고, 최근에는 귀순한 신 씨가 폭로한 기쁨조의 실체에 관한 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내보내면서 김정일에 관한 내용은 조금도 내보내지 못하고 그것도 북한의 공갈협박 단 한 마디에 서둘러 종영해버렸다. 그나마 단 3주 6회만에 알맹이 없는 빈 국물같은 내용으로 끝냈다. 이같은 배경에는 ^수령에 대한 불경죄)를 염려한 주사파들의 배려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평소 KBS는 공영 방송사임에도 방송 내용에 관한한 노조가 나서서 정부나 회사 고위층의 지시를 “부당한 간섭” 운운하며 절대로 안들어주는 것으로 너무나도 유명하다. 이제 KBS는 경찰이 좌익 가족을 악랄하게 구타하는 장면까지 내보내고 있다. 공영 방송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의도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경찰에 대한 반감과 좌익에 대한 연대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TV는 전국민을 세뇌시키고 의식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처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언론 출판만큼은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은 “80년부터 조총련이 약 2조원을 투입하여 언론에만 8백여 명의 주사파를 침투시켰다.” 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숫자는 그 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의 정보기관은 그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지조차도 모른다고 한다. 아예 파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하략)

[증거\ 갑 1, 2, 3

나. 판단

이 사건 기사는 우리 나라의 좌익 세력이 TV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 대거 침투하여 TV를 좌익 이념의 선전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전체에서, KBS가 방영한 。 이것이 인생이다. , 。 다큐멘터리 극장. , 。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 。 삼국기. , 。 진달래꽃 필 때까지. 등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공영 방송인 KBS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원고가 책임 프로듀서를 맡은 。 다큐멘터리 극장. 은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왜곡하고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였으며,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 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도 했고, 해방 후의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 등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을 인민 항쟁으로 미화시켰는 바, 위 프로그램이 원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이라면 원고는 “주사파”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 전체의 흐름, 사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기사는 소위 “주사파”가 언론 매체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 KBS가 방영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사파”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 사건 다큐멘터리 극장.의 내용이 북한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 등을 매우 단정적인 표현 방식으로 열거한 후에, “이것이 당시 이 프로를 연출했던 남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이다.”라고 하여 이 부분에서만은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가정(假定)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소위 “주사파”의 역사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프로그램을 연출한 원고는 KBS에 침투한 “주사파” 중의 하나가 분명할 것이라는 강한 추측이나 단정(斷定)을 우회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소위 “주사파”가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 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 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 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게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이은 위 기사의 작성자로서, 피고 이은 위 기사를 게재한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한국논단>을 제작, 발행, 배포하는 법인으로서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기사는 공영 방송인 KBS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내용과 그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 지휘한 책임 프로듀서인 원고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 및 목적의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진실성

피고들은, 원고가 연출하고 1994. 1. 28. 방영된 다큐멘터리 극장. 대통령에 도전한다.와 같은 해 6. 11. 방영된 다큐멘터리 극장.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는가.는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고 있고,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 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였으며, 해방 후의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 등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을 인민 항쟁으로 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위와 같은 역사 해석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사실(史實)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주체 사상의 관점에서 역사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위 프로그램을 연출한 이상 원고는 “주사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연출하였는지의 여부

원고는 1993년 5월부터 1994년까지 총 68회 방송된 。다큐멘터리 극장。의 책임 프로듀서 (CP)로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 지휘한 바가 있을 뿐이고, 실제 연출은 다른 프로듀서 5명이 매주 순번을 정하여 담당하였으므로(다큐멘터리 극장 。대통령에 도전한다. 의 담당 프로듀서는 소외 이 이고, 연출은 이 , 장 이 맡았고,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는가. 는 소외 송 , 이 가 연출을 맡았다. 갑 11의 1, 2), 엄밀히 말하면 원고는 위 프로그램을 “연출”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나, 책임 프로듀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인사와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자로서, 담당 연출자와 프로그램의 섭외, 기획, 촬영, 편집,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상의하면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위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증인 장), 넓은 의미에서 보아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연출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 여부 - 다큐멘터리 극장 。대통령에 도전한다. (이하 위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중심으로

먼저, 위 프로그램 중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그 내용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이다.).

① “이른바 신탁 통치 정국은 민족주의 대 반공주의였던 우리의 정치 구조를 우익과 좌익의 대립 구도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는 나레이션(우익은 반공주의자이고 좌익은 민족주의자라는 어감을 주고 있다.).

② “이박사가 친일파를 업고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완전히 두 쪽이 날 겁니다.”라는 최능진의 대사, 감방 안에서 최능진이 꿈을 꾸는 장면에서 일본 군인들의 군화발 소리를 배경으로 이승만이 “내가 소금을 지고 물에 들어가라도 해도 들어가는 게야, 그래야 되는 게야.”라는 대사와 일장기가 펼쳐지는 부분, “민족보다 이데올로기가 우선시되면서 우리는 분단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라는 나레이션. “우리가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반대한 이유의 하나가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동족상잔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라는 송남현의 인터뷰 부분(결국 친일파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식민 잔재가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우리 민족이 분단되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식의 흐름이다.)

③ “더우기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정적을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전 평화운동이 결렬된 후 9. 28. 수복 이후까지 은신해 왔던 그는 12월초 어느날 밝은 얼굴로 은신처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승만과 화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라는 나레이션 뒤에 이어지는 대화|김창룡 : “오, 최능진 선생 잘 오셨소.”, 최능진 : “내가 최능진이요.”, 김창룡 : “당신은 국방경비법 제32조를 위반했소. 그 자를 체포해.”, “아직까지도 식민의 잔재 속에서 분단의 현실 속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민족의 분열을 막아보려고 애썼던 당시의 믿음과 노력이 잘못된 것이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 앞에 이적죄라는 죄명을 붙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최능진 수사국장, 그는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올바른 역사의 행로를 걸어보려고 애썼던 한사람의 민족주의자였습니다.”라는 나레이션(반민족주의자인 친일파 이승만에 의하여 정적으로 무고한 죽음을 당한 “민족주의자 최능진”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은 반민족주의자인 이승만의 집권으로 우리 나라가 분단이 되었으며, 6·25도 그로 인하여 발발하게 된 것이고, 무고한 민족주의자들이 그의 정적으로 숙청되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바, 위 프로그램은 이승만을 비하하고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한의 역사 해석과 상통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사파”라

는 주장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역사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왜곡된 역사 의식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편적인 대사와 장면 몇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 충실한 고증 여부, 전체적인 내용의 균형성, 그리고 최종으로 시청자들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프로그램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사를 재조명한 KBS의 장기 시리즈물인 다큐멘터리 극장 프로그램의 일부로, 분단과 이념의 대립이란 예민한 문제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현대사를 최근의 학문적 성과와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재조명하면서 우리 나라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갑 5, 11의 1), 당시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 내 친일 세력의 청산 문제를 놓고 당시 경무부장 조병옥과 마찰을 빚어 파면당한 뒤, 이승만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했고, 그 후 이승만 정권하에서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사형당한 최능진의 일생을 통해 바라본 당시의 역사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위 프로그램은 최능진의 유서, 한국독립운동사,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간),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편), 나의 회고록(조병옥 저), 민족 대드라마 증언(조덕송 저), 좌절된 민족 경찰의 꿈, 최능진(김재영 저), 이승만의 정적, 최능진의 비극 - 어느 민족 고투의 일생, 1920~30년대의 동우회, 흥업구락부 연구(김상태), 한국전쟁의 기원(브루스 커밍스), 비원(송홍섭) 등 각종 문헌과 당시의 신문 자료와 사진 자료, 미군 정보부 보고서(이른바 G-2 보고서), 주한미군사, 조·미 공동회담 요약, 재미한인사 등 미국자료 등을 종합하고, 당시 경무부 수사국 특무과장 나병덕, 최능진의 장남인 전 사우디 대사관 지낸 최필립, 당시 최능진 선거사무장을 지낸 강원식, 당시 서재필 추대위 간사 이병희, 김규식 비서실장 송남현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한 것으로(갑 11의 1),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인 억측이나 역사관에 토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 내용, 고증 정도,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주사과의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며, 이승만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그를 비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여운형의 미화 여부

피고들은 위 프로그램이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프로그램은 여운형에 관하여 “두 세력(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민족의 분열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극좌 세력과 극우 세력의 사이에 있었던 여운형, 김규식 같은 중간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민족 통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좌우 합작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을 뿐, 특별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묘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갑 11의 1).

(태) 동학란을 북한 혁명 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는지 여부

KBS는 원고가 제작 지휘한 1994. 4.경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특집 4부작 다큐드라마를 방영한 바 있으나, 위 프로그램이 북한의 혁명 사관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신문 기사에 나타난 방송평(갑 7)을 종합해 보면 “가설과 상상을 제외한 빼어난 사실 묘사로 TV 역사물의 모범이 되었다.” 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주장은 독단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배)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을 인민 항쟁으로 미화했는지 여부

우선, 제주 4·3 사태에 관하여는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방영한 바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음으로, 대구 10·1 폭동을 미화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대구 10·1 폭동은 남로당이 조선 정관사 위폐사건으로 인하여 불법 조직으로 되고, 박헌영 등 주요 간부에 대하여 체포령이 내려지는 등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러한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미군정에 대해 실력 행사를 벌였던 9월 총파업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인데, 원고가 위 프로그램에서 대구 폭동의 원인을 “미군정의 양곡 정책 실패와 친일 경찰에 대한 반감” 때문인 것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프로그램은 초반부에 대구 10·1 폭동에 관한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1946년 가을은 흥흥했습니다. 좌익의 비합법 폭력 투쟁 노선에 따라 전국적인 파업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10월 1일에는 대구에서 경찰과 시민 간에 유혈 충돌이 일어났고, 이것이 급기야는 경북 일대에 폭동 사태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와 경찰관이 주로 습격의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략) 당시 소요 사태는 전남, 전북, 강원 등 전국으로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정의 식량 정책과 친일 경찰 등용에 대한 불만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정은 쌀 수급 조절에 실패하자 심각한 쌀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일제의 쌀 공출 제도를 부활시켰고, 이것이 국민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시행을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던 친일 공무원과 경찰에 맡겼던 것입니다.” 라고 해설하고 있다(갑 11의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대구 10·1 폭동이 좌익이 주도한 총파업의 여파로 발생되었음을 밝히면서, 미군정의 식량 정책과 친일 경찰 등용에 대한 불만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해설은 대구 폭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린 조·미 공동회담 결의문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위 프로그램이 대구 10·1 폭동을 왜곡하여 미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역사 해석이 주제 사상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위 프로그램의 내용 중 아직 학문적으로 완전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학문적인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은 단지 제작자의 억측에 터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이나 당시 신문 기사, 학술 문헌 등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삼은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위 프로그램의 제작자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역사 해석이 우리 나라의 정통성과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이상 학문·사상의 자유의 측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위 프로그램이 “주사파”의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 입증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보도에 이

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기사의 크기, 그 밖에 중견 언론인인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사로 명예 훼손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크기, 게재 면수,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국논단>의 본문면 제1면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간접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때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 이에게도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나, 피고 회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도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청구 및 이에 대한 간접 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한국논단>의 발행일인 1998. 3.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9. 30.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회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30.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강 한 승

판사 류 용 현

□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원고의 편지를

‘김일성 애도서신’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왜곡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1998. 4. 23.자 판결 (97나57360)

대법원 1998. 10. 27.자 판결 (98다24624)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998년 10월 27일 전 강원도의회 의원인 정 씨가 강원일보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각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의 제목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으며, 일련의 보도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통일원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경고 검토 내지 결정} 또는 ^수사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기사화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막연한 말만을 가지고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였다면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한들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강원일보는 1995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원고가 김일성 애도서신을 보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모두 17회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김정일에게 남북간 교류성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강원일보가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를 보낸 것으로 왜곡보도하였고 통일원이 이에 대하여 경고결정을 하고 검·경찰이 국가보안법처벌여부를 내사 중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낙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김일성 조문문제와 관련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원고의 신분이 도의원으로 도의원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편지의 취지와 원고 등에 대한 검찰의 내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원고의 명예를 해하거나 입후보한 도의원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견되므로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애도편지라고 부적절하게 표현하였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에게 각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241~249면).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이 또한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기했던 정정보도심판 소송에서는 강원일보가 속보와 해설 기사를 통해 신청취지를 상세히 보도했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1·2·3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73~91면).

2심 判決文

사 건 : 97나5736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욱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강원일보(江原日報)

춘천시 중앙로 1가 53

대표이사 조남진

2. 이 (李)

춘천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변 론 종 결 : 1998. 4. 2.

제1심 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

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9. 6.부터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5 내지 14, 17 내지 21,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1 내지 13, 15 내지 17, 24, 25, 갑 제11호증의 3,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그 중 갑 제4호증의 17 내지 21, 갑 제10호증의 16, 17은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이병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17 내지 21, 갑 제10호증의 16, 17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이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91. 6. 20. 실시된 강원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1995. 6. 26.까지 도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원일보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이 는 피고 주식회사 강원일보의 직원으로서 위 강원일보의 기자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및 내용

(1) 원고는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같은 도의회 의원인 소외 정 , 김 , 이 ,

등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가칭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1994. 11. 17. 통일원(통일원은 그 후 정부직제개편으로 통일부로 개편되었다)으로부터 북한 북강원도 지방인민위원회와의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접촉승인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위 정 , 김 , 이 은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길림성 정부의 협력을 받아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통하여 남북 강원도 교류를 위한 대북 접촉을하기로 하고,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을 1차로 방문하여 중국 심양 주재 북한 대사관,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등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북한 외교관과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고 위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에 대한 제안 문건을 북경 소재 북한음식점을 통하여 북한대사관 영사부장인 김영수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귀국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위 대북 접촉을 마무리짓기 위하여 위 정 , 김 과 함께 1995. 3. 16. 부터 같은 달 21.까지 재차 중국을 방문하여, 1995. 3. 20. 북경에서 북한외교관인 위 김영수를 직접 만나 남북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 일행은 강원도 도의회와 북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와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위 김영수에게 전달하였다.

(4) 위 편지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의 성사를 위하여서는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의 동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1차 접촉 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북한외교관들도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1차 접촉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접촉에 응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원고가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강원도 도의회와 북강원도 인민위원회간의 자매결연, 남북강원도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 체육행사 교류,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교류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이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나, 그 서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원고의 반독재 투쟁경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편지와 관련한 통일원의 조치와 수사기관의 내사

(1) 통일원은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고 귀국한 원고 일행으로부터 1995. 3. 25. 대북 접촉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편지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9. 원고 일행으로부터 그 작성 전달 경위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는 한편, 위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북측에 남북 교류 취소통고문을 발송하도록 요구하였다가 정부당국이 남북 교류를 방해한다는 역선전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류시키고, 대신 원고 일행에게 구두로 교류취소를 통고하도록 종용하였으며, 같은 달 10.에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원도 의회 의원 3명이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북한 주민 접촉신청 및 승인 사항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이유로 원고 일행에 대하여 경고를 하거나, 경고를 검토한 바는 전혀 없었다.

(2) 강원지방경찰청은,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불온서신을 보내오고 있는 데다, 원고 또한 위 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대북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성급하게 판단한 나머지, 원고를 이른바 공작내사의 대상자로 분류하여 원고와 주변인물의 동향과 친인척관계를 파악하고 있던 중 원고가 김정일에게 보내는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인지하고, 1995. 4. 3. 통일원으로부터 원고 일행이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결과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입수한 다음, 원고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한 배경, 원고의 성향 등에 관하여 대외비로 내사하다가 이 사건 편지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내사에 들어가 1995. 4.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 일행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원고 일행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 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해 5. 3. 내사기록을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였다.

(3) 춘천지방검찰청은 위 내사기록을 토대로 1995.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원고 일행

을 상대로 위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내용,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원고 일행의 북한측과의 직·간접 접촉내용,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및 이를 전달한 경위, 위 편지에 원고의 반독재 투쟁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후, 1995. 9. 25. 그 내사를 종결하면서 원고 일행이 북한외교관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아무런 진전없이 귀국한 뒤 남북교류추진을 위해 중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북한 관리들에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했다고 하면 접촉이 쉬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해 북한외교관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한 배경과 경과,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일행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원고 일행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라. 이 사건 편지와 관련한 강원일보의 보도내용

(1) 피고 주식회사 강원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는 1995. 4. 9.부터 같은 해 9. 6.까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17차례에 걸쳐, 원고 일행이 김정일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 및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이북 5도민회의 반응 등에 관한 기사와 위 편지 사건에 대한 독자의 투고 등을 게재하였는바, 위 강원일보는 위 편지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위 4. 9.자 기사에서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라는 내용의 제목을 사용한 이래 그 이후 위 기사의 속보 형태로 계속 게재된 기사에서 계속하여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의 제목을 사용하여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기사를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관련 기사로 특정하였다.

(2) 이 사건 편지와 관련하여 위 강원일보가 게재한 기사 중 <별지 17>의 기사와 <별지 8>의 독자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당시 위 강원일보 사회부 소속 기자이던 피고 이이표가 작성한 것이다.

마. 이 사건 보도 당시의 사회상황 및 보도에 대한 사회의 반응

(1) 이 사건 보도를 전후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조문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조문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2) 이에 위 강원일보가 위 4. 9.자 신문에 최초로 이 사건 편지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자, KBS, MBC 등 텔레비전 방송과 여러 중앙 일간지들이 이에 뒤이어 [강원도 의원 김일성 애도편지] 제하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였고, 위와 같은 보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북5도민회 강원도연합회는 1995. 4. 17.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원고를 비롯한 3명의 도의원을 30만 실향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3) 한편, 당시는 1995. 6. 27. 실시된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의 동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있던 원고가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이 보도되면서 상대방 후보측은 이 사건 편지 관련 기사가 실린 위 강원일보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가.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

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앞에서 본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강원일보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위 강원일보는, 원고 일행이 김정일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 및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내용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등을 계속하여 보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의 제목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강원일보의 위와 같은 일련의 보도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강원일보가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등의 제목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에 대한 강원일보의 평가해석에 불과하므로, 기사의 본문 내용과 따로이 제목만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신문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붙여지는 것으로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으나,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강원일보는,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의 제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하여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에 빠지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실제로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이북5도민회 강원도연합회와 일부 독자는 이 사건 편지가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원고 일행을 규탄, 비판하고 있다), 위 강원일보가 게재한 이 사건 기사는 그 제목만으로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위 강원일보는 1995. 4. 9.자 기사(별지 1) 및 4. 12.자 기사(별지 3)의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및 작성 의도에 관하여 원고 일행이 통일원 및 수사기관에서 한 해명 내용을 아울러 밝히고 있기는 하나, 그 제목을 포함한 전체 기사의 취지는 이 사건 편지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과 수사기관의 수사상황을 전하는 형식으로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하였다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이며, 그 밖의 기사는 제목에서 김일성 애도편지 등으로 일단 이 사건 편지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본문에서 편지의 성격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편지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전하는 형식이거나(별지 2, 4, 6, 9, 10, 16, 17), 이 사건 편지가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임을 당연한 전제로 그 실질적인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내용(별지 12, 13, 14), 또는 이 사건 편지

에 대한 독자 개인 또는 단체의 반응(별지 5, 7, 8)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사는 그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의 대부분을 직접 작성한 피고 이 와 위 이 의 사용자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강원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인 피고 주식회사 강원일보는, 위와 같은 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신문에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사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 또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무릇, 신문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나 근거도 없이 행위자가 사실을 과장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독단적인 견해나 평가를 부가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를 전후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조문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조문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당시는 도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의 동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는 현역 도의원으로서 조만간 실시될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역 도의원으로서 재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원고가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북한의 김정일에게 애도편지를 보냈다면 그것은 공공의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피고들의 보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인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그 전체의 내용이 모두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7, 18, 20, 21, 갑 제10호증의 16, 17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반대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당심 증인 이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일행은 남북 강원도 교류를 위한 1차 대북 접촉 시도가 북한외교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무런 진전없이 끝나자,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북한외교관들도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1차 접촉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접촉에 응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편지는 남북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김정일에게 협조를 촉구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포함된 김정일에 대한 위로 문구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외교적 인사말에 불과하고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

이 아닌 사실, 그럼에도 위 강원일보에 마치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한 것인 양,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 [김일성 애도편지] , [김일성 애도서신] ,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 사실과 다른 제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하여 기사를 게재한 사실, 그 뿐 아니라, 그 기사의 본문 내용에 있어서도, 통일원은 이 사건 편지와 관련하여 원고 일행에 대하여 경고를 하거나, 경고를 검토한 바는 전혀 없었음에도, 통일원이 원고 일행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거나(별지 2), 경고 조치를 결정하고 금명간 경고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는 등으로(별지 3)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강원지방경찰청은 1995. 4.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 일행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위 4. 24. 무렵에는 사실상 그 조사를 마무리하였을 뿐인데도, 경찰이 1995. 4. 27. 원고 일행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계속했으며, 금명간 이들 의원들을 다시 불러 보강수사를 더 할 방침이라는 등으로(별지 9) 사실과 다르게 수사상황을 과장하여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전제로 보아 진실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다.

마.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편지의 전문을 입수하고 있어서 그 전체적인 취지나 편지 첫머리의 인사말의 의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편지에 대한 원고 일행의 해명 내용을 통일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도함에 있어서는 편견없는 중립적인 용어와 어휘를 사용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여, 최초의 기사 이래 끝까지 그와 같은 취지의 제목을 고집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에 빠지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편지가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라고 진실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의 본문 내용에 관하여도, 피고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일원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경고 검토 내지 결정} 또는 ^수사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강원일보 이외의 다른 신문들은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갑 제4호증의 17, 갑 제11호증의 1, 2),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막연한 말만을 가지고 그 진위여부는 더 이상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기사화 하였다면 설사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한들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위 강원일보에 게재되어 독자들에게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위 강원일보의 규모, 신문발행 부수, 이 사건 기사의 횟수와 크기 및 내용, 그 게재 경위,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위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있던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측이 이 사

건 보도 이후 1995. 9. 25.자 신문에 이 사건 편지가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추진을 위한 대북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5. 9.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6. 11. 6.까지는 피고들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23.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황 병 하

판사 조 영 철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8다2462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정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강원일보(江原日報)

춘천시 중앙로 1가 53

대표이사 조남진

2. 이 (李)

춘천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나57360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허위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신문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붙여지는 것으로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6. 20. 실시된 강원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1995. 6. 26.까지 도의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같은 도의회 의원인 소외 정 , 김 , 이 , 이 등과 함께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 북강원도 지방인민 위원회와의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접촉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대사관 영사부장인 김영수를 만나 남·북 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김영수에게 전달한 사실, 이 사건 편지의 서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원고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주된 내용은 강원도 도의회와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사이의 자매결연, 남·북 강원도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 교류,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 강원도 교류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이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며, 원고와 정 , 김 , 이 은 남·북 강원도 교류를 위한 대북 접촉을 하기 위하여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1차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심양 주재 북한 영사관,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등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북한 외교관과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에 대한 제안 문건을 간접적으로 김영수에게 전달만 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귀국함에 따라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의 성사를 위하여는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의 동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1차 접촉 당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북한 외교관들도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1차 접촉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접촉에 응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원고가 주도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및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고 귀국한 원고 일행은 1995. 3. 25. 통일원에 대북 접촉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통일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편지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9. 원고 일행으로부터 그 작성 전달 경위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는 한편, 원고 일행에게 북측에 구두로 교류취소를 통고하도록 종용하였으며, 같은 해 4. 10.에는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강원도의회 의원 3명이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북한주민 접촉 신청 및 승인 사항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이유로 원고 일행에 대하여 경고를 하거나, 경고를 검토한 바는 전혀 없었던 사실, 강원지방경찰청은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불온서신을 보내오고 있는 데다, 원고 또한 위 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대북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이른바 공작내사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원고와 주변인물의 동향과 친인척관계를 파악하고 있던 중 원고가 김정일에게 보내는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인지하고, 1995. 4. 3. 통일원으로부터 원고 일행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입수한 다음, 원고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한 배경, 원고의 성향 등에 관하

여 대외비로 내사하다가 이 사건 편지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내사에 들어가 같은 달 12.부터 24.까지 원고 일행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원고 일행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 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해 5. 3. 내사기록을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한 사실, 춘천지방검찰청은 위 내사기록을 토대로 1995.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원고 일행을 상대로 위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 내용,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원고 일행의 북한측과의 직·간접 접촉 내용,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및 이를 전달한 경위, 이 사건 편지에 원고의 반독재 투쟁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후, 같은 해 9. 25. 그 내사를 종결하면서 “원고 일행이 북한 외교관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아무런 진전없이 귀국한 뒤 남북교류추진을 위하여 중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북한 관리들에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하였다고 하면 접촉이 쉬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여 북한외교관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한 배경과 경과,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일행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일행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실 및 피고 주식회사 강원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는 주로 강원일보 사회부 소속 기자이었던 피고 이의 기사 작성에 따라(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17>의 기사와 <별지 8>의 독자투고 제외) 1995. 4. 9.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이하 다만 ‘별지’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17차례에 걸쳐, 원고 일행이 김정일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 및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이북 5도민회의 반응 등에 관한 기사와 이 사건 편지 사건에 대한 독자의 투고 등을 게재하면서 이 사건 편지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1995. 4. 9.자 기사에서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라는 내용의 제목을 사용한 이래 그 이후 위 기사의 속보 형태로 계속 게재된 기사에서 계속하여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의 제목을 사용하여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기사를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관련 기사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강원일보는 원고 일행이 김정일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등을 계속하여 보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의 제목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으며, 강원일보의 위와 같은 일련의 보도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강원일보는 1995. 4. 9.자 기사(별지 1) 및 같은 달 12.자 기사(별지 3)의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및 작성 의도에 관하여 원고 일행이 통일원 및 수사기관에서 한 해명 내용을 아울러 밝히고 있기는 하나, 그 제목을 포함한 전체 기사의 취지는 이 사건 편지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과 수사기관의 수사상황을 전하는 형식으로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을 뿐이며, 그 밖의 기사는 제목에서 김일성 애도편지 등으로 일단 이 사건 편지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본문에서 이 사건 편지의 성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사건 편지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전하는 형식이거나(별

지 2, 4, 6, 9, 10, 16, 17), 이 사건 편지가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임을 당연한 전제로 그 실질적인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별지 12, 13, 14), 또는 이 사건 편지에 대한 독자 개인 또는 단체의 반응(별지 5, 7, 8)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사들은 그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기사의 대부분을 직접 작성한 피고 이 와 그 사용자로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강원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인 피고 주식회사 강원일보는, 위와 같은 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신문에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으며,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강원일보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하면, 통일원이 원고 일행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거나(별지 2), 경고 조치를 결정하고 금명간 경고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별지 3)와 경찰이 1995. 4. 27. 원고 일행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계속하였으며, 금명간 이들 의원들을 다시 불러 보강수사를 더 할 방침이라는 기사(별지 9) 등은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별지 2, 3, 9의 각 기사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통일원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경고 검토 내지 결정} 또는 ^수사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막연한 말만을 가지고 그 진위 여부는 더 이상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기사화 하였다면 설령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한들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점에 대한 논지는 언론의 신속성을 감안할 때, 언론기자들은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말을 들으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고, 상대방의 반론을 보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통일원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피고들이 그와 같은 취재를 한 상황이나 상대방이 더 이상의 확인없이 그들의 말을 진실로 믿어도 좋을 정도이었는지 등을 확정하지 아니한 가정적 판단이지만,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은 고사하고 피고들이 진정으로 통일원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경고 검토 내지 결정} 또는 ^수사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조차도 부족하다고 보이므로(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통일원은 원고에 대한 경고를 검토하거나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확인하여 준

바가 없다고 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7.

재판장 대법관 박 준 서

대법관 이 돈 회

주 심 대법관 이 임 수

대법관 서 성

□

피고 홍은 한통 노조원들의 북한조종설을 언급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나 이를 논평없이 인용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진실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1998. 10. 27.자 판결 (98다9892)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998년 10월 27일 한국통신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인 도 외 4인이 홍 전 서강대총장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홍은 손해배상하고 중앙일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 홍이 한통 노조원들의 농성사태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물론 그 핵심간부들인 원고 도 외 4인이 북한의 조종을 당한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원고 도 외 4인의 성명을 특정지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표현이 원고 도 외 4인까지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정되지도 않은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명한 것이거나, 이중으로 배상을 명한 것이므로 위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중앙일보사에 대한 상고에 대해서는 “피고 중앙일보가 원고들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 성당과 사찰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홍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논평없이 그대로 게재한 진실한 보도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1995년 파업당시 주요 중앙일간지가 일제히 홍 당시 서강대 총장의 발언을 인용, 한통 노조원들의 농성이 북한의 사전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5서울중재166~170)을 하였고, 중앙일보의 경우(95서울중재169) 원고들이 정정보도문을 1면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불성립되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 2심 모두 피고 홍

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1·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265~282면),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중앙일보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결정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98~102면).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8다989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1.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겸 상고인

2. 도

3. 이

4. 박

5. 박

6. 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상고인 : 1. 홍(弘)

겸 피상고인서울 마포구 신수동 1의 1 서강대학교 내 전총장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이기창, 임광규, 곽동현

피고, 피상고인 :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석현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98. 1. 21. 선고 97나23466 판결

주 문 : 원고들과 피고 홍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피고 홍의 표현의 존부 또는 내용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홍의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홍의 표현행위의 배경이 되는 사실 및 그 표현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이라고 한다)의 소속 근로자 약 62,000명 중 약 52,000명을 구성원으로 한 노동조합이다. 피고 홍은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서강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도 는 원고 노동조합의 교육홍보실장, 원고 이 은 여성국장, 원고 박 은 임금국장, 원고 박 는 교섭국장, 원고 정 은 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으로서, 모두 원고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이었다(이하 원고 도 , 이 , 박 , 박 , 정 을 ^원고 도 외 4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 노동조합은 1995. 5. 2.부터 한국통신과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마찰을 빚던 중, 검찰이 원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려고 하자, 쟁의와 무관한 사유로 조합간부들을 대량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투쟁하였는데, 당시 조합장이던 소외 유 과 원고

도 외 4인 및 다수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도 외 4인을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13명이 같은 달 22.부터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6. 경찰력의 투입으로 연행되어 모두 구속되었다.

라. 피고 홍은 서강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1994. 7.경부터 각종 공식석상에서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이른바 주사파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켜 왔는데, 원고 도 외 4인을 비롯한 노조원 13명의 농성사태가 있는 직후인 1995. 6. 14.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춘천시 소재 한림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화 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월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 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다.”, “정보화시대에 북한은 이미 남한 내 어느 집이 쌀밥을 먹고 어느 집이 보리밥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을 정도로 북한세력이 남한에 침투해 있다.” 라고 말하고, 북한이 각종 노동조합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에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명동성당,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한 것도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냐” 라는 참석 교수 1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면서, “교회와 사찰을 적화통일에 이용하려고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분별을 해야 한다.”, “이번 명동성당과 조계사 사건을 이벤트로 하여 북한이 종교로 하여금 정부와 싸우고 계급투쟁의 앞잡이가 되도록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지도자들의 분별이 좀 미비한 것 같다.”, “공권력을 넣은 것은 잘 넣었다. 교회와 정부를 싸움 붙이려는 자들이 있다.” 등의 말을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 홍이 위 강연에서 “이번에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명동성당,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한 것도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냐” 라는 참석 교수 1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농성사태도 북한이 노동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교회와 정부를 싸움 붙이려 한 것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그 전체적인 흐름과 당시의 정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 농성도 결국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있어서 원고들이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피고 홍의 소송대리인들이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홍의 소송대리인 는 원심 판결이 헌법상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 홍의 위와 같은 표현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가 피고 홍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은 표현행위를 한 바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루는 취지에 불과하다.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홍의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 홍의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피고 홍의 소송대리인 은 원고 노동조합이 북한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믿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주장은 당시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 홍이 원고 노동조합이 북한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법인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피고 홍의 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德行,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그 법인이 입은 무형(無形)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법인인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고 도 외 4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 홍의 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홍의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 특히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한 사람은 원고 도 외 4인을 포함하여 13인뿐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 홍의 표현이 원고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원고 도 외 4인까지도 지목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 홍의 표현이 원고 노동조합의 명예와는 별개로 원고 도 외 4인의 명예도 훼손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원고 도 외 4인에 대하여도 배상을 명한 것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 것이거나, 이중으로 배상을 명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위자료의 수액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홍의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김일성 장례식의 조문참여문제 등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던 우리 나라의 상황과 위 농성

사태의 전개 과정 및 결과 등 원고들이 처하고 있었던 상황, 피고 홍의 사회적 영향력과 피고 홍의 표현의 내용, 표현행위의 본래의 의도, 전체적인 흐름과 상황, 그 이후 해명, 기타 피고 홍의 재산상태,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조합원들의 인원수, 원고 도 외 4인의 지위, 연령, 원고들의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홍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산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라고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간신문인 중앙일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위 수요세미나에 참석 중이던 연합뉴스 소속 심 기자가 피고 홍의 강연내용을 취재수첩에 받아 적어 이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일 16:00경 송신한 통신문을 접하고, 같은 날 심 기자와 한림대학교 관계자에게 피고 홍의 발언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날인 1995. 6. 15.자 중앙일보 1면 중간에 [노조원들의 성당·사찰 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홍 총장] 이라는 제목하에 “서강대 홍 총장은 이번에는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장은 14일 한림대 수요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 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은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월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며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 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 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라고 주장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홍이 한 위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중앙일보가 위와 같이 피고 박홍이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논평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보도라고 판단하였는 바, 위 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에 그것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 성당과 사찰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홍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전문(傳聞)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결국 원고들과 피고 홍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7.

재판장 대법관 박 준 서
대법관 이 돈 희
주 심 대법관 이 임 수
대법관 서 성

□

원고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연재기사로 다루어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수행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

대전지방법원 1998. 4. 9.자 판결 (96가합11079)

대전고등법원 1998. 11. 11.자 판결 (98나3021)

事實概要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998년 11월 11일 주식회사 엑스피아월드가 동양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회사가 광고발주를 거절하자 원고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연재기사로 다루어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 며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동양일보는 1996년 6월초 대전일보, 대전매일신문, 중도일보 등에 원고회사의 광고기사가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원고에게 광고게재발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원고회사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1996년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동양일보 대전판에 [엑스포과학공원 이대로는 안된다] 라는 제하로 게재하였다.

1심 법원에서도 피고 신문사 기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명예가 훼손당함으로써 원고회사의 사회적 평가의 침해 내지 저하에 따라 원고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判決文

사 건 : 96가합11079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엑스피아월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 고 : 주식회사 동양일보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70

대표이사 조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변론종결 : 1998. 3. 19.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25.부터 1998. 4. 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금원 중 2\3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의 범위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2, 6, 26 내지 36, 38 내지 44, 45, 51, 54 내지 56, 58, 63, 64의 각 기재(다만, 갑 제20호증의 26 내지 36, 45, 54 내지 56, 58, 6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정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0호증의 26 내지 36, 45, 54 내지 56, 58, 63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7,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4. 3. 28. 소외 대전엑스포기념재단과의 사이에 20년간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위탁계약에 따라 위 공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양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신문사의 기자들인 소외 김 ○, 한 ○, 김 ○, 연 ○은 공모하여, 1996. 6. 초순경 위 신문사 대전지사 편집국장 소외 김 ○가 당시 대전일보, 대전매일신문, 중도일보 등에 원고 회사의 광고기사가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원고에게 광고게재발주를 요구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기획실 홍보전략팀 사무실을 찾아가 홍보전략팀장 소외 정 ○를 만나 광고게재를 요구하였으나 위 정 ○로부터 아직은 피고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 없다면서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한 ○, 김 ○, 연 ○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도록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특별취재팀을 구성한 다음, 같은 해 7. 15.부터 7. 29.까지 사이에 위 동양일보 대전판에 [엑스포과학공원 이대로는 안된다] 라는 제하로 위 엑스포과학공원 운영실태에 대한 연재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가) 같은 해 7. 18.경 피고 신문사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위 일자 동양일보 19면에, 사실은 원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테크노피아관은 1995. 10.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엑스포기념재단의 안전점검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붕괴위험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이대로는 안된다(5)], [최첨단으로 위장한 부실공원, 곳곳에 하자발생 ... 눈가림식 보수 ... 대형사고 우려] 라는 제하로 “... 실제로 과학공원 전시관 중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테크노피아관의 경우 지반침하와 함께 건물 전체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악의 경우 붕괴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정작 관리를 맡고 있는 엑스피아월드는 지반침하에 따른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서두르기는커녕 침하된 틈에 대해 눈가림식 메우기만 급급해 하는 등 대형사고 원인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라는 내용으로 관람을 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붕괴의 위험이 없는 테크노피아관에 대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붕괴될 수 있는 부실건물인 듯한 강한 인상을 주어 관람을 포기하게끔 유도하려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일간신문을 이용,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일자 동양일보 18면에, 사실은 원고 회사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설치된 대전 북부경찰서 엑스포과학공원 임시파출소 직원 10여 명에 대하여 형사입건자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전 북부경찰서에서 엑스포아파트지역에 방법수요가 필요하여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철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 특히 엑스피아월드측은 지난해 6월 공원내

부에 설치된 각종 불·탈법 사례를 추적한 경찰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자. 봐주지 않는다. 는 이유로 상주한 경찰과 임시파출소를 철수시키고 허술한 자체경비로 전환해 방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원고 회사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공익을 저버리는 부도덕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원고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엑스포공원지역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허술한 방법으로 인하여 관람하기에 위험한 지역인 듯한 인상을 주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일간신문을 이용,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일자 동양일보 19면에, 사실은 원고 회사에서 개장 이래로 배출한 쓰레기량은 약 2,500t에 불과하고, 대규모 쓰레기 배출업체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와 약정하여 분리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엑스피아월드 ^수입떨어진다} 쓰레기 분리수거 외면. 개장 이후 6천여t 불법매립] 이라는 제하로 “... 엑스피아월드측은 지난 94년 개장 당시 공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기 위해 서울 업체인 (주)동호에 용역까지 주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관람객이 적어 수입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분리수거는커녕 건축자재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수거해 대덕구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간의 처리과정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 과학공원이 재개장 직후부터 현재까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매립한 쓰레기의 양은 6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과학공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캔과 사발면용기, 일회용 컵 등이 대부분으로 관람객들이 버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분리수거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섞어 배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관람객들의 노력을 무색케하고 있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원고 회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환경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외면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인 것처럼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일간신문을 이용,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신문사 기자들인 위 김 , 한 , 김 , 연 의 위 인정과 같은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명예가 훼손당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신문사는 위 김 등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 내지 저하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김 등이 원고 회사에게 광고발주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원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연재기사로 다룬 점, 위 기사내용의 허위·과장의 정도, 원고 회사의 지명도와 영업실적, 부정적 보도내용이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그 명예를 사후에 회복함이 곤란한 점, 피고 신문사의 규모 및 재산정도, 피고 신문사의 소속 기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금 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 회사 광고국 직원인 소외 이 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신문사에서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비방 기사를 계속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회사가 대외적인 신용실추, 비난 등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로부터 광

고를 수주하여 광고비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경 위 회사 홍보전략팀장 소외 정 ○○에게 전화하여 “요즘 어떠냐, 도와줄 것이 없느냐” 라고 말하여 은근히 광고계재를 요구한 다음, 같은 달 22. 16: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3의 1에 있는 원고 회사의 기획실 홍보전략팀 사무실에서 위 정 ○○에게 “요즘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기사계재를 중단하고 홍보기사로 전환할 수 있다. 8월 7일경에 광고계획이 있느냐, 지금 당장 주지 않더라도 계획만 말해달라. 지방신문사는 광고로 먹고 산다. 그래서 광고사원의 파위가 세다. 내가 차장이지만 간부회의에도 들어간다. 편집국에 들러 편집국장하고 차나 한잔하고 가라.” 고 말하여 만일 피고 신문사에 광고계재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계속 게재하여 위 회사의 명예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또한 위 회사의 중역사원인 소외 정 ○○의 지위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 1,500,00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광고계재요구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로 인하여서도 원고 회사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재산,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명예훼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연인의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때에만 예외적으로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외에, 원칙적으로 위 조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소외 이 ○○로부터 공갈을 당한 소외 정 ○○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가 대외적으로 훼손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의 다음날인 1996. 10. 25.부터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이 판결선고일인 1998. 4.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9.

재판장 판사 송 영 현

판사 곽 내 원

판사 고 종 영

2심 判決文

사 건 : 98나302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엑스피아월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동양일보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70

대표이사 조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변 론 중 결 : 1998. 9. 23.

제1심 판결 : 대전지방법원 1998. 4. 9. 선고 96가합11079 판결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3. 28. 대전엑스포기념재단과의 사이에 20년간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위탁 계약에 따라 위 공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양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신문사의 기자들인 김 , 한 , 김 , 연 은 공모하여, 1996. 6. 초순경 위 신문사 대전지사 편집국장 김 가 당시 대전일보, 대전매일신문, 중도일보 등에 원고 회사의 광고기사가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원고에게 광고게재발주를 요구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기획실 홍보전략팀 사무실을 찾아가 홍보전략팀장 정 를 만나 광고게재를 요구하였으나 정 로부터 아직은 피고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 없다면서 거절당하자, 김 는 이에 앙심을 품고 한 , 김 , 연 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도록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특별취재팀을 구성한 다음, 1996. 7. 15.부터 7. 29.까지 사이에 동양일보 대전판에 [엑스포과학공원 이대로는 안된다] 라는 제하로 엑스포과학공원 운영실태에 대한 연재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가) 사실은 원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테크노피아관은 1995. 10.부터 1995. 12. 사이에 엑스포기념재단의 안전점검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붕괴위험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7. 18.자 동양일보 19면에, [엑스포과학공원 이대로는 안된다(5)] , [최첨단으로 위장한 부실공원, 곳곳에 하자발생 ... 눈가림식 보수 ... 대형사고 우려] 라는 제하로 “... 실제로 과학공원 전시관 중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테크노피아관의 경우 지반침하와 함께 건물전체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악의 경우 붕괴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정작 관리를 맡고 있는 엑스피아월드는 지반침하에 따른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서두르기는커녕 침하된 틈에 대해 눈가림식 메우기만 급급해 하는 등 대형사고 원인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라는 내용으로 관람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테크노피아관이 마치 금방이라도 붕괴될 수 있는 부실 건물인 듯한 인상을 주는 기사를 게재·배포하고, (나) 사실은 원고 회사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설치된 대전 북부경찰서 엑스포과학공원 임시파출소 직원 10여 명에 대하여 형사입건자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전 북부경찰서에서 엑스포아파트지역에 방범수요가 필요하여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철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6. 7. 20.자 동양일보 18면에, “... 특히 엑스피아월드측은 지난해 6월 공원내부에

설치된 각종 불·탈법 사례를 추적한 경찰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자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주한 경찰과 임시파출소를 철수시키고 허술한 자체경비로 전환해 방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원고 회사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공익을 저버리는 부도덕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원고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엑스포공원지역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허술한 방법으로 인하여 관람하기에 위험한 지역인 듯한 인상을 주는 기사를 게재·배포하고, (다) 사실은 원고 회사에서 개장 이래로 배출한 쓰레기량은 약 2,500t에 불과하고, 대규모 쓰레기 배출업체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와 약정하여 분리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 7. 22.자 동양일보 19면에, [엑스피아월드 ^수입떨어진다} 쓰레기 분리수거 외면. 개장 이후 6천여 톤 불법매립] 이라는 제하로 “... 엑스피아월드측은 지난 94년 개장 당시 공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기 위해 서울 업체인 (주)동호에 용역까지 주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관람객이 적어 수입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분리수거는커녕 건축자재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수거해 대덕구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간의 처리과정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 과학공원이 재개장 직후부터 현재까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매립한 쓰레기의 양은 6천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과학공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캔과 사발면 용기, 일회용 컵 등이 대부분으로 관람객들이 버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분리수거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섞어 배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관람객들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원고 회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환경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외면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기사를 게재·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2, 6, 26 내지 36, 38 내지 44, 45, 51, 54 내지 56, 58, 63, 64의 각 기재(다만, 갑 제20호증의 26 내지 36, 45, 54 내지 56, 58, 63의 각 기재 중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제1심 증인 정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20호증의 26 내지 36, 45, 54 내지 56, 58, 63의 각 일부 기재

[방해가 되지 않는 증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7,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의 기자들인 김 , 한 , 김 , 연 의 위 인정과 같은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명예가 훼손당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김 등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 내지 저하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김 등이 원고 회사에게 광고발주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원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연재기사로 다룬 점, 위 기사내용의 허위·과장의 정도, 원고 회사의 지명도와 영업실적, 부정적 보도내용이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그 명예를 사후에 회복함이 곤란한 점, 피고의 규모 및 재산정도, 피고의 소속 기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

상액은 금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의 다음날인 1996. 10. 25.부터 피고가 위 채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8. 4.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11.

재판장 판사 이 동 흡

판사 신 동 윤

판사 김 남 근

□

월간지로 신속성을 요하는 타매체보다 사실확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각 기사의 근거로 든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8. 11. 25.자 판결 (97가합70274, 97가합70281(병합))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8년 11월 25일 민변 외 8개 단체가 주식회사 한국노동단과 발행인,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한국노동단이 발행하는 월간 <한국노동>은 1997년 2월호, 3월호, 8월호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 인가] ,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 ,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라는 제하로 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주의적 노동당 지향의 단체이고,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은 공산주의자들을 미화하는 단체로, 원고 현대·대우·기아노조는 조합장들에게 과다한 판공비, 기밀비, 의전활동비를 지급하여 노조간부들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원고 연노련은 97년 노동계 총파업 당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목살하고 민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산하노조에 지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자 원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기사가 좌익색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모 수사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공공성은 인

정되나 <한국논단>은 월간지로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매체보다 사실 확인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각 기사의 근거로 든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기 위한 친북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각 기사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7가합70274 손해배상(기)

97가합70281(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4. 인권운동사랑방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 현대자동차노동조합

7. 대우조선노동조합

8. 기아자동차노동조합

9.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광희, 백승현, 정연순, 안상운

피 고 : 1. 주식회사 한국논단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8

대표이사 이

2. 이

서울

3. 전

서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황규범, 임광규

변론종결 : 1998. 10. 28.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8. 1.부터 1998. 11. 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나.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금 30,000,000원, 원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각 금 25,000,000원, 원고 대우조선노동조합, 기아자동차노동조합에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3. 1.부터 1998. 11. 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 이 은 각자,

가.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에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8. 1.부터 1998. 11. 25.까

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나.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1.부터 1998. 11. 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월간 <한국논단>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

4.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의 피고 전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 이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연대하여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에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100,000,000원, 원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우조선노동조합,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각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논단> 25쪽에 <별지 2> 기재 보도문을, 64쪽에 <별지 3> 기재 보도문을 각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각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갑 1의 1 내지 6, 갑 2, 3의 각 1 내지 7, 갑 4의 1, 2, 3, 갑 5, 6, 7의 각 1, 2, 갑 8 내지 11, 갑 12의 1 내지 4, 갑 13, 14, 갑 15의 1, 2, 3,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들의 지위

(가)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원고 민변}이라 한다)은 1988. 5.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변호사를 비롯한 회원 변호사 200여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원고 전국연합}이라 한다)은 1991. 12. 1. 한국사회의 민주개혁과 민족통일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회 운동 단체로서 산하에 각 부문별 조직과 지역별 조직 24개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다) 원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원고 참여연대}라 한다)는 1994. 9. 10.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 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 운동 단체로 회원 2,000여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태)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은 1995. 3.경 국내외의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확립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 운동 단체로서 변호사, 교수, 실무자 등 운영위원 10여 명, 자문위원 70여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매)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원고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 조국, 민주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건설노동조합 등 19개 산업별 노동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으로서 비법인 사단이다.

(배) 원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 ^원고 현대노조)라 한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이하 ^원고 대우노조)라 한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하 ^원고 기아노조)라 한다)은 각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각 해당 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장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비법인 사단이다.

(사)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원고 언론련)이라 한다)은 전국 언론사 노동조합의 상위 노동조합으로서 비법인 사단이다.

(2)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가) <한국논단> 1997년 2월호 중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 인가?] (20~25쪽)

1) [노동 ^勞}字와도 관계없는 친북투쟁] 이라는 소제목 아래, (중략) “더구나 왜 하필이면 국가기간산업이며 이제 겨우 수출중공업으로 부상하려는 자동차, 조선, 중공업, 전자, 통신 종사자들이 걸핏하면 ^총파업}인가? 이걸 급여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행위가 아니라,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 공산계릴라식 빨치산 전투가 아닌가? 붉은 띠에 쓰인 ^김영삼 정권 퇴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중략) “불법단체인 소위 ^민주노동}은 ^노동악법 저지투쟁}이 목표라고 했지만, 실은 ^정권타도투쟁}이 그 저의에 깔려 있음을 현명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들은 88년 6월 노동운동의 계급투쟁화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을 목적으로 친북좌익단체인 ^범민련}과 함께 행동을 시작한 NL(민족해방)계 운동권 출신 金 等 10여 명을 중심으로 위장취업, 노사분규조성 등을 일삼다가 95년 11월 소위 ^조선노협}, ^영남지역노조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민주노총}을 설립했다. 이후 이들은 ^국민연합} 등 체제부정 세력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대선자금공개}, ^5. 18. 학살자 처벌} 등등, 노동의 ^노}字와도 관계없는 대중정치투쟁만을 전개해 왔다.” (20, 21쪽)

2) [資本家 對 노동자, 계급투쟁이 기본구도] 라는 소제목으로, “제작년 봄(95년 4월)에 이르러서는 소위 ^노동법개정투쟁}을 내걸고 25개 단체들로 ^汎對委(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철회 및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 동시다발 ^평화대행진} 전개와 함께 민노총의 총파업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범대위는 ^전국연합}, ^한총련},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30개 단체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함께 파업압력을 가하고 있다. 합법단체인 한국노총은 좌익불법단체인 민노총과의 경쟁심에서 더욱 파업 지향인 것도 같다. 이들의 기본구도는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계급투쟁으로 되도록 과격한 행동을 지향,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 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1, 22쪽)

이어, [정당한 노동행위 아닌 빨치산 전법] 이라는 소제목 아래, “사정이 이러거늘, 정부는 단호하고도 일관된 법의 집행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다스려야 함에도 오히려 。노동운동. 을 내건 불법·불순세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니 일단 먹살을 잡은 저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지지 않을 수 없다.” (21, 22쪽)

위 기사 중 “이들의 ~ 분명하다.” 는 부분은 다시 23쪽에서 고딕체 굵은 글씨로 재인용되고 있다.

(나) <한국논단> 1997년 3월호 중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26~31쪽)

1)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라는 제목 바로 밑에 “1천억 넘는 무노동·유임금, 노조 각출금 체제파괴 공작비에” 라고 제목에 대한 설명을 단 후, (중략) [극소수의 노동자가 。혁명의 주력군. 이다] 라는 소제목 아래, (중략)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이른바 사회기본계급인 노동자들이다. 물론 노동자라고 모두 다 김일성의 교시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죽은 김일성과 그 。유훈.에만 충실한 것은 우리 사회 1천2백만 근로계층의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소수의 혁명주도분자들이다.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 엎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우선 작년 12월 28일 결성된 노동법 범대위(공동대표 등) 참가단체들이 그 주축이다. 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 (중략) 참여연대, (중략) 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김 (민교협), 신 범민련), 천 (전국연합), 오 (지식인연대), 최 (민변), 문 (정사단), 최 (전불련), 김 (참여연대) 등이다. 이들은 범대위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동계에 정치투쟁을 전개토록 유도하며 파업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좌익노동단체가 민노총이다.” (27, 28쪽)

2) [연간 수십억원 거둬 쓰는 민노총] 이라는 소제목 아래, (중략) “민노총은 노동귀족화되고 있는 대기업 노조간부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 첫째, 조합원 3만4천명을 거느린 현대자동차에서는 1인당 월급여의 1%씩을 또박또박 공제하여 월 2억5천만원, 연간 30억원을 뜯어내고 있는데, 그 중 8천만원을 민노총에 상납하고 있다. 그렇게 모인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노조 간부 사무실의 인건비, 사업비, 유지비 등에 22억4천만원, 임투 등 투쟁의 기금에 2억5천만원, 민노총 등 상급 단체 납부에 2억4천만원을 각각 쓰며, 그 중에서도 한총련에 1억2천2백40만원, 민노총에 8천1백60만원이 지급되었다. 1996년 한해동안 현대자동차노조 한군데에서 모인 돈들이 대한민국의 체제파괴활동과 공작비로 쓰인 것이다. 그 밖에도, 기업 내 노동조합 간부의 소위 판공비가 2천4백만원, 。기밀비.와 。의전활동비. 라는 것이 9천6백만원이나 된다니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조인가, 아니면 정치단체 또는 정보기관이란 말인가? 열린 입이 닫히질 않는다.” (27, 28쪽)

3) [노조가 판공, 기밀비에 。의전활동비.까지] 라는 소제목 아래, “대우조선의 경우를 보자. 조합원은 8천3백20명. 조합비는 기본급의 1%를 공제하여 연간 8억1천5백만원을 거두어 들인다. 이들의 사용 내역은 사업비, 인건비가 5억, 투쟁기금 1억, 상급단체 상납금 1억2천6백만원, 조합장 판공비 1천2백만, 기밀·의전활동비 3천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 (29쪽)

“。기아자동차.는 조합원이 2만6천6백99명이며, 연간 13억원(1인당 기본급 1% 공제)을 걷는다. 그 중 사업비가 5억원, 운영비가 6억6천만원, 투쟁기금 4억원, 상납금 1억원, 조합장의 판공비 1천2백만원, 기밀·의전활동비가 3천만원인데, 기아자동차의 경우 아산공장 노동조합장 판공·기밀비가 3천4백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29쪽)

“도대체 노조의 인건비, 사업비는 무엇이며, 조합장의 판공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산하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이 명분인 조합장의 。기밀비., 。의전활동비.란 대체 누구를 위해 어디다 쓰이는 돈들인가?” (29쪽)

4) “더욱 한심한 것은 언론노조의 행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8층에 。상황실.이라는 것을 차려 놓고 산하 각 언론매체 노조에게 매우 파괴적인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중략) 그런데, 이들은 특하면 정치투쟁 대열에 끼지를 않나, 편파적인 보도와 논평을 하지 않나, 세계 수준을 웃도는 임금인상 투쟁을

별이지 않나... 그야말로 배부른 돼지들의 고약한 난장판을 보는 것 같다. (중략) 이들은 언필칭 공정보도. 를 내세워 실은 정부·여당의 입장이나 발표는 묵살하고 민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각 산하 언론노조에 지령했다. (중략) 이런 지령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의 하나가 지난 1월 14일 일부 KBS 노조원들의 조선일보사 급습 사건이었다.” (30, 31쪽)

(ㄷ) <한국논단> 1997년 8월호 중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20~23쪽)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라는 제목 바로 옆에 [대한민주공화국인가?, 조선인민공화국인가?] 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후 [北韓産 술 팔아 자금마련] 이라는 소제목 아래, “특히 전국연합. 은 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 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북 이적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략) 전국연합의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徐俊植)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말誌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생활상을 수시로 게재, 그들이 마치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망자를 . 애국자. 로 미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말誌 97년 5월호에는 출소 공산주의자 권 이 최근 사망하자 .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 고 미화한 것이 그것이다.” (21, 22쪽)

(3)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 및 게재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이 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한국논단> 1997년 2월호에 위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 <한국논단> 1997년 8월호에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라는 기사를 썼고, 피고 전 은 피고 회사의 기자로서 <한국논단> 1997년 3월호에 위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라는 기사를 썼다.

나. 판단

(1) 피해자 적격 및 특정

(가) 자연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도 그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 신용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모두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할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 바, 피해자의 특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명칭을 그대로 명시할 필요는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면 족하다.

이 사건 각 기사에서 각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노총” 또는 “민주노총” 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이란 명칭은 각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의 각 정관에 규정된 약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위 원고들의 명칭으로 불리고, “민노총” 은 원고 민주노총의 일반 국민에 대한 인지도로 보아 원고 민주노총을 가리킴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기아자동차” 란 표현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기사내용의 전후로 보아, 원고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를 가리킴을 쉽게 알 수 있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원고별로 보면,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계급투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는 활동을 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

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 투쟁을 하는 단체이고, 특히 원고 민주노총은 “범민련”과 함께 행동을 시작한 민족해방(NL) 운동권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한국노총에 파업 압력을 가하고 연간 수십억원을 대기업 노조 간부들로부터 거둬들여 호화생활을 하여 노동 귀족으로 되었으며, 원고 전국연합은 19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북 이적활동을 하고, 원고 현대노조는 “한총련”에 1억2,240만원을 지급하고, 조합비를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 활동과 공작비로 쓰며, 원고 대우조선, 기아노조는 노조 간부가 관공비, 기밀·의전활동비를 거둬들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며, 원고 연노련은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공정보도를 내세워 정부, 여당의 견해나 발표를 묵살하고 민주노총의 발표만 보도하도록 각 산하 언론노조에 지령하였고,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출소 공산주의자인 권 을 평생 조국을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공산주의자들을 애국자로 미화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사가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 전체의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제목과 본문의 내용,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좌우의 이념 대립과 한국 전쟁, 휴전 후 남북이 대치하며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체계를 감안하여 볼 때, 특정 단체가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단된 “북한”, 이적단체로 판단된 “한총련”, “범민련”과 관련이 있고, “노동당운동”, “좌익 불법 단체”,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 “공산 게릴라식 빨치산 전투”,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 활동”, “친북 이적 활동”,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명되는 경우, 그 단체는 불법 단체로서 수사 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국가, 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 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비유나 비판적 의견의 제시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좌익 색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가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과 신속한 보도에서 불가피한 일부 오보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모 수사기관의 자료와 공지의 사실에 바탕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이므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각 기사는 노동 운동 및 일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비판, 친북 공산 활동에 대한 경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의 공공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진실성

이 사건 각 기사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각 기사별로 살펴본다.

(가) 1997년 2월호,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1) 원고 민주노총이 친북좌익단체인 “범민련”과 행동을 시작한 민족해방계 운동권 출신 김영신 등 10여 명을 중심으로 위장 취업, 노사분규조성 등을 일삼다가 설립된 단체라거나, 공산 게릴라식 빨치산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이 1995년 4월에 결성된 범대위(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철회 및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계급 투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하여 정부를 전복하는 활동을 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

(나) 1997년 3월호,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1)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파업 압력을 가하였거나 연간 수십억원을 노동기족화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 간부들로부터 거둬들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원고 현대노조의 1995. 9. 1.부터 1996. 2. 29.까지 예산액 항목 중 “기밀비”가 2,000만원, “직무 판공비”가 7,000만원이고, 그 중 “기밀비” 10,400,000원, “직무 판공비” 21,170,430원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15의 1),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현대노조의 노조 간부들이 위 “기밀비”와 “직무 판공비”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 현대노조 예산 편성 중 “의전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다거나 “한총련”에 1억 2,24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기밀비”나 “직무 판공비”를 포함한 조합비를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 활동과 그 공작비로 썼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원고 대우노조가 1996. 11. 10. 결산한 바에 따르면 기밀비 11,400,000원, 직무 수당 18,550,000원, 직책 수당 1,450,000원, 직무 판공비 9,685,81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 기아노조에서 1995. 9. 24.부터 1996. 9. 30.까지 “기밀비” 9,600,000원, “직무 판공비” 34,500,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기밀비”로 9,500,000원, “직무 판공비”로 34,478,660원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15의 2, 3),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대우노조, 기아노조의 노조 간부들이 위 “기밀비”와 “직무 판공비”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으며, 별도의 “의전활동비” 항목이 있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5) 원고 언론권이 공정보도를 내세워 정부, 여당의 견해나 발표는 묵살하고 민주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각 산하 언론노조에 지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1997년 8월호,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1) 원고 전국연합이 “공산당”이라거나, 19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라는 단체가 실재한다거나, 위 원고가 그 단체의 전위대로서 친북 이적 활동을 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이 월간 <말>지 1997년 6월호에 권 에 관한 기사를 쓴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음),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애국자로 미화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원고가 출소 공산주의자인 권 을 “평생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표현하였거나 “공산당”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3)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한국논단>은 월간지이므로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언론 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기사의 근거로 든 모 수사기관의 정보도 그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명칭, 취재 경위,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된 해당 수사 자료를 피고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라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친북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여러모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그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로 인해 무형의 손해를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이은 월간 <한국논단>의 편집인 겸 발행인,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의 각 기사 작성자로서, 피고 전은 위 [일부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라는 기사의 작성자로서 각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고(다만, 피고 전의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기사에는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에 관한 것이 없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2. 손해 배상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들과 같은 법률 전문가 단체, 사회 운동 단체, 시민 운동 단체, 노동조합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체제에서 용인되는 적법성, 업무 집행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그 존립의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기사로 원고들이 마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이적 단체 또는 불법 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일반 여론의 지지 및 원고들의 각 구성원들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점, 우리 나라 현실에서 언론을 통해 “이적 단체”, “공산당”, “친북 단체” 등으로 지명되면 그 진실 판단 여부 이전에 사회 행동의 제약 등 현실의 피해가 생기는 점, <한국논단>의 발행 부수 및 사회적 영향력, <한국논단>의 지하철 및 일간 신문을 통한 광고 방법의 전파성,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크기,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원고들의 구성원 수 및 단체로서 지명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무형의 손해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원고들의 무형의 손해

(1)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피고 회사, 이은)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각 20,000,000원

(2) [일부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피고들)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각 20,000,000원, 원고 민주노총 30,000,000원, 원고 현대노조, 언노련 각 25,000,000원, 원고 대우노조, 기아노조 각 20,000,000원

3.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크기, 게재 면수,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국논단>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에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한국논단> 1997년 3월호 발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97. 8. 1.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11. 25.(이하 같다)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분의, 원고 민주노총에 30,000,000원, 원고 현대노조, 언노련에 각 25,000,000원, 원고 대우노조, 기아노조에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한국논단> 1997년 3월호 발행일인 1997. 3. 1.부터 1998.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 이 은 각자, 원고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에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한국논단> 1997년 2월호 발행일 후로서 <한국논단> 1997년 8월호 발행일인 1997. 8. 1.부터 1998.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분의, 원고 민주노총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한국논단> 1997년 3월호 발행일인 1997. 3. 1.부터 1998.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주문 제3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의 피고 회사, 이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인권운동사랑방의 피고 전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 이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25.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강 한 승

판사 류 용 현

□

원고단체가 친북·이적 활동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8. 12. 4.자 판결 (97가합90841)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1998년 12월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주)한국노동당과 대표이사겸 발행인이자 이 사건 기사 작성자인 이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단된 ^북한} 내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공산당)을 동조하는 단체로 지명되는 경우 그 단체는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비추어, 비판적 의견의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2천만원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발행하는 월간 <한국노동>은 1997년 8월호에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친북·이적활동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와도 연계 남한 내의 공산파괴 분자들을 그럴 듯하게 인권문제로 왜곡·부각시키고 있다.” 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기사가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밝히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노동>은 월간지이므로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확인노력이 필요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건 기사의 근거로 든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피고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判 決 文

사 건 : 97가합90841 손해배상(기)

신청인 :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도재형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한국노동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8

대표이사 이

2. 이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황해진

변론종결 : 1998. 11. 13.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1.부터 1998. 12. 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월간 <한국논단>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한국논단> 20쪽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1994. 3.경 ^인간이 지녀야 할 보편적 권리를 옹호하고 공동선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천주교회 성직자 및 국회의원, 변호사 등 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면서 1997년 8월호 20쪽 내지 23쪽에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이 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기사 내용

(가) 위 기사문 중 20쪽에서, “1997년 6월말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 중인 공산주의자가 71명이며, 이들을 공공연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4개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미전향 공산주의자가 아직도 58명이 있다니까 이들이 조만간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그 수가 1백29명이나 된다.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공산주의자들은 끝내 전향을 거부하며 이 나라 사회 각 계층에서 . 활동. 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 천주교 인권위. , . 민가협. 등이 주선한 . 사랑의 집. 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며 농사나 막노동을 하고 있다. 종교계와 재야단체, 대학가 등에서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NCC(한국기독교협의회)인권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종교인 협의회, 민가협, 전국연합,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한총련 AI(Amnesty International 국제인권위) 한국지부 등이 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친북·이적(親北·利敵) 활동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다.”

(나) 위 기사문 중 20쪽과 21쪽에서 [공산당 지원하고 있는 재야단체들] 이라는 소제목 아래, “예컨대, 천주교 인권위(위원장), 민가협(대표) 등은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 재소 또는 출소 미전향 공산주의자들을 。분단의 희생양.이니, 。전쟁포로.니 하여 석방 또는 복송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복송을 시킨다 해도 북 당국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이 와는 달리, 이용가치가 낮은 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미전향자들도 복송되어 고생하느니 남한에서 잘 먹고 대접받으며 。 남조선의 혁명기지화.에 공헌하는 것을 더 큰 보람으로 여길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그들 을 위해 천주교 인권위는 지난 4월 17일 법무부장관을 방문, 재소공산분자들에 대한 특별사 면을 요구하고 탄원서와 함께 신부·신도 등 4만3천여 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의 눈과 귀와 가슴은 북녘에서 굶기며 탄압하는 。조선로동당.의 지령문에만 충실하 고, 그 밑에서 신음하는 2천만 북한 민중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가?”

(타 위 기사문 중 22쪽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제목 아래, “천주교 인권위·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등도 카톨릭 마스크위원회(위원장 주교)가 출소한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한 ^풀은 풀끼리 늪어도 푸르다)라는 58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어 각계에 보냈 다. 지난 5월 10일에는 ^97 카톨릭언론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어 국내외 교계에 이 비디오를 널리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제인권단체와도 연계 남한내의 공산파괴 분자들을 그럴 듯하게 인권문제로 왜곡·부각시키고 있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일반적으로 기사가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 전체의 흐름, 사용된 어휘 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제목과 본문의 내용,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미전향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석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 시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마치 원고가 북한 내지 공산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친북·이적 활동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좌우의 이념 대립과 한국 전쟁, 휴전 후 남북이 대치하며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체계를 감안하여 볼 때, 특정 단체가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국 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단된 ^북한} 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당}을 동 조하는 단체로 지명되는 경우, 그 단체는 불법 단체로서 수사 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 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국가, 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 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이 사 건 기사의 내용은 비판적 의견의 제시를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충분히 원고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거나, 가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좌익 색출, 자 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가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 수사기관의 자료와 공지의 사실에 바 탕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이므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 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각 기사는 친북 공산 활동에 대한 경계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공공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진실성

이 사건 각 기사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 가.의 (2) (가)와 관련하여 원고가 출소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들의 거주를 위해 이른바 사랑의 집.을 주선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친북·이적 활동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다는 피고 회사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다.

(나) 위 가.의 (2) (나)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산주의자의 석방을 탄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을제 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형을 복역하고 있는 등의 석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탄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른바 양심수의 석방을 건의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것으로서 원고가 현재 수감 중인 공산주의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피고 회사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다.

(다) 위 가.의 (2) (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한 ^풀은 풀끼리 늘어도 푸르다}라는 비디오를 제작,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다.

(3)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한국논단>은 월간지이므로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기사의 근거로 든 모 수사기관의 정보도 그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명칭, 취재 경위,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된 해당 수사자료를 피고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친북·이적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여러모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그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해 무형의 손해를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이 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자로서 각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2. 손해 배상의 범위

원고와 같은 시민 운동 단체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체제에서 용인되는 적법성, 업무집행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그 존립의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마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이적단체 또는 불법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일반 여론의 지지 및 원고의 각 구성원들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점, 우리 나라 현실에서 언론을 통해 친북단체로 지명되면 그 진실 판단 여부 이전에 사회 행동의 제약 등 현실의 피해가 생기는 점, <한국논단>의 발행 부수 및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각 기사의 제

목과 크기,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원고의 구성원 수 및 단체로서 지명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무형의 손해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크기, 게재 면수,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국논단>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한국논단> 1997년 8월호 발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97. 8. 1.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12. 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4.

재판장 판사 전 효 숙

판사 이 재 권

판사 이 용 운

□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사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몰래 전화통화장면을 녹화하고, 고의로 테이프를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으리라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8. 12. 16.자 판결 (97가합76326)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8년 12월 1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씨의 진료를 맡았던 비뇨기과 전문의 박 씨가 중앙일보사와 소속 기

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피고 중앙일보사가 1997년 9월 29일자에 [^1mm 구멍} 당신의 마음 훑친다]라는 제하로 감시카메라나 폐쇄회로 TV를 이용한 비밀 촬영이나 녹화가 타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부작용의 사례로 ^대통령 아들의 불미스런 모습이 믿었던 사람을 통해 사방팔방으로 퍼지기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 전체의 흐름, 제목과 전문의 내용, 구성과 배치 및 사용된 어휘의 의미와 연결방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읽고서 원고가 김 몰래 전화통화장면을 녹화하고, 고의로 이 테이프를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으리라 인정되며, 원고를 단지 ^김 이 믿었던 사람}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에 앞서 전개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독자들은 충분히 원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테이프가 진료와 관련 없는 장면까지 녹화되어 있지만 녹화 중임을 알면서도 자유롭게 행동한 것이라면 녹화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 위 장면들의 녹화가 몰래카메라에 의한 비밀촬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특별한 목적으로 비디오테이프를 유출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김 몰래 전화통화장면을 녹화하였거나 이 테이프를 유출한 것이라는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들이 기사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위자료 외에 원고가 요구한 공고문의 게재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언론에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 유출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그에 따른 정정보도가 게재, 방영되어 원고의 명예가 이미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判 決 文

사 건 : 97가합76326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희선

피 고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석현

2. 강

3. 허

4. 전

피고 2, 3, 4의 주소 서울 중구 순화동 7(중앙일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원, 김창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인희

변론종결 : 1998. 12. 2.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9.부터 1998. 12. 1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은 40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이 연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①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판결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의 각 제1면 하단부 가로 37cm, 세로 17.1cm의 칸 안에 가로, 세로 각 1.8cm의 크기로 [공고문] 이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로, 가로, 세로 각 1.5cm의 크기로 [1997. 9. 29.자 중앙일보 제45면에 보도된 속칭 몰래 카메라 등 관련 기사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 라는 제호를 4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15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4의 1~3, 5~8, 9의 2~6, 10의 1~3, 11의 1~2, 12~18, 을 5의 4~1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녹화 테이프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서울 14에서 ^G 남성 클리닉)이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를 발행·판매하고 있으며, 피고 강 은 피고 회사의 문화부 문화섹션팀 취재 기자, 피고 허 는 위 문화섹션팀장, 피고 진 은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은 1994. 12.경부터 1997. 2.경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여러 차례 비뇨기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위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료 차트 또는 진료 기록부를 이용하는 종래의 방식과 진료실 내에 설치한 녹화용 카메라로 진료 과정을 녹화한 뒤 그 테이프를 보관하는 방식(이하 ^녹화 방식}이라 한다)을 병용하고 있었는 바, 위 김현철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린 나머지 일반 진료실이 아닌 원장실에서 따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한편 위 녹화 방식에 따른 진료를 선택하였기에, 위 김 에 대한 진료는 녹화용 카메라가 설치된 위 병원 원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원고가 직접 위 김현철을 문진·검사하거나 그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김 은 위와 같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문진 등을 위해 원고와 직접 대면하는 시간 사이 사이에, 그 곳에 있는 전화기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유선 방송 사업자 선정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받기도 하는 등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행동하였는데, 위 김 에 대한 진료 개시와 동시에 그 진료 과정을 녹화하기 위해 켜 놓은 녹화용 카메라를 그때그때 단속(斷續)하지 않았던 탓에, 위와 같은 장면들 역시 위 녹화용 카메라에 의하여 빠짐없이 녹화되었다.

위 김 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이 그대로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위 녹화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진료와 관계없는 위 장면들의 녹화 중지·삭제 또는 위 장면들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의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한편, 원고는 위 김 에 대한 진료 과정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들을 다른 환자에게 대 한 비디오 테이프들과 함께 원장실에 있는 보관용 캐비닛 안에 넣어 보관해 왔다.

다. 1997. 2.경 한보 그룹의 정치인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위 김 이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시민 운동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 양 이 원고가 위 김 을 진료하면서 그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20일 18:30경 위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와 면담하던 중,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와 같이 원장실의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위 김 에 대한 진료 녹화 테이프들 중 ^위 김 이 전화를 걸어 유선 방송 사업자 선정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 는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 1개(이하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라 한다)를 몰래 가지고 나온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 직후 관할 파출소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위 양 이 같은 해 3월 중순경 제보 차원에서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함에 따라, 그 무렵 각 신문과 방송에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 장면 중 위 전화 통화 장면이 위 김 의 국정 개입 의혹에 관한 기사와 함께 게재·방영되기에 이르렀다.

라. 이에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가 위 김 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중요한 물증으로 부각되는 한편 그 녹화 경위를 둘러싸고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 보도 직후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각 신문과 방송에 원고의 실명과 함께 ^위 김 이 원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김 에 대한 진료 과정을 녹화 하면서 위 전화 통화 장면도 함께 녹화해 두었다가 위 김 의 국정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공개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게재·방영되는가 하면, 나아가 일부 신문과 방송 에 감시 카메라 또는 폐쇄 회로 TV의 설치·이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다루면서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유출을 그런 사례의 하나로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게재·방영되 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유출 경위에 관한 부정확한 기사들이 게재·방 영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각 언론사에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유출 경위에 관하여 ^위 김 을 진료하면서 그의 동의를 받아 진료 과정을 녹화했던 것인데, 위 양 이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를 절취하여 언론사에 건네줌으로써 공개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 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의 위 주장 또는 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일부 신문과 방송에 게재·방영되었다.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유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 데, 피고 회사는 1997. 9. 29. 같은 일자 중앙일보 제45면 상단에 [^1mm 구멍} 당신의 마 음 훔친다] 는 제목 아래 ^밝은 등 밑에 웅크리며 자신을 감추려는 별거벗은 사람들의 모습 과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게재하고, 여자 화 장실 거울 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모니터 화면에 잡힌 20대 여자의 행동거지를 상세히 묘사한 다음, 감시 카메라 또는 폐쇄 회로 TV를 이용한 비밀 촬영·녹화가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타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그 부작용의 몇 가지 사례를 드는 가운데, “대통령 아들의 불미스런 모습이 믿었던 사람을 통 해 사방팔방으로 퍼지기도 했으며” 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기사 부분}이라 한다)를 게재 한 <별지 제1>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당시 신촌 그레이스백화점측이 여자 화장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물의를 빚게 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몰래 카메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그에 관한 시사성 기사로 기획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문화부 문화섹션팀 취재기자인 피고 강 이 그 초고를 작성하였고, 위 문화섹션팀장인 피고 허 의 수정과 피고 회사의 편집 책임자인 피고 전 이 주관하는 편집 과정을 거쳐 게재된 것이었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신문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그러한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함에는, 기사의 명시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 흐름, 제목과 전문의 내용, 구성과 배치 및 사용된 어휘의 의미와 연결 방법 그 밖에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지식 수준을 종합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부분을 볼 때, 원고가 위 김 몰래 위와 같은 장면들을 녹화하였다거나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를 유출하였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고, 그 내용도 매우 간략할 뿐더러 사용된 어휘들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기사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원고가 위 김 몰래 위 장면들을 녹화하였다거나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를 유출하였다는 것과 다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감시 카메라 또는 폐쇄 회로 TV의 설치·이용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취지로서, 전제로 보아 이른바 ‘몰래 카메라’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에 해당하고, 그 구성과 배치를 볼 때 ‘몰래 카메라’를 연상시키는 [‘1mm 구멍’ 당신의 마음 훑는다] 는 기사 제목과 ‘몰래 카메라’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 다음에, 감시 카메라 또는 폐쇄 회로 TV를 ‘편홀 카메라(바늘 구멍 카메라, 이른바 1mm 카메라)’로 표현하면서, 위 카메라의 이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로 ‘불륜 커플에 대한 공갈’, ‘백화점 여자 화장실의 감시 카메라 설치’를 열거하는 가운데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삽입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 기사 부분에 사용된 어휘를 보면, “믿었던 사람을 통해” 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원고가 무엇인가 위 김

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고, 그리하여 앞서 본 위 김 의 전화 통화 장면이 공개되기에 이른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기사의 전체 흐름, 제목과 전문의 내용, 구성과 배치 및 사용된 어휘의 의미와 연결 방법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위 김현철의 전화 통화 장면을 게재·방영한 언론 보도를 접한 경험에 있는 독자들이라면 이 사건 기사를 읽고서 원고가 위 김 몰래 위 전화 통화 장면을 녹화한 것(즉 위 전화 통화 장면의 녹화가 ‘몰래 카메라’에 의한 비밀 촬영이라는 것), 또는 원고가 어떤 목적에서 고의로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를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거나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이름이나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호를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를 단지 “위 김 이 믿었던 사람” 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에 앞서 전개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또는 편집을 담당한 피고 강 , 허 , 전 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 전 은 피고 회사의 편집 책임자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편집 과정에 관여한 바 없어 이 사건 기사에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이 사건 기사의 게재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기사 부분의 소재가 된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에 위 김 이 외부에 전화를 걸어 유선 방송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 진료와 직접 관련없는 장면들까지 녹화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장면들은 모두 위 김 에 대한 진료 과정을 녹화하기 위해 켜 놓은 카메라를 그때그때 단속하지 않았던 탓에 다른 진료 장면들과 함께 녹화되었을 뿐이고, 위 김 역시 위 장면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여 녹화 중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자유롭게 행동하였던 것이라면, 위 김 은 위 장면들의 녹화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법적인 관점에서 위 장면들의 녹화가 진료와 직접 관련없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하여 따로 승낙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녹화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승낙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가 위 김 현철 몰래 위 장면들을 녹화한 것이라거나, 위 장면들의 녹화가 ^몰래 카메라}에 의한 비밀 촬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을 2의 1~3, 3의 1·2, 을 5의 22·26·29·30·32·33·37~39·42~45·49·51·62, 6의 5·12·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료 목적 외의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위 진료 과정 녹화를 기회 삼아 위 전화 통화 장면들을 녹화하였다거나 위 양 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가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김 몰래 위 전화 통화 장면을 녹화하였다거나, 이 사건 테이프를 유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위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손해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의 구체성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위 중앙일보의 발행 부수와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나아가, 위와 같은 위자료의 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제2> 기재 공고문의 게재를 구하나, 위 다항에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기사의 게재를 전후하여 일부 신문과 방송에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유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그에 따른 정정보도가 게재·방영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를 절취한 위

양 이 입건·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위 공고문의 게재가 필요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재일인 1997. 9.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1998. 1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6.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강 한 승

판사 류 용 현

